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931-01

2023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2023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9.

연구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홍용표(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민기채(한국교통대학교 부교수)
 모춘홍(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박재인(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송철중(선문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조교수)
연구보조원: 나하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박지혜(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문]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초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이들이 한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사회경제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개념화하고,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의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한 일반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현황과 2019년 하반기부터 총 6회 진행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 내용과 한계를 분석한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제도 및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탈북민 다수는 여성이며, 자녀와 함께 사는 한부모가정이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문제는 곧 여성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특히 2019년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역시 어머니가 세대주인 모자 한부모가정이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탈북여성이 북한과 제3국,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인권침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점과, 동시에 탈북민의 적응과 북한 사회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이다.

2. 연구내용과 연구범위

본 연구는 실질적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당사자 입장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규명하고, 이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접근 전략과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첫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문제에 있어서 탈북

트라우마의 문제를 전생애적 관점으로 고찰한다. 둘째, 탈북여성의 인권문제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 간의 인과관계에 주목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탈북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관한 선행연구와 실태조사에 대한 문헌분석과 함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한다. 양적 연구방법으로 300명 탈북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위기가구의 인권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방법은 1:1 생애구술담 방식(8명), 심층면담(6명) 및 서면자문(3명),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9명)로 진행했으며, 26명의 탈북민 및 탈북민 정착지원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구진은 탈북민 위기가구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위기상황의 전개와 심화과정에 대한 내용을 1:1 구술생애담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했으며, 지역(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FGI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녹취록을 별도로 제출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은 모두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 준칙에 의거해 진행되며, 심층면접의 경우 연구대상의 동의 후 음성을 녹음하고 전사하여 사례 내 분석(within-case analysis)과 사례 간 분석(cross-case analysis)의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에 따라서 조사대상에게 이 조사연구의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고, 자발적으로 심층면담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본 연구는 2023년 9월 12일에 진행되는 2023년 제2차 북한전문위원회에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일 참석한 북한인권 전문위원회 위원들과 외부 참여자들의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은 연구의 주요 내용 구조도 <보고서에 수록된 그림 1-2 참조>와 같이 위기가구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이것이 악순환되는 구조하에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위기가구 발생 요인과 이 요인들이 가족관계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위기가구로 심화되어 가는지와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이 탈북민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상황을 국가인권위원회(2022)의 제4차 권고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4. 선행연구 검토

1) 탈북민 관련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

탈북민 관련 선행연구는 탈북민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련 정착지원 제도와 정책들을 분석하는 데 집중됐다. 그러나 적응과 자립·자활 중심의 초기 선행연구는 탈북민을 ‘동화’의 대상으로 범주화하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2000년대 후반부터 탈북민이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자 국민으로서의 복합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조화를 이루며 일상을 영위하는 데 집중한 사회통합적 관점의 연구와 실태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탈북민에 대한 사회통합적 접근은 탈북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의 탈북민의 통합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체계’를 본격적으로 고안시키는 계기가 됐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통합적 접근이 안고 있는 내재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탈북민 관련 선행연구는 탈북민의 남한에서의 삶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분석 대상으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따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인권이나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탈북민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2) 탈북민 인권에 대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주된 초점

탈북민 열악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이 겪게 되는 인권피해 상황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탈북민 인권 관련 기존 선행연구들은 (탈북민) 인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내리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실태와 이들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지원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탈북 모자 사망 사건과 무연고 사망원인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문제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원제도 및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탈북 모자 사망 사건과 무연고 사망원인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문제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원제도 및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 분석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이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 증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탈북 트라우마의 문제와 탈북여성의 인권문제를 함께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구성원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 인권침해 상황과 열악한 인권상황의 구조, 그리고 그들의 대응(혹은 낙담)의 맥락과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내려고 노력했다.

II.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1. 탈북민 정착지원체계와 정착지원제도

1) 정착지원체계

(1) 법률적 지원체계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의 변화는 4개의 법률 변화의 역사이다. 1962년 4월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을 시작으로, 1979년 1월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1993년 6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이 제정됨으로써, 현행의 탈북민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로 이어져 왔다. 각 법률에서 탈북민의 지위는 국가유공자, 귀순용사,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보장수급권자로 변화되어 왔다.

2023년 7월 현재까지 총 27차례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해 탈북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관련 조항을 변화시켜 왔다. 주요한 법률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1997년 탈북민을 자립·자활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일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보호대상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인도주의에 입각한 특별한 보호라는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 2000년대 초반 교육지원 연령범위 확대, 2000년대 중반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공 확대, 정착도우미제도 도입, 자격인증제도 개선, 취업보호기간 확대, 2010년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 자산형성지원 사업, 취업·교육 등 실태조사 근거마련, 탈북민 정착지원 기본계획(3년주기)과 시행계획(매년)

마련 및 평가 의무화, 대안학교 지원확대 근거마련, 신변보호 및 보호결정제도 개선 등을 도입하였다.

(2) 행정적 지원체계

탈북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단체 간의 거버넌스로 구축되어 있다. 행정적 지원체계는 중앙정부(통일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때 정책과 행정의 협력을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중앙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가 구성되는데, 해당 협의회는 통일부가 주도하여 23개 부처, 기관, 지자체가 함께하여 정책과 행정을 조율한다.

협의회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주요사업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에서 관장한다. 전국 25개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 시행의 과정에서 지역 단위의 거버넌스가 작동된다. 17개 광역 시·도 지자체와 함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취업보호담당관, 경찰 및 신변보호담당관, 교육계(교육청, 학교, 장학사, 교사), 전문상담사, 자원봉사자, 지역의료기관, 복지기관, 아동·청소년 복지지원기관이 협업하는 구조이다. 이때 탈북민의 정착지원 사업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도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가 운영된다.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는 주민센터,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시·도(광역자치단체), 고용센터, 경찰서,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 등이 있다. 전달체계의 정점에는 남북하나재단(법률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있다. 남북하나재단이 중앙 차원에서 탈북민 정착지원사업을 관장한다면, 탈북민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별도의 인력이 있는데, 핵심 인력은 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 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는 거주지보호 담당관, 고용센터에는 취업보호 담당관, 경찰서에는 신변보호 담당관, 하나센터 및 남북통합문화센터에는 전문상담사, 하나센터에는 정착도우미가 있다.

2015년부터 3년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가장 최근의 제3차 기본계획은 사회적 통합지향형 정착지원을 지향하는 기본계획으로서 6대 분야 24개 정책과제를 갖는데, 6대 분야는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탈북민 보호·지원체계 내실화,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지원,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정착지원 시설·인력 기반 강화

요약문

이다. 기본계획에서 위기가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분야는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이다.

2) 정착지원제도

(1) 국내 정착과정

탈북민은 하나원에서 12주 동안의 교육 이후, 거주지로 전입되어 5년간의 거주 보호를 받는데, 거주지 전입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받는다.

(2) 주요 정착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주요 정착지원제도는 사회적응교육,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보장, 교육, 상담 지원제도이다.

2. 탈북민 정착 및 사회통합의 현주소

1) 이론적 논의

탈북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사회통합을 따르고 있다.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는 사회통합을 하나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으며 탈북민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도 이러한 논의를 따르고 있다. 사회통합의 연구는 국가 단위와 지역사회 단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지역사회는 단순히 지역적 단위만이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을 포함하고 있다. 탈북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도 국가단위와 지역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지표와 실태

탈북민의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선행연구인 송철종 외(2020)은 안정성, 형평성, 응집성, 지속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영역을 대분류로 나누고 이에 따른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안정성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과 주거, 건강을 의미한다. 형평성은 모든 이에게 사회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고, 응집성은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지역사회를 공유하면서도 충분히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정책과 제도 기반을 의미한다. 탈북민의 지역사회통합의 결과로 송철종 외(2020)에 따르면 종합지수인 지역사회통합지수뿐만 아니라 지역별 차이와 영역별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지역사회에서의 탈북민의 사회통합을 보다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다.

III.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제도

1.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실태

1) 개념과 대상

통일부는 「사회보장급여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개념을 활용하여, ‘소득 사실’,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생활곤란’, ‘영업곤란’ 등으로 위기에 처한 탈북민을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의 기본 방향에서 사회 미적응과 사회적 관계망 부재를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주된 특징으로 보았다. 통일부가 제시한 바를 토대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개념을 정리하면 경제적, 신체·정신적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와 안전의 부재로 자신과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와 지원을 필요한 시점에 충분히 얻지 못하는 가구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의에는 인권 관련 문제와 탈북민의 인권의식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권보호 측면을 반영하여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일상에서 다양한 차별 및 배제를 경험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고립된 상태에 위치한 가구 및 가구 구성원”으로 정의했다.

2. 통일부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주요 내용

1) 조사대상의 기준 및 위기가구지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북한이탈 주민종합관리시스템」(이하 ‘하나넷’)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과의 연계를 통해 1차 대상자를 선별했고, 지역하나센터 조사자들이 유선과 가정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를 결정했다. 또한 통일부는 취약·위기가구 대상자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33종 위기지표’ 중에서 탈북민에 적합한 위험정보를 선별해서 활용했다.

그러나 기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는 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첫째, 기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각종 변수들을 개인단위로 수집하고 있어, 가구 구성원별 위기변수를 모두 고려한 가구 전체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대부분의 위기가구지표가 경제적 문제를 측정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서 사회 미적응, 사회적 관계망 부재, 사회적 고립, 트라우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의 복합적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2)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온 주요 내용과 한계점

통일부는 2019-2021년에 실시된 6차례 전수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위기정보지표를 활용하여 취약·위기가구 발굴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도 고위험군을 선별하며, 지난 회차 발굴 대상자를 제외하고 지역 하나센터를 통해 현장확인 및 사후 처리를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다.

그러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위한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 그리고 지역하나센터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활용되는 위기정보지표에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에 취약·위기가구 발굴대상자를 선제적, 효과적으로 선정하고, 관리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위기정보지표의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3.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체계 및 지원제도 현황

1) 배경

(1) 탈북민 위기가구 지원 배경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하여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이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도입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사회 안전망은 완벽하지 못했다. 2019년 7월 서울시 관악구의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과 2020년 10월 40대 탈북민의 고독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과 40대 탈북민의 고독사의 원인은 완비되지 못한 사회복지시스템 차원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기가구 발굴체계 부족, 복지급여 신청주의의 한계, 행정복지센터의 위기가구 지원 의무 소홀, 공공·민간의 정보연계의 부족뿐만 아니라, 전달체계 간의 사회복지서비스 협력 부족,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 직원, 거주지보호 담당관, 취업보호 담당관, 신변보호 담당관,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부족,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을 위한 지원 부족,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수립

2019년 7월 서울시 관악구의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에 대한 후속 대응과 관련하여 통일부에서는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수립하였다. 주요한 대책은 첫째,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 마련(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 실시,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위기 의심자 발굴, 복지·교육·취업 등 필요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탈북민 기초생활보장의 특례 대상 및 기간 확대(탈북민이 포함된 가구,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5년), 둘째, 지자체와 하나재단의 역할 제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하나센터장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체’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사항을 공유),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예산 확충,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 ‘탈북민 콜센터’ 상담 강화, 셋째,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을 보다 강화(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법상 거주지 보호기간(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및 절차 마련, 탈북민 고립 예방 위한 탈북민단체 지원·육성, 탈북민 공동체를 통한 위기 의심자 조기 발굴, 복지전달체계 매뉴얼에 탈북민 지원사항 보완,

하나원·하나센터 교육 내실화 및 안내 책자 발간 추진)이다.

(3) 2023년도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2023년도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의 6대 분야 49개 세부과제에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체계 및 지원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직접적으로 취약·위기가구 지원체계를 명시하고 있는 세부과제는 2. 탈북민 보호·지원체계 내실화의 ②번 과제인 ‘위기 탈북민 발굴·종합 지원’이다.

2) 위기가구 지원체계

(1)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2015년 12월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2개월마다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통계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별(고위험군 약 20만 명, 상위 4%)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위기정보가 입수된 전체 명단(기존 수급자 명단 포함)을 지자체에 제공해 지자체의 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단가스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44종의 정보를 입수하여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고위험 가구를 예측·선별하고, 자치단체를 통해 상담·조사 후 복지 급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 탈북민 종합관리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간 연계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에서 확인되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체계는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위기 의심자 발굴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된 데이터가 사회보장정보원 → 보건복지부 → 통일부 → 남북하나재단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로 전달되면, 지역적응센터 담당직원이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탈북민 정착지원 인력들(거주지보호 담당관, 신변보호 담당관,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과 함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지원업무를 집행한 후, 환류하는 방식이다.

(3) 시행계획상의 위기가구 지원체계

2023년도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서 직접적으로 위기가구 지원체계를

명시하고 있는 세부과제는 2. 탈북민 보호·지원체계 내실화 중 ② 위기 탈북민 신속 발굴 및 종합·원스톱 지원이다. 그 구체적 추진계획으로 첫째, 취약계층 탈북민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화를 통해 탈북민의 위기관리 체계 개선,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연계 강화를 계획하였다. 둘째, 위기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기능 활성화를 계획하였다.

3) 위기가구 지원제도

매해 수립되는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이 제시된다. 2023년도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서 제시되어 있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과제는 3.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의 9개 과제로서 ① 사례관리 지원 강화 ② 의료지원 확대 ③ 포털 온라인 서비스 강화 ④ 취약계층 생계·생활안정 지원 확대 ⑤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적용 ⑥ 심리안정·정서지원 체계화 ⑦ 맞춤형 힐링프로그램 운영 ⑧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 제공 ⑨ 재소자·출소자 재정착 프로그램이다.

I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1. 인권상황 실태조사 개요

1)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배경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이래, 하나원과 지역하나센터, 그리고 지자체 등을 통해 지역에 정착한 탈북민의 적응·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2019년 7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서 탈북민 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위기가구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0월 21일 탈북민의 실질적 생활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하고, 동성명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와 취약계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적 미비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실

요약문

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월 1일 탈북 1년만에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다시 월북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계기관의 대책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탈북민 정착 지원제도 개선과 이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인권을 먼저 언급해야 한다. 이에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개념과 탈북민 사회안전망과 정신건강분야 증진을 강조한 제4차 권고와 내용을 토대로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에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인권의 측면을 다음의 네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 ① 생명권(건강권) : 정신건강(트라우마, 우울, 중독, 자살)
- ② 안전권 : 사회적 안전, 법률지원
- ③ 평등권(차별금지) : 직장(노동권), 학교, 이웃, 탈북민 모임
- ④ 사회적 관계 : 사회적 고립의 발현

2)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내용

본 연구는 탈북민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전개되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의 과정을 겪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제4차 권고를 바탕으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위기상황의 시작으로 가구의 주소득 상실과 탈북 과정에서의 트라우마와 신체 상해를 가정하였다. 이는 건강권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권과 큰 관련이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이 전개되면서 위기가구는 가구 내 주소득 상실이나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사회적 관계마저 단절되어 사회적 고립이 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위기가구의 구성원들은 스트레스, 우울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탈북민의 알코올 중독을 가중시키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가족관계가 해체되다시피 하여 가족들이 절연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이는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더해 우울이나 알코올 중독, 가구의 자살과 같은 문제는 위기가구의 소득 상실이나 정신적 건강 문제를 한층 더 심화시키기 때문에 이는 위기가구 전개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과 같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이러한 탈북민의 위기상황이 전개되고 심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인권상황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탈북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기가구의 발생 원인과 전개에 대한 조사와 위기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병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이라는 병렬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만 20세 이상 탈북민 3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취합한다. 응답자인 탈북민은 자신이 속한 가구(가정, 가족)에서 겪었던 위기상황을 바탕으로 설문에 답을 하게 된다. 심층면접은 남한에서 위기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1:1 구술 생애담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탈북민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1인 가구 등에 해당하며 위기상황을 경험한 바 있는 20대에서 50대의 탈북민 8명을 심층면접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영역은 경제, 건강, 사회적 관계, 사회적 안전이다. 이는 각각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권고 중 경제적 기본권, 생명권(건강권), 사회적 관계와 평등권(차별금지), 안전권과 연관되어 있다. 경제 영역에서는 주 소득 상실, 주거 상실, 가구주 사망 등 경제적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건강 영역에서는 트라우마, 신체 상해, 우울, 중독, 자살 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생명권)을 다룬다.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는 가족이산, 가족 내 지지·관계, 사회적 지지·관계, 차별·무시 등 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관계와 차별금지 등 평등권에 해당되는 내용을 조사한다. 사회적 안전 영역에서는 범죄 경험이나 위기상황의 해결과 그 과정에서의 법률지원 등 안전권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설문조사를 통해 묻고자 하는 연구 질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민이 위기상황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실직, 부상 및 장기 입원, 재난 등 주 소득 상실의 경험과 탈북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탈북민에게 얼마나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가족 내 관계 및 가족 외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의 약화가 위기상황을 얼마나 전개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관계, 가족 내 지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위기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것이 심화될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우울, 중독, 가족 절연

요약문

및 해체가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는 위기의 심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탈북민의 자살충동을 중심으로 위기의 심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넷째, 위기상황의 시작, 전개, 심화의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이 충분히 확보 또는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확인하고, 범죄 상황 및 법률지원 등 사회적 안전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조사 결과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위기가구의 원인 되는 것 중에서 탈북민들은 소득 상실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탈북과정에서 겪었던 정신적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는 남한사회 정착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는 탈북민의 위기상황이 심화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위기상황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 등 사회적 지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거나 해결하는 것인데, 탈북민들은 가족관계가 일반국민들에 비해 불만족스러우며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가족 절연 및 해체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에서 재정적 위기, 간병이나 돌봄, 정신적 스트레스, 차별 및 무시 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일반국민에 비해 많았다. 게다가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상황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나 우울증, 알코올 중독이 일반국민에 비해 심한 것을 확인하였다.

자살충동의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이 정신적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이고 그다음에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인 것으로 나타나 위기가구의 발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그리고 주 소득 상실인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위기상황의 발단, 전개, 심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동해야 되는 것은 사회적 안전인데 이와 관련하여 탈북민들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또한 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지역하나센터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져도 위기상황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과 함께 보호기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신변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은 적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법률지원을 받은 경험은 많지 않았다. 법률지원을 받은 이유로는 소득 상실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해결이 가장 많았고, 정신적 고통 극복과 범죄의 가해자가 된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본 설문조사는 인권상황을 경제적 기본권, 생명권(건강권), 사회적 관계, 평등권, 안전권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째, 경제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원하지 않는 실직이나 장애, 부상, 장기 입원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은 탈북민 가구에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로 인한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위기상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소득 상실에 의한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일반국민에 비해 적은 탈북민은 경제적 위기상황이 심화될 여지가 클 수 있다.

둘째, 탈북민의 생명권(건강권)과 관련하여 본 설문조사 결과는 탈북민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자살에 대한 취약성을 보여준다.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탈북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남한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국민들에 비해 우울이나 알코올 장애를 더 많이 겪고 있으며, 자살충동도 심하게 나타난다. 생명권 또는 건강권으로써 의료 이용에 관한 권리 외에 탈북민은 탈북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충격을 포함하여 정신건강과 중독, 자살과 같은 위기 요인이 내포된 남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생명권과 건강권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적 관계와 관련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취약성을 드러낸다. 탈북민은 일반국민에 비해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어 가족 절연이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만족도에 비해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과 비교해서도 재정위기, 간병 및 돌봄, 우울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한 사회적 관계는 위기상황에서 가족을 포함하여 주변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되어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넷째, 평등권과는 탈북민의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를 얼마나 당하는지가 관련이 깊다.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를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가에 ‘없다’라는 응답자가 43%인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인권침해 상황에서 탈북민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이 드러났다. 다섯째, 안전권은 사회적 안전의 관점으로 접근하였는데 탈북민들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위기상황에서 탈북민들은 지역하나센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설문참여자의 95%가 남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임에도 지역

요약문

하나센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심층면접 주요 내용

1) 심층면접 조사 방법

구술생애담 조사는 인터뷰어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약탈적 인터뷰 방식이 아닌 연구대상의 살아온 이야기를 경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북한에서의 삶 - 탈북 과정 - 한국살이의 고충’을 전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인터뷰 방식으로, 다양한 삶의 맥락과 경험의 결을 서사적으로 이해하면서 어떤 문제로 한국살이의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극복의 가능성이 축소되었는가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다.

조사 대상은 기본적으로 ▷탈북민이면서 생활보호 대상자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원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탈북민 특성과 ‘인권침해’ 주제에 따라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잃어버린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차별’ 경험과 한국살이 적응 요인(언어, 문화, 정보취약·접근성, 취업, 진로적성 등)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인물들로 섭외하였다. 더불어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 중 현재 여성의 비율 80%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여성문제(성폭력 트라우마,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등)에 특별한 위기를 경험한 제보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늘어가는 ▷20대 1인 가구 구성원도 포함하여, 각 사례를 대표하는 총 8명의 제보자가 구술생애담 조사에 참여하였다.

2) 위기가구 상황별 주 호소 내용

(1) 신체·정신적 아픔이 ‘아내 → 남편 → 자녀’로 연쇄되는 위기가구 사례

제보자1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자신과 아내 모두 탈북에서 시작된 신체적·정신적 아픔이 반복·재생산되었던 특징이 있다. 주 호소 내용은 가구원 질병 시 생계활동이 불가능하고,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또 아내의 정신건강 악화는 가구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가운데는 ‘탈북 트라우마’가 큰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가정 내 위기는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결국 이 위기가구는 아내의 죽음을 시작

으로 서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어 ‘가정의 해체’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가구원 1인의 위기가 가구원 전체의 위기로 파급되는 가구원 간 상호영향력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탈북민+다문화가정의 이중 차별에 대한 고통 사례

제보자2는 본인의 장애와 부모 병환, 그리고 다문화가정으로서 위기상황이 결합된 사례다. 본인은 차상위계층으로, 장애 6급이며, 다문화가정으로 이중의 차별과 박해를 경험한 바 있다. 지원제도가 상충되거나 얽힌 지점이 많아서 그 어느 것도 뚜렷하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정보 접근성에 취약한 상태가 생활보호대상 범주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차별과 박해 경험이 더해져 적극적인 대응이나 도움 요청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신매매로 원치 않았던 임신과 한부모가정의 양육 고충 사례

제보자4는 탈북여성들에게 벌어지는 인신매매 피해와 한부모가정의 양육 고충 문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상이다.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미혼모가 되어, 성폭력 트라우마 및 한국적응 스트레스와 나홀로양육 책임까지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임신 상태로 탈북하다가 허리 질병을 얻었고, 이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해서 자신의 건강과 자녀의 양육 모두 온전하게 돌보지 못하는 ‘돌봄 공백’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4)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와 부적응 위기

제보자 7과 8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20대 청년으로 이전 고난의 행군 시기 탈북민과 달리 새로운 삶을 지향하며 자발적으로 탈북을 선택한 청년이다. 이들은 각각 가정문제로 가출이 탈북으로 이어진 사례이고, 10대 후반부터 한국에 홀로 정착 중이다. 그리고 청소년기부터 가족 없이 살아오면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였으며 경제적 위기와 정신건강 위기를 겪었다고 호소하였다. 두 제보자 모두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호소하였다.

3) 인권 관련 주 호소 내용

제보자 8명은 각각 신체·정신건강 위기 및 가구 구성원 간 상호영향력 문제, 다중 차별경험의 문제, 한부모가정의 돌봄 공백 문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의 문제 등을 대표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그들이 호소하는 어려움들은 다양한 인권침해 국면에 맞닿아 있었다. 경제적으로 자립·재활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 건강에 대한 권리, 안전권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알권리의 정보접근권 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 직장, 일상적 관계 속에서 차별과 무시를 경험하거나 인간관계 고립 문제 등도 인권상황에 대한 주요 내용이었다. 그리고 여성인권 관련하여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 및 성폭력 피해와 그 트라우마 문제, 돌봄노동의 여성화 문제 등이 위기가구 상황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국면들이라 할 수 있다.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1.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열악한 인권상황

1) 일반설문 조사결과를 통해서 본 문제점

(1) 취약한 적응·자립의 토대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의 주 소득자 실직에 따른 가구소득 상실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위기상황의 주된 요인으로 기능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이 탄탄하지 않은 탈북민 가구의 주 소득자 실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실직이 가족이산의 문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둘째, 돌봄 공백과 안정적인 취업 활동 사이의 큰 간극이 존재한다. 위의 두 가지 사안 이외에도 가구의 주 소득자 실직에 따른 가구소득 상실은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의 안전권, 평등권, 사회적 관계 등의 측면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2)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촉발한 위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탈북민은 탈북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는 비율이 신체상해보다 높으며, 그로 인해 한국사회 적응·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위기상황의 시작이 가구의 주 소득상실과 탈북 과정에서의 신체적·정신적 상해로 보았고, 탈북민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기능한다. 말하자면 탈북 이전부터 혹은 탈북 과정에서 얻게 된 상해와 심리적 불

안, 여기에 ‘남한살이 고충’이 더해지면서 취약·위기가구 탈북민의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그 결과 이들에게 있어서 빈곤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3) 열악한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체계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탈북민의 사회적 연결망은 시간이 지나도 일반국민들과의 연결망이 크게 확대되지 않고 제한적이다. 탈북민과 남한주민과의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은 이들이 사회적 연결망이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상적인 상황에서 가족 관계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약·위기가구 탈북민이 위기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체계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제한된 정보 접근성과 취약한 위기대응 역량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탈북민은 위기상황 대응 역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은 재정적 위기, 돌봄이 필요한 상황,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없음’을 선택한 응답이 매우 높았다. 탈북민의 경우 위기상황에서 주변의 지원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정신적 충격을 제외하고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아닌 친한 탈북민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일반국민들과 비교하여 탈북민의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체계가 두텁지 않으며,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또한 법률 지식과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법률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2) 심층면접에서 제기된 내용

(1) 자립 기회 축소의 문제

① 구직활동 시도의 어려움

요약문

심층면접에 참여한 제보자들은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고 있거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는데, 위태로운 노동시장에 함부로 뛰어들었다가 기초수급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에 대해서 우려하며 구직활동에 나서기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안정된 일자리에 정착하기까지 여러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과 안정된 근로생활 사이의 중간단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② 중산층으로의 계층이동 불가능 전망

제보자들 중 다수가 자신들은 한국사회 속 경제적 하층민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계층이동의 불가능성)이라고 자신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이러한 심리적 비관과 위축감이 자활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탈북민 인권문제, 특히 탈북민에 대한 차별 문제에서 극복 방안은 탈북민들이 중산층으로의 진입이 활발해지고 전문직무 소속들이 많아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전문직무로의 취업을 위한 부가적인 교육비나 유학비 지원 등 제도 범위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2)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권리

① 신체적 질환 문제

제보자들은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었는데, 실직하거나 구직활동이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가 신체적 질환 때문이었다. 취약·위기가구의 문제에서 신체적 질환은 근본적 원인인면서도, 또다시 그 신체적 질환 때문에 자립·자활의 기회가 축소되는 등 악순환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② 정신건강 문제

제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경험이 있으며, 우울증 및 불안증세를 진단받았다. 취약·위기가구의 문제 상황 속에서 정신건강 악화는 자활의 의지를 감소시키는 중요 원인이다.

③ 범죄 노출 위험 및 치안 문제

제보자들은 탈북민들이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특히 여성이나 1인 가구의 경우는 ‘치안’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탈북민들은 신체적 상해를 입은 탈북민들도 도전할 수 있는 구직 경로가 확대되어야 하고, 탈북민 대상 정신건강 지원 기간이 확대되어야 하며, 1인가구 탈북민에

대한 치안 문제를 보완해주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3) 정보 접근성 문제

① 법률 지식에 취약한 문제 호소

제보자들은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는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여러 사연들을 말해주었다. 물론 탈북민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탈북민들의 요구 사안은 사후적 조치에 앞서 다양한 사기나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한민국 법률과 법적 절차에 대한 알기 쉬운 안내 등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법률 지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탈북민 대상 법률 교육이 하나원에 서부터 상세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② 복지제도에 대한 문해력 문제 및 복지지원서비스 불만족 호소

제보자 중 다수가 대한민국의 행정제도 및 복지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호소하였다. 특히 각종 제도를 안내하는 문건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문해력 문제를 호소하였고, 이를 안내하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해서도 지적하기도 했다. 행정제도의 복잡성과 난해함에 곤란을 겪고 있으나, 어디에도 속 편하게 물어볼 곳이 없다는 이야기였다. 이에 각종 지원제도 및 행정제도에 대해 단편적인 답변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안내해주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관련 직원의 섬세하고도 친절한 안내가 절실하다고 하였다.

③ 성인지감수성 문제 호소

제보자들 중 다수는 현재 한국사회의 성인지감수성에 관해 탈북민들이 여러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탈북민들이 북한과 다른 법률과 사회적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성평등교육과 성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4) 차별·무시 피해 경험

① 생활 속 차별·무시 피해 경험

제보자들은 탈북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과 무시의 피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근로현장, 교육현장 및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탈북민에

요약문

대한 차별이 있으며, 이념이나 체제 차이가 아닌, 경제적 난민으로 취급되는 차별 문제를 호소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과 무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보다, 탈북민 정체성을 노출하지 않는 방식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이다.

(5) 사회적 소외 문제

① 인간관계 고립 문제

제보자들은 취약·위기가구의 문제들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 중 사회적 고립을 핵심적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하여 탈북민의 사회적 활동을 도모해주는 ‘복지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1인 가구 주거환경에 치안 강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② 적응스트레스로 가족관계 불화 발생

이들은 공통적으로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경험했다고 말하며, 결국에는 함께 살 수 없는 결말로 이어진다고 했다. 원가족이 함께 잘 살고 싶어서 선택한 탈북이 오히려 가족관계 와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가족관계 갈등 문제는 중국에 자녀를 둔 탈북여성들의 원거리양육 상황에도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6) 여성인권 문제

① 홀로 자녀를 키우는 탈북여성들의 고통과 탈북자녀들의 갈등

탈북여성 가운데 북이나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한국에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나 자녀가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거리 양육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돌봄노동이 여성화된 문제가 심각하다. 나홀로양육을 책임지는 탈북여성들의 고통은 경제적 문제, 자녀 교육에 관한 지식정보 부족의 문제, 어머니와 자녀 간의 심리적 갈등 등으로 꼽아볼 수 있다. 특히 탈북여성들은 과거의 전통적 모성관에 충실한 성향이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을 포기할 수 없으며, ‘여자가 아이 하나를 잘 못 키우나’라는 억압적 젠더관으로 양육 공백을 자기 탓으로 여기는 괴로움에 휩싸이기도 한다. 또한 탈북여성 입장에서는 나홀로양육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지만 적응 지체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자기개발의 길이 막히기도 하는 여성인권 침해 문제

가 공존해 있다.

② 성폭력 트라우마

인신매매 피해 경험의 제보자들은 대다수 성폭력과 여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성폭력 그림자 가설’의 증상으로 나타나며 공포와 두려움은 자신과 자녀의 사회적 활동 범위를 축소시키는 등 적응 지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북에서나 탈북과정에서는 자신이 당한 일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가 남한에 와서 과거 성폭력 피해를 재인지하여 그것이 더 혼란스럽다는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③ 탈북여성에 대한 2차 피해, 선입견과 차별 문제

탈북과정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를 비난하는 따가운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왜곡되고 낡은 관념으로 탈북여성들을 비난하는 현상에 고통스러워하며, 가해자 중심 문화의 문제점과 2차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2.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1) 탈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개선

(1) 전생애 관점의 탈북 트라우마 관리의 필요성

탈북 트라우마는 충격적인 외상 한 장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반복·재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탈북민의 경우 북에서 삶의 문제, 탈북과정의 충격과 공포, 제3국에서의 고난 등의 과거 외상은 현재 남한에서 적응기간 동안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과 착종되어 야기된 경우가 많다. 여기에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인 특징, 분단체제에 대한 이해가 종합적으로 적용되면서 그 속에 살아가는 개인의 살아온 이야기에 주목할 때 탈북 트라우마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2) 증상과 유형에 따른 정신건강 서비스 개입의 필요성

탈북민들의 생애사를 고려하여 삶의 중요한 장면에서 경험했을 외상들을 종합하고, 각각 외상들에 대한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인 특징 및 분단체제에 대한 이해와 탈북민들의 생애적 특성에 대한

요약문

전문지식을 보유한 상담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각한 트라우마 증상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의료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증상과 유형에 따라 심리적 지지를 위한 일반 상담과 트라우마 전문 치료로의 이원화된 개입이 필요하다.

(3) 탈북 트라우마와 취약·위기가구 문제의 상관성 분석의 필요성

위기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은 북-탈북-제3국-남한살이로 이어지는 헤어 나올 수 없는 문제로 기억하며, 심리적 문제가 자립과 자활의 의지를 꺾는 악순환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탈북 트라우마와 취약·위기가구 문제의 상관성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연구자료는 탈북민 위기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실한 대응방안과 함께 예방적 조치 설계에 토대가 될 수 있다.

(4)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듣기의 윤리’를 실천하는 적극적 돌봄의 필요성

삶의 위기 속에서 고통 받는 탈북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어려울 뿐더러 일상의 여러 방면에서 이들의 ‘주체적 말하기’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탈북민의 문제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그 안에 있는 고통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는 소통 창구로, ‘삶의 문제와 고통 호소 - 주체적 말하기를 통한 부정적 감정 소산 - 문제의 정리(객관화) - 맞춤형 지원제도 적용’의 과정을 통해서 취약·위기가구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5) 남한주민 대상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 교육의 필요성

탈북민들 취약·위기가구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남한사회의 차별과 무시, 배제의 피해를 간과할 수 없다. 사회적 고립을 넘어 탈북민을 향한 물리적 폭력까지 보고되고 탈북여성들을 향한 2차피해 상황까지 고려하면 현재 남한사회의 시민성 교육에 탈북민 인권 피해의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다.

2) 탈북 여성인권상황 개선

(1) 자기결정권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의 필요성

탈북민들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자신의 생존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교육(자기결정권 교육,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 등)이 특화·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행복한 생활과 원만한 인간관계 확장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성(문화)교육이 탈북민 적응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며, 남북의 차이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자기 삶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된 생활밀착형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2) 성폭력 트라우마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북한 생활에서나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성폭력 외상은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적응을 지체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주도하는 성폭력 트라우마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탈북여성들의 상처를 가중시키는 2차 피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하며, 인간관계가 고립된 상황을 이용한 한국에서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3) 탈북여성의 나홀로양육 문제에 대한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

현재 대한민국에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남한에 가족이 없는 탈북여성에게는 위급한 상황에서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인적 관계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이에 양육의 책임을 나누고 양육 관련 지식 정보들을 공유하는 양육 파트너가 필요하다. 심층면접의 사례와 같이, 탈북여성이 급작스러운 허리통증으로 누워만 있었던 이틀 동안 아기가 우유 2~3팩으로 버텼어야 했던 비극적인 상황을 기억하며, 함께 양육을 해나가는 제도의 마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탈북여성의 여권신장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 확대의 필요성

탈북민들이 호소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 지위 상승에 대한 사안이다. 특히 탈북여성들이 탈북남성들에 비하여 취업이나 적응이 빠르다는 보고도 있으나, 여성들이 주로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생활 속에 여성들이 겪는 고충이나 범죄 피해의 가능성은 더욱 커 더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기는 어렵다. 남한 주민들에게도 어려운 취업난과 위태로운 노동시장의 환경에 탈북민+여성을 기피하는 차별의식까지 더해진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요구된다. 그리고 탈북여성들이 자신의 욕구와 소망을 자각하고 이전보다 확장된 세계의 열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개발 관련 교육과 함께 진로적성개발을 위한 여성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3) 법률적 지원체계 개선: 북한이탈주민법 및 하위 법령 개정

2023년 3월 21일 「청년기본법」의 ‘취약계층 청년’ 개정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이탈주민법」 및 하위 법령들에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 주요한 조문 신설 또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정의)에서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정의 신설,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특별 지원대상에 ‘취약·위기가구’ 추가(강행규정),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 중 취약·위기상황에 관한 사항’ 신설(강행규정), 제5조(보호기준 등)의 보호기준에 ‘위기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로 개정(임의규정),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 항목에 ‘취약·위기가구에 관한 사항’ 신설, 제17조(취업보호 등)의 취업보호에서 ‘취약·위기가구의 취업우선 알선’ 신설(강행규정), 제20조(주거지원 등)에서 ‘취약·위기가구’ 긴급 주거지원 신설(강행규정),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의 거주지 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취약·위기가구 여부’ 추가(임의규정), 제22조의3(전문상담사제도 운영)에서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주기적 전문상담 신설(노력의무규정), 제24조(교육지원)에서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교육지원’ 신설(강행규정), 제26조의5(취약·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상위법률인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관련 하위 법령들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8조(주거지원),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제47조의6(생업지원),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에서 ‘취약·위기가구’에 관한 특별 및 우선 지원 조항 신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4조(주거지원), 제7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제8조의2(교육지원의 절차)에서 ‘취약·위기가구’에 관한 특별 및 우선 지원 조항 신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의 지역협의회 기능에 ‘취약·위기가구에 관한 사항’ 신설,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의 거주지보호기관장 등의 임무에 ‘취약·위기가구 발굴·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에 ‘교육배제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신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에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금’ 신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의 하나센터의 역할에 ‘취약·위기가구 발굴·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검토할 수 있다.

4) 행정적 지원체계 개선: 발굴체계, 전달체계, 기본계획 개선

(1)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발굴대상의 범위 및 발굴주체의 범위 확대가 요청된다.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체계에서의 발굴대상은 ‘취약계층 위주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모든 주민’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도 전체 탈북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발굴주체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의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가 주도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업 및 지역사회주민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발굴체계 구성에서 지자체와 하나재단의 역할 제고를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서 제시된 것과 유사하게 위기가구 발굴 기획단을 운영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통한 발굴, 복지통(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한 발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을 통한 발굴, 지역 주민들을 통한 발굴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2)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달체계 개선

전달체계의 통합성, 책임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전달체계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간 및 공공과 민간 간 긴밀한 정보 연계가 요청되며, 전달체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집중화에서 중앙-지방-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사 및 통합사례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보호기간 연장

서울시 관악구의 탈북민 모자 사망 및 40대 탈북민의 고독사 사건 모두 거주 보호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였다. 5년이 만료된 탈북민들은 대부분 특례제도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일반 사회복지 시스템에 포함되는데, 이때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즉 위기가구가 발생할 수 있다. 거주지 보호 기간 5년이 종료된 가구에 대한 탈북민 취약·위기 발굴체계가 작동될 필요가 있다. 취약·위기 발굴을 통해 취약·위기가구로 판정된 경우, 거주지 보호 기간 5년 규정의 예외 사례로 간주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내 입국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사적 관계망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가족이 없이 살아가는 무연고 1인가구와 같은 탈북민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취약·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작동될 필요가 있다.

5) 탈북민 정착지원 거버넌스 재조정

현재 탈북민 적응·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어떻게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소속기관 및 처우의 상이, 업무보고 체계의 다원화, 표준화되지 못한 업무, 시설환경의 열악 등 탈북민 적응·정착과 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인력들의 업무환경이 복잡하고, 무엇보다 과도한 행정으로 관련 정착지원 기관의 전문영역에 기반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탈북민 정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재조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탈북민 적응·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단순화 일원화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2019년 이후 국내 입국 탈북민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지보호 5년은 크게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셋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민관의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적응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대한 의학적 구분과 대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구성원들이 겪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포함한 탈북민 관련 연구에서 통칭하는 탈북 트라우마의 대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적응·자립하는 탈북민의 적응 스트레스이며, 이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 이에 모든 것을 트라우마라 하지 말고 정확한 평가에 따른 대처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탈북민 스스로 자신들의 힘든 상태와 감정을 안정화하고 본인의 현실 문제를 직시하며, 현실에 대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거주지역의 복지관 등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안정화-대처 방법-평가-치유의 과정으로 구성된 탈북민 특성에 부합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구성원들이 거주지역 복지관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목 차

· 요약문	i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과 연구범위	2
3. 연구방법	4
4. 선행연구 검토	7
1) 탈북민 관련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	7
2) 탈북민 인권에 대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주된 초점	9
II.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12
1. 탈북민 정착지원체계와 정착지원제도	12
1) 정착지원체계	12
2) 정착지원제도	27
2. 탈북민 정착 및 사회통합의 현주소	30
1) 이론적 논의	30
2) 지표와 실태	34
III.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제도	45
1.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실태	45
1) 개념과 대상	45
2)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분류체계	49
2. 통일부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내용	51
1) 조사대상의 기준 및 위기가구지표	51
2) 전수조사 결과	53
3)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온 주요 내용과 한계점	59
3.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체계 및 지원제도 현황	60
1) 배경	60
2) 위기가구 지원체계	63
3) 위기가구 지원제도	67
4) 한계	73

I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75
1. 인권상황 실태조사 개요	75
1)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배경	75
2)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내용	77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82
1) 응답자 인적 정보	83
2) 가구소득 상실 경험	86
3) 정신적·신체적 건강	88
4) 사회적 관계	89
5) 가구의 위기 심화	97
6) 사회적 안전	104
7) 탈북민 위기상황과 인권상황	109
3. 심층면접 주요 내용	113
1) 심층면접 조사 방법	113
2) 위기가구 상황별 주 호소 내용	117
3) 인권 관련 주 호소 내용	135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137
1.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열악한 인권상황	137
1) 일반설문 조사결과를 통해서 본 문제점	137
2) 심층면접에서 제기된 내용	144
2.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164
1) 탈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개선	164
2) 탈북 여성인권상황 개선	171
3) 법률적 지원체계 개선: 북한이탈주민법 및 하위 법령 개정	176
4) 행정적 지원체계 개선: 발굴체계, 전달체계, 기본계획 개선	181
5) 탈북민 정착지원 거버넌스 재조정	186
6) 적응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대한 의학적 구분과 대처	187
VI. 결론	190
참고문헌	193
부록 1. 설문조사표	200
2.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발굴 위기가구지표	208
3.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	210

표 목차

〈표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6
〈표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18
〈표 2-3〉 탈북민을 위한 지원인력	23
〈표 2-4〉 탈북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변화: 1차~3차	26
〈표 2-5〉 탈북민을 위한 주요 정착지원제도	28
〈표 2-6〉 Bernard(1999)의 사회통합 개념	31
〈표 2-7〉 Berger-Schmitt(2002)의 사회통합 개념	31
〈표 2-8〉 Chan et al.(2006)의 협의적 사회통합의 하위 차원	32
〈표 2-9〉 송철종 외(2020)의 탈북민 지역사회통합 지표 체계	40
〈표 2-10〉 탈북민 지역사회통합지수 산출	41
〈표 2-11〉 비수도권 11개 광역시도의 지역사회통합지수	42
〈표 3-1〉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위기상황	46
〈표 3-2〉 보건복지부가 정의한 복지 위기가구	47
〈표 3-3〉 위기가구 사례정보 유목화	47
〈표 3-4〉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분류체계도	50
〈표 3-5〉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발굴 ‘위기가구지표’	51
〈표 3-6〉 1, 2차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 및 정부 지원 현황	54
〈표 3-7〉 3, 4차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 및 정부 지원 현황	55
〈표 3-8〉 5, 6차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 및 정부 지원 현황	56
〈표 3-9〉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추진 현황	57
〈표 3-10〉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이후 후속지원 상세 내역	58
〈표 3-11〉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미확인 상세 내역	58
〈표 3-12〉 2023년도 시행계획 상의 위기가구 지원체계: 취약·위기 탈북민 신속 발굴 및 종합·원스톱 지원	67
〈표 3-13〉 2023년도 시행계획 상의 9개 위기가구 지원제도: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70
〈표 4-1〉 응답자의 성별·연령별 분포	84
〈표 4-2〉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이유	84
〈표 4-3〉 남한 거주기간	85
〈표 4-4〉 가구 구성원 수	85
〈표 4-5〉 실직 경험과 실직 기간	86
〈표 4-6〉 장애, 부상, 장기 입원으로 인한 실직 경험과 실직 기간	87
〈표 4-7〉 탈북 과정에서의 정신적 충격 경험과 남한 적응에의 부정적 영향	88
〈표 4-8〉 탈북 과정에서의 신체상해 경험과 남한 적응에의 부정적 영향	89
〈표 4-9〉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90
〈표 4-10〉 가족관계 유형에 따른 만족도	91
〈표 4-11〉 전반적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	92
〈표 4-12〉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유형별 만족도	92

목차

〈표 4-13〉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 정도	93
〈표 4-14〉 주요 지지자(복수 응답)	93
〈표 4-15〉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	94
〈표 4-16〉 남한 거주 기간별 위기상황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	95
〈표 4-17〉 남한 거주 기간별 설문참여자 대비 위기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	96
〈표 4-18〉 자살충동 경험 여부와 이유의 복합성 정도	101
〈표 4-19〉 가족관계 악화로 인한 가족 이산과 연락 빈도	102
〈표 4-20〉 미래의 행복에 대한 전망과 연령대별 부정적 미래 전망 빈도	103
〈표 4-21〉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정보 획득 숙련도	104
〈표 4-22〉 법률지원 여부	107
〈표 4-23〉 인권 관련 주 호소 내용	135
〈표 5-1〉 「청년기본법」에서 ‘취약계층 청년’ 관련 규정 신설	177
〈표 5-2〉 「북한이탈주민법」의 ‘취약·위기가구’ 관련 개정안	178
〈표 5-3〉 「북한이탈주민법」의 하위 법령에서 ‘취약·위기가구’ 관련 개정안	180
〈표 5-4〉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	183
〈표 5-5〉 국가트라우마센터 마음치유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189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구조도	6
〈그림 1-2〉 탈북민 위기상황 악순환 구조도	6
〈그림 2-1〉 탈북민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와 탈북민 지위의 변화	13
〈그림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변화:1997년~2023년 ..	14
〈그림 2-3〉 탈북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	20
〈그림 2-4〉 탈북민 정착지원 전달체계별 주요 정착지원 서비스	22
〈그림 2-5〉 탈북민의 입국 및 정착과정 흐름도	27
〈그림 3-1〉 2023년도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63
〈그림 3-2〉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지원 흐름도	64
〈그림 3-3〉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기반 현행 탈북민 취약 위기가구 발굴 지원체계	65
〈그림 4-1〉 탈북민 위기상황의 악순환	77
〈그림 4-2〉 탈북민 취약 위기가구의 위기상황 전개도	79
〈그림 4-3〉 탈북민 취약 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구조 및 주요 내용	81
〈그림 4-4〉 화재나 재난 피해 경험	87
〈그림 4-5〉 지난 2주 동안 스트레스 정도	98
〈그림 4-6〉 지난 2주 동안 우울감 지속 여부	99
〈그림 4-7〉 알코올 의존 여부와 알코올 중독 진단 여부	100
〈그림 4-8〉 자살충동의 주된 이유(복수 응답)	101
〈그림 4-9〉 위기 극복에 가장 도움이 된 행동(복수 응답)	105
〈그림 4-10〉 범죄 관련 상황	107
〈그림 4-11〉 법률지원을 받게 된 이유	108
〈그림 4-12〉 법률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	108
〈그림 5-1〉 『2023 통일백서』	172
〈그림 5-2〉 취약 위기가구 발굴의 대상 및 방법의 변화	182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9년 7월 31일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은 탈북민 복지의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노력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탈북민 보호 강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탈북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통일부 보도자료 2022/1/6). 그러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과 고립감으로 최근까지 탈북민 관련한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탈북민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재난 불평등’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¹⁾

이런 현실을 마주하며, 본 연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의 인권상황 개선과 이들이 한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사회경제적 토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개념화하고,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의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한 일반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한다.²⁾ 또한 본 연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현황과 2019년 하반기부터 총 6회 진행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 내용과 한계를 분석한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제도 및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탈북민 다수는 여성이며, 자녀와 함께 사는 한부모가정이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문제는 곧 여성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역시 어머니가 세대 주인 모자 한부모가정이었다(이윤진 2020, 15). 이에 기존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관련 연구들에서 주목한 탈북민 관련 주요 생활 지표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모자 한부모가정 탈북민의

1) 재난불평등과 관련하여, 송인한은 재난 상황이 모두에게 다른 얼굴로 다가온다고 말한 바 있다(중앙일보 2020/3/23).

2) 연구진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개념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7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에서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해 제시한 내용과의 논리적 연계성을 깊게 고려했다.

1. 서론

열악한 인권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연구진이 탈북여성의 인권상황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북한과 제3국,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인권침해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는 취약한 위치에 있지만, 탈북민의 적응과 북한 사회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조영아 2015, 40; 이화진 2011, 369).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취약·위기가구 탈북여성의 인권침해 실태와 이에 대한 그들의 대응 상황을 고찰할 것이다. 이는 취약·위기가구 탈북여성들이 자신들의 취약한 인권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의 공적 사회보장혜택이 어떠한 역할과 한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연구내용과 연구범위

탈북민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하려는 욕구를 지닌 존재이다. 그러나 탈북민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약한 것이 현실이다.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점차 증가해 왔지만, 그 수준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며,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한국사회에서 탈북민의 경제적 지위에서 ‘하층’에 속하는 비율이 4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 2022, 34).

한국사회는 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가 증가하자, 이들의 자립과 사회통합, 그리고 권리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많은 탈북민의 삶은 여전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취업 지원 등으로 고용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대다수 탈북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탈북민은 한국사회는 탈북민이 한국사회로 편입됨과 동시에 시민권을 인정받고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사회적 소수자이자 취약계층으로서 문화적 소통과 참여, 정치적 권리 향유, 경제적 조건 등 일상의 다양한 차원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최진우 외 2020, 6).

그렇다면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관련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구체적으로 ①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은 여전히 열악한가? ②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취약·위기

가구의 선제적 발굴에 한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③ 기존의 정책의 한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실질적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당사자 입장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물론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에 대한 논의는 그간 탈북민 적응·정착과 사회통합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탈북민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관련된 일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거나 이들의 사회경제적 (부)적응에 어떠한 요인이 주된 영향을 미치는지에 논의의 초점을 두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탈북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인권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부족했으며,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과 인권개선을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는 데 주목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복지사각지대의 원인과 특성이 다층적, 다면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신청주의와 한정된 재원의 틀 안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제도와 대상, 하위유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구조적·개인적 차원의 사각지대 영향요인이 존재한다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유비 외 2020, 3-4), 관련 논의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상황별 위기상황과 그 원인, 그리고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위기상황의 전개과정과 악순환 구도를 면밀하게 분석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다. 이에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탈북민 관련 안타까운 사건의 원인과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현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규명하고, 이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접근 전략과 주요 과제를 제시하는 데 주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일반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 현황과 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의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연구진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첫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문제에 있어서 탈북 트라우마의 문제를 전생애적 관점으로 고찰한다. 탈북 트라우마는 ‘북한에서의 삶-탈북 과정-한국 살이의 고충’을 전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개념으로서, 그간 학문적으로 제시되

1. 서론

있던 탈북민의 상처를 두루 포괄한다. 본 연구는 전생애적 관점에서 탈북 트라우마를 살펴보는 가운데, 탈북 트라우마를 가중시키는 남한살이의 고충이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탈북여성의 인권문제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 간의 인과관계에 주목한다. 최근 한국사회에 입국한 탈북민 구성에서 20~30대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탈북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외상문제와 결혼, 그리고 가족 구성의 문제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탈북여성은 남성과 달리, 탈북 후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결혼과 출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사회에 입국 이후 또다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이중, 삼중의 자녀 부양과 돌봄에 대한 책임을 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모자 입국 사례의 증가에 따라 탈북민 모자 가정의 빈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탈북여성의 입장에서 가족의 (재)구성 문제와 돌봄 문제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위의 두 가지 측면이 함께 논의되어야만, 현재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과 이들을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을 보다 현실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보다 실질적인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분석과 구조화된 설문조사와 1:1 생애구술담 방식의 심층면접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한다. 우선 기존 탈북민 적응·정착과 사회통합 관련 연구, 탈북민 정착과 사회통합 관련 실태조사와 관련 법·제도 현황, 통일부 ‘탈북민 취약계층 조사 결과’, 탈북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안한다.

탈북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관한 선행연구와 실태조사에 대한 문헌분석과 함께 본 연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한다. 양적 연구방법으로 300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위기가구의 인권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질적 연구방법은 1:1 생애구술담 방식, 심층면담 및 서면자문,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로 진행했으며, 26명의 탈북민 및 탈북민 정착지원가 등을 대상으

로 실시했다.³⁾ 첫째, 위기상황을 겪어본 경험이 있는 탈북민 8명을 대상으로 1:1 생애구술담 방식의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탈북민의 위기상황에 따라 위기가구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위기상황의 전개와 심화과정의 구체화를 시도한다. 둘째, 연구진은 2023년 9월 12일에 진행되는 2023년 제2차 북한전문위원회에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일 참석한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위원들과 외부 참여자들의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했다. 셋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개선 방안을 주제로 6명의 전문가를 모시고 심층면담을 2023년 9월 14일에 진행했다. 전문가 심층면담은 정부와 지자체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전문가 심층면담은 연구진이 제시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정책개선 방안에 대해 탈북민 지원기관(남북하나재단, 국책연구기관, 국립트라우마센터, 사회복지관 등) 해당 업무 담당자와 대학교원 등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전문가 심층면담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부처의 협의를 거쳐 최종보고서에 반영했다. 넷째, 탈북민 정착지원 거버넌스 재조정과 탈북트라우마 치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3명의 전문가로부터 서면자문을 받았다. 다섯째, 연구진은 2023년 7월 지역(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9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했다. 7월 13-14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된 FGI는 탈북민이 바라보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의 현주소를 주제로 진행됐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은 모두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 준칙에 의거해 진행되며, 심층면접의 경우 연구대상의 동의 후 음성을 녹음하고 전사하여 사례 내 분석(within-case analysis)과 사례 간 분석(cross-case analysis)의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에 따라서 조사대상자에게 이 조사연구의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고, 자발적으로 심층면담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와 같이 심층면접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윤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와 함께 비밀보장 및 연구윤리 준수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연구진은 일대일 개별 심층면접 과정을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면접내용을 녹취했으며, 트라우마 발설 혹은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 연구대상이 원할 시 인터뷰 자료의 삭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마련했으며, 인터뷰 자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에 따라 관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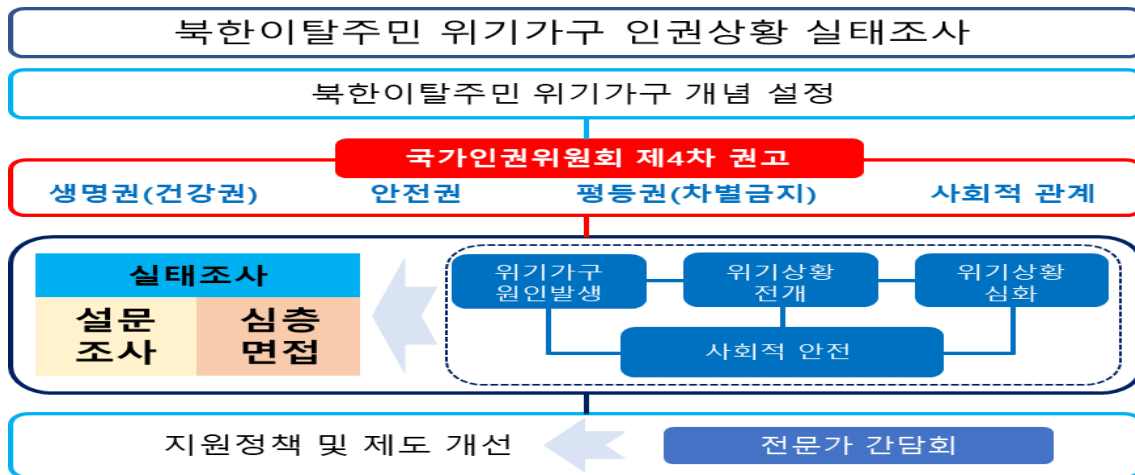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내용 및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을 토대로 본 연구의 주요

3) 연구진은 탈북민 위기가구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위기상황의 전개와 심화과정에 대한 내용을 1:1 구술생애담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했으며, 지역(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FGI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녹취록을 별도로 제출했다.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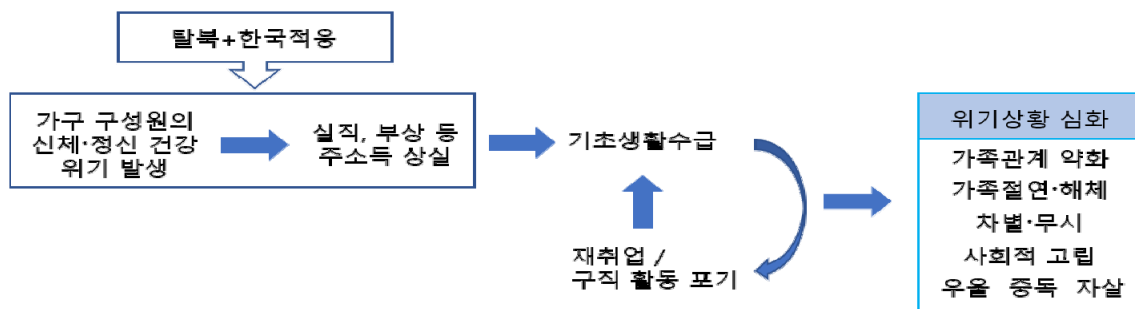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구조도



또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은 <그림 1-2>와 같이 위기가구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심화되며 이것이 악순환되는 구조하에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위기가구 발생 요인과 이 요인들이 가족관계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위기가구로 심화되어 가는지와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이 탈북민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상황을 국가인권위원회(2022)의 제4차 권고를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IV장 2절에 정리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 이러한 위기상황 악순환 구조하에서 위기상황을 경험한 탈북민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위기상황이 전개되고 심화되는 위기가구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찾아낼 수 없는 위기상황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인권상황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구체적 유형은 IV장 3절에 제시하였다.

<그림 1-2> 탈북민 위기상황 악순환 구조도



주: 이 악순환 구조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V장 1절 참조.

4. 선행연구 검토

1) 탈북민 관련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

탈북민 관련 선행연구는 탈북민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련 정착지원 제도와 정책들을 분석하는 데 집중됐다. 1990년대 중반 한국사회로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늘어나자 이들을 위한 정착지원 제도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했다. 당시 탈북민에 대한 연구와 정책은 ‘적응’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이우영 외 2000; 이금순 외 2003).

그러나 적응과 자립·자활 중심의 접근법은 탈북민을 ‘동화’의 대상으로 범주화하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아울러 국가 주도의 경제적 지원으로 탈북민 적응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발생하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2000년대 후반부터 탈북민이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자 국민으로서의 복합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조화를 이루며 일상을 영위하는 데 집중한 사회통합적 관점의 연구와 실태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최대석·박영자 2011; 권숙도 2018; 윤인진 2019).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탈북민 문제에 접근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 중 윤인진 외(2014)는 탈북민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탈북민이 겪는 차별과 배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일반국민과 탈북민 간의 인식의 차이를 조망하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인식 개선 및 지자체 중심으로 상호 간의 교류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탈북민에 대한 사회통합적 접근은 탈북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의 탈북민의 통합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체계’를 본격적으로 고안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하나재단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탈북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해 왔는데, 2016년 이후에는 정착실태 조사와 사회통합 조사를 분리해 실시함으로써, 탈북민의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삶의 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남북하나재단은 국가 단위의 관점에서 탈북민의 정착실태와 사회통합 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영역별 통합지수는 산출하고 있지만 이들을 종합한 종합지수 산출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국가 단위 사회통합이 아닌, 탈북민의 지역사회통합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는 송철종 외(2020)가 있다. 이 연구는 탈북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적응하는 것을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여타 탈북민 사회통합조사나 실태조사와는 달리 지역사회통합에 관한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지수를 산출하였

1. 서론

다. 이는 일반국민의 지역단위 사회통합지표 및 지수를 산출한 차미숙 외(2011)의 연장선상에 있는 연구로 볼 수 있다. 송철종 외(2020)에서는 안정성, 형평성, 응집성, 지속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대분류와 사회 안전, 주거환경, 건강지표, 필수 서비스 접근성, 경제사회적 기회, 소속감, 만족감, 참여, 제도 기반이라는 9개 소분류 구조하에 총 27개 지표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참여 연구진이 제안한 지표체계를 활용하여 광역시도 단위의 탈북민 지역사회통합지수를 산출했다. 다만 송철종 외(2020)의 결과는 자료의 가용성에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 통합지수를 이용하여 광역시도 간 직접 비교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 외에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탈북민의 한국사회 적응과 통합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여나 실업, 빈곤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와 직업 안정성 및 노동 강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며(권숙도 2014; 설진배 외 2014; 설진배·송은희 2015), 탈북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등을 다룬 연구(전우택 2000; 김미령 2005; 최경환 2007)들도 다수 이루어졌다. 또한 탈북여성의 집안일, 출산과 육아, 취업 및 직장에서의 문제 등을 다루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장명선·이애란 2009; 황선영 2009 등).

최근에는 사회통합적 접근이 안고 있는 내재적 한계를 지적하고,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탈북민과 일반 주민 간의 일상 속 상호작용에서 발현되는 ‘관계적·문화적’ 요소와 맥락에 주목한 ‘탈북민 환대와 공생’에 대한 연구와 관련 지표체계 개발을 다룬 연구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홍용표·모춘흥 2019; 최진우 외 2020). 특히 최진우 외(2020)는 ‘환대’개념을 가지고 한국사회에서 탈북민에 대한 환대가 어떠한 조건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는 환대를 ‘탈경계성’, ‘수평성’, ‘공생성’의 세 가지 속성으로 분류하고, 이 분류체계에 기초하여 환대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체계를 제안했으며, 이 지표체계에 근거하여 남북한 출신 주민들 간의 일상적 공생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탈북민의 남한에서의 삶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분석 대상으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따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인권이나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탈북민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4) 사회통합 관점에 기반한 지표체계들은 ‘탈북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남한주민이 탈북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혹은 남한주민과 탈북민 간의 상호작용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간헐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과 탈북민과의 상호작용을 다룬 보고서나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윤인진·채정민 2010; 윤인진 외 2014).

2) 탈북민 인권에 대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주된 초점

지금까지 탈북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계속되고, 사회적 고립의 문제, 탈북 트라우마 등 탈북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해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소속감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극복 등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의 개선과 포용사회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촉구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22/1/12).

그러나 탈북민의 열악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이 겪게 되는 인권피해 상황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탈북민 인권에 대한 연구들은 탈북민의 인권의식 및 인권피해 트라우마, 일터에서의 탈북여성들의 인권피해, 탈북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등에 집중되고 있다.

먼저 탈북민의 인권의식과 인권피해 트라우마와 관련하여, 정상우 외(2016)는 탈북민의 인권의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530명(실제 응답자 503명)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와 탈북민 50명에 대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고,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탈북민의 인권의식은 북한에서의 경험과 중국 등 경유지에서의 경험,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규명했다. 이소희 외(2017)는 탈북민이 북한 거주 시, 탈북 과정, 한국사회 입국 후 겪는 인권침해 상황을 유형화하고, 이들이 겪게 되는 인권침해가 심리적 트라우마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밝히는 데 주목했다. 이소희 외(2017) 연구결과에 따르면, 탈북민이 인권피해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삶의 질 저하가 더 심해지고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여성의 인권피해에 관한 연구로는 김석향 외(2019)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탈북여성 35명과 취업관계자 3명, 고용주 2명, 동료 1명 등 총 4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탈북여성들이 겪는 인권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탈북여성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제도적 차별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나, 일터에서 성희롱이나 일상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대처 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신변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정상우 외(2018)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탈북민 신변보호제도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은 신변보호제도가 보호와 감시의 이중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는

1. 서론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변보호제도를 통해 신변보호담당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들의 활동에 비교적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생활 침해, 정서적 침해, 신체적 침해, 성적 침해, 방임적 침해 등 여러 인권침해 경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탈북민 인권피해 관련 선행연구들은 북한과 제3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사회에 입국해서 탈북민이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인권피해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탈북민) 인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내리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실태와 이들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지원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탈북 모자 사망 사건과 무연고 사망원인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문제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원제도 및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문제에 대한 맥락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탈북민의 입장과 그들의 삶에서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침해 구도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인권은 특정 제도나 사건만으로 기술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법제도나 계량화된 수치만으로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이화진 2011, 370).

이에 본 연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 분석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이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 증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개념 및 정의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이 정책적, 학술적 성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탈북민 정착지원 실무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실제 위기에 빠진 탈북민들은 스스로가 여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실무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문제에 주목하여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정의하는 작업은 이들의 열악한 삶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탈북 트라우마의 문제와 탈북여성의 인권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탈북민 구성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탈북여성의 인권문제를 전생애적 관점의 탈북 트라우마와 탈북민 모자 가정의 빈곤화 문제와 연결 지어서 살펴볼 때,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보다 현실 적합성이 높은 지원제도 및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실태를 조사·연구하는 데 있어서, 탈북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인권침해 경험과 열악한 인권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탈북민 인권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주로 인권침해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인권침해를 받았던 혹은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였던 탈북민들의 대응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조영아 2015, 40). 이에 본 연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구성원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 인권침해 상황과 열악한 인권상황의 구조, 그리고 그들의 대응(혹은 낙담)의 맥락과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이다.

II.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1. 탈북민 정착지원체계와 정착지원제도

1) 정착지원체계

탈북민을 위한 정착지원체계는 법률적 체계와 행정적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법률적 지원체계에서는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탈북민의 지위 변화를 살펴보고, 현행 탈북민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의 변화와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북한이탈주민법률」의 하위 법령을 열거한다. 이때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와 관련된 법률 조항 및 하위 법령을 파악한다. 행정적 지원체계에서는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의 현황, 전달체계, 담당 인력, 탈북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변화를 파악한다.

(1) 법률적 지원체계⁵⁾

①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의 변화

현재의 탈북민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의 효시는 1962년 4월 제정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다.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을 명시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보훈복지의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처우 받았던 것이다. 이후 1979년 1월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정을 통해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온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였고, 이전보다 더 체계화된 지원”을 실시하였다.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하에서는 관련 업무를 국방부 내 원호처에서 담당하였는데,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제정과 함께 국가보훈처가 담당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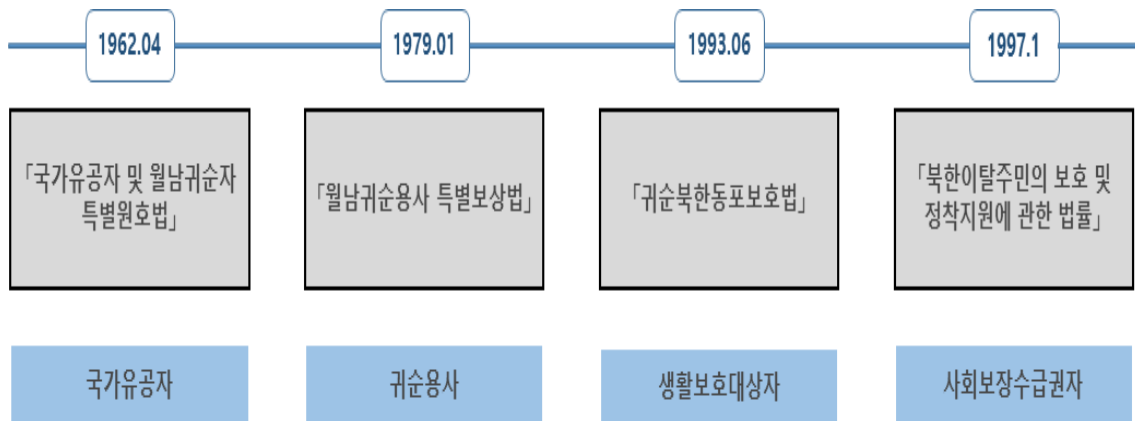
1993년 6월에는 기존 법률을 대체하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해당 법률 제정 이후 “귀순자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다 생활능력이 결여된

5) 법률적 지원체계 중 역사 서술과 관련하여 통일부 홈페이지(2023)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을 재구성하였음.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도 하향 조정하는 등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였다. 해당 법률에서는 탈북민을 기존의 국가유공자나 귀순용사 대우가 아닌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관점에서 지원하였다.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현행의 탈북민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로 이어져 왔다. 이후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사회복지대상자가 단순히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변화함에 따라, 탈북민도 배려 대상으로서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회권을 보유한 사회보장수급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탈북민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의 변화는 4개의 법률 변화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탈북민의 지위 내지는 탈북민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하였는데,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하에서는 국가유공자로서,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하에서는 귀순용사로서, 「귀순북한동포보호법」하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하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자로서 지위가 변화되어 왔다.

<그림 2-1> 탈북민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와 탈북민 지위의 변화



자료: 저자 작성.

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변화와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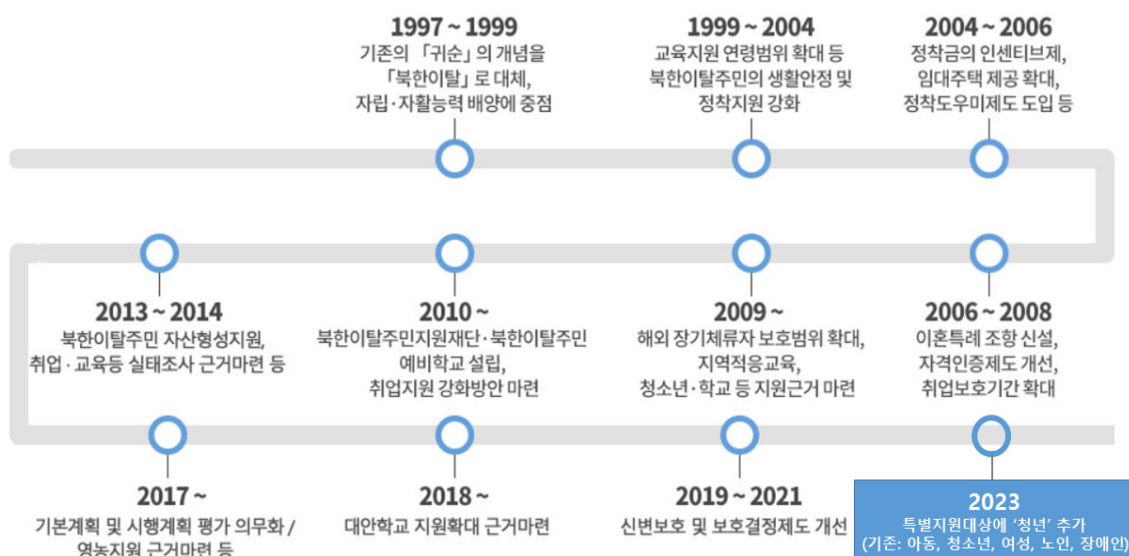
현재 탈북민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는 1997년 1월 13일 제정되고,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다. 제정 당시 해당 법률의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北韓”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바

II.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있다.

2023년 7월 현재까지 총 27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탈북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관련 조항을 변화시켜 왔다. 주요한 법률 개정 내용을 살펴보자. 1997년 최초의 법률 제정을 통해 귀순에서 북한이탈로 개념을 변화시키고, 탈북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탈북민을 자립·자활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일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보호대상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인도주의에 입각한 특별한 보호라는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 2000년 초반 법률 개정에서는 교육지원 연령 범위 확대 등 탈북민의 생활안정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였고, 2000년 중반 법률 개정에서는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공 확대, 정착도우미제도 도입, 자격인증제도 개선, 취업보호기간 확대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2010년도에 들어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및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 자산형성지원 사업, 취업·교육 등 실태조사 근거 마련, 탈북민 정착지원 기본계획(3년 주기)과 시행계획(매년) 마련 및 평가 의무화, 대안학교 지원확대 근거 마련, 신변보호 및 보호결정제도 개선 등을 도입하였다. 가장 최근의 2023년 법률 개정에서는 특별지원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다.

<그림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변화:
1997년~2023년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2023)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에서 2023년도 내용을 추가함(최종 검색일: 2023/6/27).

현행 탈북민 법률적 지원체계를 「북한이탈주민법」을 통해 파악해보자.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다양한 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법률 내용을 규범적 체계와 실효성 체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때 ‘규범적 체계’란 관련 법률이 갖는 본질적 성격에 해당하는 이념과 원칙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 체계의 주요소인 법의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자의 요건 및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 위임과 위탁 등으로 구성되며, ‘실효성 체계’란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의미하며, 주요소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실태조사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한 조항, 서비스 공급 조직, 인력 등이다(오세민 외 2014, 79; 민기채 외 2021, 348).

규범적 체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본원칙),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다. 실효성 체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보호기준 등),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제7조(보호신청 등), 제8조(보호 결정 등),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제11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제12조(등록대상), 제13조(학력 인정), 제14조(자격 인정),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제16조(직업훈련),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제17조의4(세제혜택),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제17조의6(창업 지원), 제18조(특별임용),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제20조(주거지원 등),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제22조(거주지 보호),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제22조의3(전문상담사제도 운영), 제23조(보고 의무), 제24조(교육지원),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25조(의료급여 등), 제26조(생활보호),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제26조의3(생업 지원),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제27조(보호의 변경), 제29조(비용 부담),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2조(이의 신청), 제33조(벌칙), 제34조(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각 조항 중 위기가구와의 관련성이 있는 조항은 다음의 <표 2-1>에 ● 표기를 하였다. 그것들은 제2조(정의),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보호기준 등),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제17조(취업보호 등), 제20조(주거지원 등), 제22조의3(전

II.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문상담사제도 운영), 제24조(교육지원), 제25조(의료급여 등), 제26조(생활보호)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이다.

<표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구분	조항 제목	위기가구 관련성
규범적 체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본원칙)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실효성 체계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제5조(보호 기준 등)	●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
	제7조(보호 신청 등)	
	제8조(보호 결정 등)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제11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제12조(등록대장)	
	제13조(학력 인정)	
	제14조(자격 인정)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제16조(직업훈련)	
	제17조(취업보호 등)	●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제17조의4(세제혜택)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제17조의6(창업 지원)	
	제18조(특별임용)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제20조(주거지원 등)	●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제22조(거주지 보호)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
제22조의3(전문상담사제도 운영)	●
제23조(보고 의무)	
제24조(교육지원)	●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25조(의료급여 등) 제26조(생활보호)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제26조의3(생업 지원)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
제27조(보호의 변경)	
제29조(비용 부담)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2조(이의신청) 제33조(벌칙) 제34조(과태료)	

자료: 저자 작성.

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북한이탈주민법」의 하위 법령은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이 있다. 하위 법령 중 위기가구와의 관련성이 있는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라고 할 수 있다. 위기가구와의 관련성이 있는 법령에 다음의 <표 2-2>와 같이 ● 표기를 하였다.

II.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표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구분		제·개정일	법령명	위기가구 관련성
시행령		2022. 11. 29.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2022. 6. 21.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 규칙	훈령	2021. 10. 28. 제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 규	
		2022. 12. 19.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2021. 2. 24. 제정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
	예규	2021. 11. 11. 제정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 한 예규	●
		2021. 12. 31. 제정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
		2023. 1. 5.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 한 예규	●
		2022. 1. 3. 제정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	●
		2022. 8. 16. 제정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고시	2022. 4. 5. 제정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 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2022. 2. 17.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2021. 5. 27.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주: 제·개정일은 가장 최근을 기준으로 함.

자료: 저자 작성.

(2) 행정적 지원체계

①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

탈북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단체 간의 거버넌스로 구축되어 있다. 행정적 지원체계는 중앙정부(통일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때 정책과 행정의 협력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중앙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가 구성되는데, 해당 협의회는 통일부가 주도하여 23개 부처, 기관, 지자체가 함께하여 정책과 행정을 조율한다. 「북한이탈주민법」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 따르면,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③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를 총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협의회의 구성)에 따르면, “1.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대통령비서실·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경찰청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및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개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실장·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23개 부처·기관·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의회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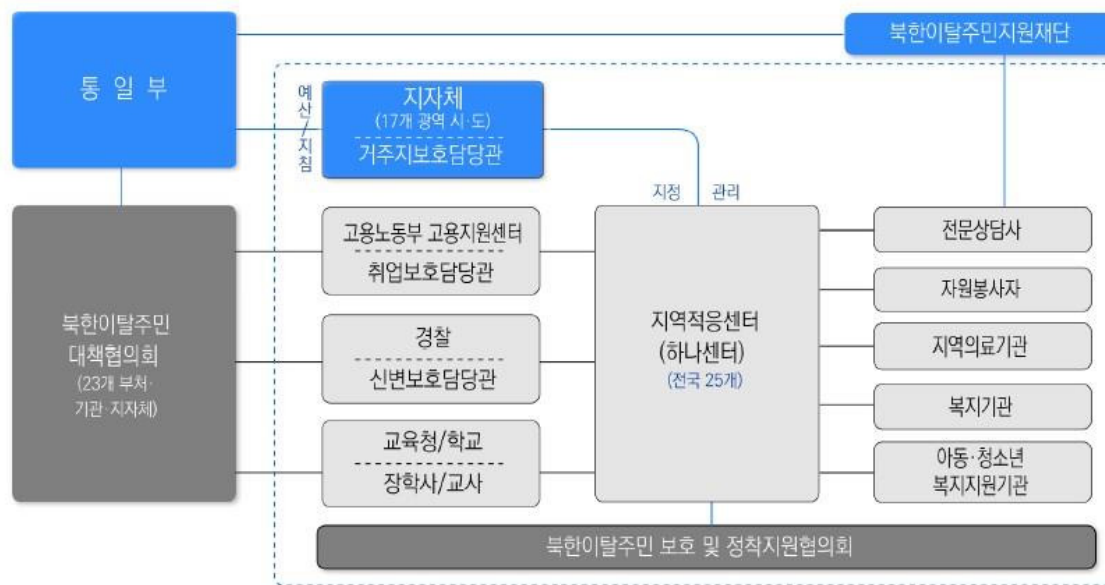
협의회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주요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에서 관장한다. 전국 25개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 시행의 과정에서 지역단위의 거버넌스가 작동된다. 17개 광역 시·도 지자체와 함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취업보호담당관, 경찰 및 신변보호담당관, 교육계(교육청, 학교, 장학사, 교사), 전문상담사, 자원봉사자, 지역의료기관, 복지기관, 아동·청소년 복지지원기관이 협업하는 구조이다. 이때 탈북민의 정착지원 사업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도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가 운영된다. 예를 들어, 탈북민의 거주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적응센터가 탈북민 특성과 지역 여건에 따른 정착지

II.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원 서비스 제공하는 형태인데,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 지역 내 민간단체 및 지역 거주 탈북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차원의 정책협의체인 지역협의회를 운영한다(통일부 2022, 14).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의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지역적응센터의 예산과 지침은 통일부에서 결정하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인건비 관리 및 인력 파견을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위탁기관 지정과 사업비 관리를 담당하고, 지역적응센터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사례관리 등은 거주지보호담당관과 지역협의회의 관리를 받는다(문인철·송미경 2022, 40).

이상과 같이 탈북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는 공공과 민간의 협치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요컨대 통일부-남북하나재단-지역적응센터의 주도적 역할 속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단체 간의 거버넌스를 통해 탈북민을 위한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적 지원체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3> 탈북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



주: 그림 왼쪽에서의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23개 부처·기관·지자체)'는 「북한이탈주민법」 제6조에서 규정한 '중앙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며, 그림 아래 쪽에서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는 '지역 차원'의 협의회이다.

자료: 통일부(2022, 14)

②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탈북민 정착지원 전달체계는 주민센터,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시·도(광역자치단체), 고용센터, 경찰서,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 등이 있다. 전달체계의 정점에는 남북하나재단(법률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있다. 남북하나재단은 2010년 3월 2일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해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법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 항목은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7.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8.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8의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정착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 항목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별도의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남북하나재단이 중앙 차원에서 탈북민 정착지원사업을 관장한다면, 탈북민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나센터 운영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전국 25개 하나센터가 탈북민을 지원하고 있다.

II.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그림 2-4> 탈북민 정착지원 전달체계별 주요 정착지원 서비스

주민센터	<초기> • 전입신고 • 인감등록 • 주민등록등본 발급 • 임시주민등록증 발급(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 <정착 후> • 국민기초생활수급 혜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생계비, 기타 지역사회 연계)
시·군·구 (기초) (거주보호담당관)	• 임대주택 특약 체결·해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민원서류 발급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시·도 (광역) (거주보호담당관)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운영 지원·관리 • 임대주택 배정 및 거주지 전입자 명단 통보 •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보고(반기별)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	• 직업상담, 직업훈련 안내 • 취업알선 • 고용지원금 접수·신청 • 고용실태조사 • 취업보호자료 작성·관리 등 담당
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남북하나재단	• 초기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 취업 및 고용촉진을 통한 자립 실현 • 거주지 전입 이후 정착금 지급 (미래행복통장, 교육지원금, 장애·장기치료·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남북한 주민 상호이해 및 인식개선 • 청소년 교육 지원 및 생활실태 조사
하나센터	• 하나원 퇴소 시 신변인수 • 초기 집중교육(8일, 50시간) 및 사후지원 • 정착도우미 제도 운영

자료: 통일부(2022, 36)

③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인력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별도의 인력이 있는데, 핵심 인력은 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 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별도 인력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는 거주지보호담당관, 고용센터에는 취업보호담당관, 경찰서에는 신변보호담당관, 하나센터 및 남북통합문화센터에는 전문상담사, 하나센터에는 정착도우미가 있다. 이들은 모두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와 밀접히 관련된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3> 탈북민을 위한 지원인력

구분	법률근거	역할 및 현황	소속
거주지 보호 담당관	「북한이탈주민 법」 제22조 (거주지 보호)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지보호기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를 담당할 담당관 지정 - 2022년 9월 기준 245개 지자체에서 거주지보호담당관이 탈북민의 거주지 정착지원과 각종 행정지원업무 담당(약 240명) - 주요 업무 : 거주지 보호업무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긴급의료 지원(음·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협조) : 탈북민 등록 확인서, 학력 확인서, 경력(자격)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배우자의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탈북민(신원 사실관계, 가족관계)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에 관한 사항 : 탈북민 생활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 관리(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 : 탈북민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정·운영 : 탈북민 지원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 종교,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결연 및 후원추진 등	지방 자치 단체
취업 보호 담당관	「북한이탈주민 법」 제17조 (취업 보호 등)	- 2022년 11월 기준 전국 70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 지정 탈북민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을 담당(약 70명) - 주요 업무 : 직업훈련 신청서 접수 및 내담자 면담 : 훈련상황 확인 및 기록유지	고용 센터

II.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 취업장려금·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통일부(하나원)에 송부 : 탈북민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 탈북민 고용실태조사 및 취업보호대장 관리 : 탈북민지원 지역협의회 참여 : 구인·구직자 발굴 및 취업 연계 : 지역적응센터, 탈북민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과 협력관계 유지	
신변 보호 담당관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의2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신변보호담당관 지정,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담당(약 900명) - 주요 업무 :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 탈북민의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경찰서
전문 상담사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의3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 거주지에 전입한 탈북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 제공 - 2022년 11월 말 기준 전문상담사 근무 인원은 80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 - 전문상담사는 심리·취업·복지분야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재단과 전국 지역적응센터에 2010년 1월부터 배치 - 주요 업무 : 전문적 상담서비스	하나 센터 (78명) 및 남북통 합문화 센터 (2명)
정착 도우미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1조의2	- 탈북민이 하나원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 - 2021년 12월 기준, 전국 25개 지역적응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총 1,953여 명이 전국에서 활동 - 1세대당 1~2명의 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지원 - 주요 업무 : 초기 거주지 생활정보나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주거밀착형 정착지원체계로 다양한 계층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경조사 지원, 지역안내, 명절 함께 보내기 등 초기 정착지원	하나 센터

자료: 통일부(2022, 51, 78, 136, 142, 143) 재구성.

④ 탈북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변화

2014년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해, 3년 주기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과 매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법 제4조의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②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들은 6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첫째,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둘째,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에 관한 사항, 셋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넷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다섯째,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여섯째,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정착지원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3년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가장 먼저 2014년 12월 19개 정부 부처·기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그간 수행되어왔던 지원사업 및 신규 지원사업을 종합하여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을 수립하였다. 이후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과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9번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여 왔다. 이러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실무회의,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관계부처합동 2021a, 3).

탈북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개요, 성격, 주요 정책분야를 살펴보자. 먼저 제1차 기본계획은 최초의 정착지원 기본계획으로서 5대 분야 20개 정책과제를 갖는데, 5대 분야는 자립·자활역량 강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사회통합 강화, 정책추진체계 정비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을 지향하는 기본계획으로서 7대 분야 22개 정책과제를 갖는데, 7대 분야는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 정비, 하나센터 기반 강화 및 지원인력 역량 강화, 취약 탈북민 보호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 탈북민을 포용하는 우리 사회 환경 조성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사회적 통합지향형 정착지원을 지향하는 기본계획으로서 6대 분야 24개 정책과제를 갖는데, 6대 분야는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탈북민 보호·지원체계 내실화,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지원,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정착지원 시설·인력 기반 강화이다.

기본계획에서 위기가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분야는 제2차 기본계획

II.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중 ‘취약 탈북민 보호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과 제3차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이다.

<표 2-4> 탈북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변화: 1차~3차

구분	제1차 기본계획 (2015~2017)	제2차 기본계획 (2018~2020)	제3차 기본계획 (2021~2023)
개요	5대 분야 20개 정책과제	7대 분야 22개 정책과제 *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탈북민 보호를 강화 - 취업·교육·생활서비스 등 확대	6대 분야 24개 정책과제 * 제2차 기본계획 발전적 계승,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의 내실화 -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 정부부처 협업 및 지자체 참여 확대
추진 기관	19개 중앙행정기관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성격	최초의 정착지원 기본계획 수립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사회적 통합지향형 정착지원
분야	자립·자활역량 강화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탈북민 보호·지원 체계 내실화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u>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u>
	사회통합 강화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 정비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지원
	정책추진체계 정비	하나센터 기반 강화 및 지원인력 역량 강화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u>취약 탈북민 보호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u> 탈북민을 포용하는 우리 사회 환경 조성	정착지원 시설·인력 기반 강화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 6); 관계부처합동(2021a, 15); 관계부처합동(2021b, 4) 재구성.

2) 정착지원제도

(1) 국내 정착과정

탈북민의 입국 및 정착과정 흐름도를 통해 탈북민의 국내 정착과정을 이해해 보자. 탈북민은 보호요청 및 국내이송 절차 이후 국내에 입국한다. 국내입국 후에는 조사 및 임시보호 조치로서 하나원으로 이송되며,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가 결정되고,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 및 초기정착지원(주거알선, 정착금, 장려금)을 받는다. 하나원에서 12주 동안의 교육 이후, 거주지로 전입되어 5년간의 거주지 보호를 받는데, 거주지 전입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받는다.

<그림 2-5> 탈북민의 입국 및 정착과정 흐름도



자료: 통일부(2022, 15)

II.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2) 주요 정착지원제도

탈북민을 위한 주요 정착지원제도는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주요 정착지원제도는 사회적응교육,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보장, 교육, 상담 지원제도이다.

<표 2-5> 탈북민을 위한 주요 정착지원제도

구분	항목	내용
사회 적응 교육	기본교육 (하나원)	하나원 12주, 400시간 교육
	지역적응교육 (지역적응센터)	전국 지역적응센터 8일, 50시간 초기집중교육 및 지역적응지원
정착 금	기본금	1인 세대 800만 원, 2인 세대 1,400만 원, 3인 세대 1,900만 원, 4인 세대 2,400만 원, 5인 세대 2,900만 원, 6인 세대 3,400만 원, 7인 세대 이상 3,900만 원 ※ 23년부터 세대별 100만 원 인상 추진
	지방거주 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 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 고령가산금(만 60세 이상인 자): 800만 원 - 장애가산금: 1,540만 원(중증), 360만 원(경증) -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입원시): 1개월 에 80만 원(최대 9개월까지)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보호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 세대당 400만 원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50 만 원
주거	주택알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연계하여 임대주 택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1,600만 원, 2인~4인 세대 2,000만 원, 5인 이상 세대 2,300만 원(보증금의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지급)
취업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 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 직업훈련 500시간 이수 시 120만 원 : 120시간당 20만 원 추가, 최대 740시간 이수 시 160만 원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시 200만 원 추가) - 자격취득 시 200만 원 ※ 자격취득장려금 및 직업훈련장려금은 '14.11.29. 이후 폐지. 다만, '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사람에게는 적용
	취업장려금	3년간 근속 시 최대 수도권 1,800만 원, 지방 2,100만 원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급여의 1/2을 50만 원 한도에서 기본 3년, 최대 4년간 지원 ※ 고용지원금은 '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사람에게 적용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적립 목적: 주택구입비,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 등 - 지원 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4년) - 적용 대상: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사람 - 약정 금액: 소득의 30% 범위 내, 월 최대 50만 원
	기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영농정착, 창업지원, 취업바우처 등
사회 보장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보호	의료급여 수급자 ※ 2023년 입국자부터 근로능력 등에 따라 1종, 2종 수급자로 구분
	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 시 정원 외 특례입학
	학비지원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자료: 통일부(2022, 16-17)

2. 탈북민 정착 및 사회통합의 현주소

1) 이론적 논의

탈북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사회통합을 따르고 있다.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는 사회통합을 하나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으며 탈북민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도 이러한 논의를 따르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통합의 개념적 논의를 간단하게 정리한 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탈북민의 정착 및 사회통합에 관해 연구한 기존 문헌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⁶⁾

사회통합이란 사회적 포용(inclusion), 사회적 결합(integration), 사회적 응집(cohesion)으로도 이해되고 있는데, 이들 용어는 사회통합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의미로 혼용되기도 한다. 사회통합이라는 용어가 추상적이어서 연구자마다 유사한 용어를 이용하여 사회통합을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Fairclough(2000)은 사회적 포용을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대응시키고 있다. Nash et al.(2006)은 사회적 결합(integration)을 정체성이 다양한 구성원들의 공존의 문제로서 인식하였다. 최근에는 사회적 응집을 통해 사회통합을 설명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적 접근은 Bernard(1999)와 Berger-Schmitt(2002) 등으로 대표된다. Bernard(1999)는 사회통합을 경제, 정치, 사회문화의 영역에서 객관적 특성과 주관적 행태에 의해 정의하였는데 이는 아래의 <표 2-6>에 정리하였다. 이는 사회통합을 평등(equality), 포용(inclusion), 참여(participation), 정당성(legitimacy), 인정(recognition), 소속감(belonging)의 여섯 가지 개념들을 통해 정의하였다. 포용은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며, 평등은 빈곤과 배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참여는 정치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며, 사회제도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가치관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동시에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Bernard(2000)는 사회통합의 개념이 복합적(hybrid)임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필요에 의해 유동적으로 정의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국제연합(UN)이나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차용하면서 사회적 배제 등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개념적 기초가 되었다.

6) 이론적 논의는 송철종 외(2020) '지역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연구: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을 중심으로'의 제2장 제1절과 제4장 제1절을 바탕으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표 2-6> Bernard(1999)의 사회통합 개념

구분	객관/특성	주관/행태
경제	포용/배제	평등/불평등
정치	정당/부당	참여/수동
사회문화	수용/거절	연대/소외

자료: Bernard(1999); Dickes et al.(2009)와 송철종 외(2020)에서 재인용.

Berger-Schmitt(2002)는 Bernard(1999)가 제시한 사회통합의 개념을 보다 축약하여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Berger-Schmitt(2002)는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의 축소’와 ‘사회자본의 강화’라는 두 가지 차원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배제란 사회경제 및 제도적 제약들로 인해 사회적 소외가 축적되어 온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적 배제의 대표적 현상인 빈곤을 단순히 경제적 현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소외가 축적되어 사회적 배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회구조적 현상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 외에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등), 실업, 보건, 교육, 주거, 안전 등 여러 사회구조적 현상을 사회적 배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결과로 인식한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함께 호혜성과 신뢰성이 결합된 것으로 경제적인 관점의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표 2-7>은 이러한 Berger-Schmitt(2002)의 사회통합의 개념틀을 보여준다.

<표 2-7> Berger-Schmitt(2002)의 사회통합 개념

대분류	중분류	지표
1. 포괄적인 사회통합의 조건	경제조건	소득 양극화(분배), 빈곤, 고용(실업), 이동성
	삶의 기회	보건, 교육, 주거
	삶의 질	보건, 안전, 경제적 안정성, 가족관계, 네트워크, (외부)자연환경 등
2. 사회적으로 통합적인 활동	협조	신뢰, 다양성 및 호혜성, 소속감
	참여	사회적 네트워크, 네트워크 참여, 정치적 참여
	문맹	-

자료: Berger-Schmitt(2002); 송철종 외(2020)에서 재인용.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연구는 정책문제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에 관한 개념틀을

II.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정립하고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고 있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정책문제가 아닌 보다 좁은 의미에서의 이론적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Chan et al.(2006)과 Schiefer and van der Noll(2017) 등은 사회통합의 개념을 최소화하여 접근하되 불평등이나 삶의 질은 사회통합과 인과관계로 개념이 정리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Chan et al.(2006)은 사회통합을 수평적·수직적 상호관계의 틀 속에서 접근하였다. 수평적 상호관계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상호관계이며, 수직적 상호관계는 개인과 정부 사이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상호관계를 주관적 차원, 객관적 차원과 결합시켰다. 이는 아래의 <표 2-8>에 정리하였다.

<표 2-8> Chan et al.(2006)의 협의적 사회통합의 하위 차원

구분	주관적 차원(심리적 상태)	객관적 차원(행동적 표현)
수평적 차원 (시민사회 내 통합)	일반 시민에 대한 신뢰, 시민 및 타인에 대한 협력 또는 도움 의지, 소속감 및 유대감	사회참여와 시민사회의 활동성, 자원봉사와 기부
수직적 차원 (국가-시민의 통합)	공적 기관(정치인, 기관 등)에 대한 신뢰	정치적 참여(투표, 정당 등)

자료: Chan et al.(2006); 송철종 외(2020)에서 재인용.

Schiefer and van der Noll(2017)은 사회통합의 개념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관계, 유대감 및 소속감, 공공선에 대한 지향 등은 사회통합의 핵심주제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빈부격차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빈부격차의 정도로 사회통합의 정도를 측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빈곤한 사회가 꼭 사회통합이 낮은 사회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높은 삶의 질은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만 삶의 질 자체로 사회통합의 정도를 측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삶의 질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통합이 높은 사회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빈부격차와 삶의 질이 사회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빈부격차가 낮고, 삶의 질이 높은 사회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사회통합을 증진 시키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는 사회통합에 이르는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존재한다.

다만 김성근·유자영(2018)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사회통합에 대한 협의적 접근은 인과관계 규명에는 적합하지만 이를 이용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협의의 사회통합이 주관적 지표를 핵심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정책 활용에 유용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이다. 주관적 지표는 결국 개인의 인식 조사에 기초하는데 이는 대표성 및 측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야 하는 정책개발의 영역에는 활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국가 단위와 지역사회 단위로 구분하기도 한다. 국가 단위와 지역사회 단위를 쉽게 구별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로 구분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사회통합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국가 단위와 지역사회 단위로 구분하지 않은 것이라면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지역사회(community)는 단순히 지역적 단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사회라는 것은 물리적, 지리적 구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유대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행정구역과도 구별될 수 있다. 국가 단위와 지역사회 단위를 구별할 때에는 국가라는 하나의 큰 단위의 하부 단위로 지역사회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행정구역에 가깝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몇 개의 행정구역 단위를 묶어서 지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논의할 때 지역사회란 단순히 물리적, 지리적 단위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을 넘어선 개념으로 구성원들의 유대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역사회 단위의 사회통합에 관한 국내 연구로 차미숙 외(2011)과 김성근·유자영(2018)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Berger-Schmitt(2002)의 개념틀을 지역사회통합에 적용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미숙 외(2011)는 지역사회를 광역 단위로 설정하여 객관적 지표와 수집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통합을 논의하였다. 반면에 김성근·유자영(2018)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통합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통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사회통합지표를 만드는 연구로 이어진다. 국가 단위의 사회통합지표를 논의한 국내 연구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노대명 외(2009)는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사회통합에 관한 지표를 구축한 바 있다. 박명호 외(2011)는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연대 등의 인식을 넘어 좋은 정부 및 분배까지 확대한 사회통합의 정의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사회통합지표체계를 구축하였다. 강신욱 외(2012)는 사회통합의 상태와 조건을 정립한 후 실제 사회통합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집중하는 사회

II.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통합지표를 구축하였다. 이재열 외(2014)는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갈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양극화를 측정한 바 있다. 정해식 외(2016)는 OECD(2011)의 사회통합 개념을 차용하여 사회통합지표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의 사회통합을 국제비교하였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통합지표 연구로 박은희(2009)는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동성의 4개 대영역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사회통합지수치를 비교하였다. 송미령 외(2011)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지수를 측정한 바 있다. 김선희 외(2008)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지수를 구축하였다. 차미숙 외(2011)는 박은희(2009)와 조금 다르게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지속가능성의 4개 영역에서 광역시도 중심의 지역사회통합지표체계를 제안하였다. 김성근·유자영(2018)은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자본으로 두 개 영역을 구분한 뒤 17개 경험지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통합을 논의한 바 있다.

2) 지표와 실태

탈북민의 사회통합 지표를 소개하기에 앞서 기존 연구들이 사회통합지표체계를 구축할 때 관심을 기울였던 네 가지 영역을 먼저 소개하고 이 영역들이 탈북민의 생활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차미숙 외(2011)는 지역단위 사회통합지표체계를 구축하면서 안정성, 형평성, 응집성, 지속가능성이라는 대분류를 제안하였고, 송철종 외(2020)에서는 이 네 가지 영역을 탈북민의 지역사회 통합지표체계 구축과 통합지수 산출에 적용하였다.

(1) 안정성

안정성은 사회적 안전과 가정에서의 안정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발간하는 탈북민 사회통합조사에는 사회적 안전과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폭력 및 범죄 피해 경험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는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상해를 포함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2017) ‘2016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서는 탈북민의 폭력 및 범죄 피해 경험이 전반적

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횟수를 묻는 질문에 88.1%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있다’고 응답한 11.8%의 평균 경험 횟수는 7.0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 구속, 강도 등의 신체적 상해 경험에 대해서는 97.3%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있다’고 응답한 2.4%의 평균 경험 횟수는 2.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나 절도와 같은 경제적 범죄의 피해 경험에 대해서도 ‘없음’은 94.8%, ‘있음’은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범죄를 경험한 횟수는 평균 1.4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조사보고서에서 탈북민은 범죄 발생(50.7%), 국가안보(47.6%), 경제적 위험(26.3%) 순으로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남북하나재단(2022a) ‘2021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서는 근로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면서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등 직장 내에서의 폭력 방지 노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48.5%가 ‘만족’, 17%가 ‘보통’, 2.6%가 ‘불만족’, 31.9%가 ‘해당 없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에 비해 불만족 응답은 줄었으나 만족 응답도 줄어든 결과이다.

탈북민의 안정성에는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주거에 대한 만족도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남북하나재단(2022b) ‘202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가족관계에서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2%, 보통이 19.9%, 불만족이 2.9%인 것으로 나타났다.⁷⁾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 만족도에서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4.5%로 탈북민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일반국민의 평균보다 높다. 이를 가족관계 별로 보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인 응답이 83.9%로 가장 높고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족인 응답이 80.8%, 자기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만족인 응답이 78.6%,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인 응답이 74.2%,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족인 응답이 69.7%,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만족인 응답이 64.4%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적 가족관계에서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7.4%), 배우자와의 관계(6.1%),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5.8%), 자기 부모와의 관계(4.5%), 자기 형제자매와의 관계(4.3%), 자녀와의 관계(4.0%)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도에서 나타난 특징은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보다는 자녀와 자기 부모나 형제자매와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해당 조사보고서에서 전체 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47.2%로 나타났다. 남성 탈북민의 경우 배우자의 출신 지역으로 북한이 83.5%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9.0%, 남한이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 탈북민의 경

7) 여기서 만족은 ‘매우 만족’과 ‘만족하는 편’을 의미하고 불만족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하는 편’을 의미한다.

II.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우 배우자의 출신 지역으로 남한이 45.2%, 중국이 29.1%, 북한이 2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성별 비중이 남성이 24.5%, 여성이 75.5%인 것과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남성의 비중이 48.5%, 여성의 비중이 46.7%인 것을 고려해보자. 이를 통해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남한 출신 배우자를 가진 여성 탈북민, 중국 출신 배우자를 가진 여성 탈북민, 북한 출신 배우자를 가진 남성 탈북민, 북한 출신 배우자를 가진 여성 탈북민의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 출신 배우자를 가진 탈북민의 비중은 약 40%이며 남한, 중국, 기타지역 출신 배우자를 가진 탈북민의 비중이 약 60%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보다는 자녀와 자기 부모나 형제자매와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북한 출신이라는 동질감이 가족관계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2) 형평성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주민의 삶의 형평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필수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와 다른 하나는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갖는가이다. 탈북민 생활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형평성과 관련이 깊은 문항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직업교육 및 훈련 등이 있다. 현재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은 거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도 열악한 보건의료상황에 놓여있었지만 탈북 과정에서 머무른 제3국에서도 보건의료상황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에 있게 된다. 그 결과, 남한에 입국해서야 자신의 질병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치료를 받게 되는 경험을 하곤 한다. 열악한 보건의료상황에 놓여있던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 때에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권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건강권에 대한 충분한 보장은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의 기본이다. 남북하나재단(2022b) ‘202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탈북민 중 지난 1년 동안 병원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는 ‘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 조사한 일반국민의 의료 미충족 비율이 2019년에 15.1%, 2020년에 15%인 것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탈북민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의료비가 부담되는 등 경제적 이유로 미충

죽 의료가 발생한 비율이 약 5%인데 이는 ‘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 발표한 일반국민의 2.6%에 비해 다소 높다. 이는 눈여겨 볼 만한 조사 결과이다.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가입률도 사회통합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발간하는 임순희 외(2022)의 ‘2022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에 따르면 탈북민 취업자 중 67.0%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는 남한주민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사회보험 가입률로 보면 탈북민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에서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다.

탈북민에게 경제적 기회의 균등은 고용 및 생계에 관한 부분에서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은 개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을 얻는 수단이다. 남북하나재단(2022c)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고용률은 59.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고용률은 74.8%, 여성 고용률은 5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정착지원법에 따라 탈북민은 입국 후 5년 동안 특례를 적용받는데 이 기간 동안 남한주민과 동일하게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임순희 외(2022)의 ‘2022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에 따르면 탈북민 중 생계비 수급비율은 32.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일반국민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4.6%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이는 정착과정에서 취업 등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 탈북민이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응집성(소속감)

사회통합을 적응의 관점에서 보자면 소속감은 탈북민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에 탈북민 실태조사에는 소속감과 관련한 많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과 함께 혹은 혈혈단신으로 남한사회에 정착하게 되는 탈북민들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만들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소속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소속감 형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지 남한이 아닌 제3국으로의 이민도 고려하게 된다. 임순희 외(2022)의 ‘2022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에는 이와 관련한 문항이 있는데, 북한으로의 복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81.2%가 거의 없거나 한 번도 없었다는 응답을 했지만 18.8%의 응답자는 ‘가끔, 종종 또는 많이 한다’는 응답을 선택하였다. 북한 복귀의 주된 이유로는 가족이 그리운 경우가 39.6%, 고향이 그리운 경우가 37.6%,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

II.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가 15.8%였다. 임순희 외(2022)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재입북 의지가 아니라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토로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즉,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남한의 지역사회에서 소속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익숙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탈북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차별과 무시,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다. 송철종 외(2020)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남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에 탈북민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지역사회에서 대한 안정적 소속감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남한주민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사회적 고립이 된다. 이는 남한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급기야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남북하나재단(2022b) ‘202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자살충동을 경험한 비율이 1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이나 장애가 32.7%, 경제적 어려움이 22.4%, 외로움과 고독이 12.8%, 가정불화가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가 형성되는 원인 또는 상황으로 신체적 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주 수입원이 상실되는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나 가족 해체, 사회적 고립 등을 고려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 지속가능성

송철종 외(2020)에서는 탈북민 사회통합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를 언급하였다. 남한사회에 대한 참여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관련이 깊다. 지속가능성으로서의 참여는 탈북민의 능동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남한주민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은 앞에서 언급한 안정성, 형평성, 응집성의 밑바탕이 되는 속성이다. 남북하나재단(2022a) ‘2021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사회단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단체 유형으로는 종교 단체가 42.8%, 시민사회단체가 39.1%, 친목 및 사교 단체가 25.4%, 취미, 스포츠 및 레저 단체가

16.1%, 학술단체가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철종 외(2020)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이를 지역주민 혹은 지역사회에서의 교류와 어울림으로 인식하고 탈북민의 삶의 지속가능성으로 이해하였다.

(5) 탈북민 지역사회통합의 현주소

탈북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통합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송철종 외(2020)가 대표적이다. 송철종 외(2020)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안정성, 형평성, 응집성, 지속가능성이라는 네 개의 대분류 체계 속에서 지역사회통합지수를 추정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제안하였고,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실제 탈북민의 지역사회통합지수를 실험적으로 추계하였다. 송철종 외(2020)에 앞서 남북하나재단에서 발간한 권은성 외(2018)는 탈북민의 정착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에서 통합지표체계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통합지수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통합을 분석한 송철종 외(2020)와 달리 국가 단위의 통합지수를 산출하였으나 사회통합의 모든 영역을 종합한 종합지수를 산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남북하나재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탈북민 사회통합조사에서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지표를 구성하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지역 구분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송철종 외(2020)는 안정성, 형평성, 응집성, 지속가능성의 대분류를 9개의 소분류로 나누고 소분류를 잘 나타내는 총 27의 지표를 제안하였다. 다만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제안한 지표를 모두 활용할 수는 없어 각 소분류별로 1~2개의 대표지표를 이용하여 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의 탈북민 지역사회통합지수를 추계하였다. <표 2-9>는 송철종 외(2020)에서 제안한 지표체계를 보여주는데 지표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한 지표는 대표지표를 나타낸다.

II.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표 2-9> 송철종 외(2020)의 탈북민 지역사회통합 지표 체계

탈북민 지역사회 통합지수 지표체계			
대분류	정의	소분류	지표
안정성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 주거 환경과 건강 수준	사회 안전	폭력 및 범죄의 피해 경험 교통사고 발생률 (10만 명당)
		주거 환경	자가 점유 비율 현 거주지 만족도
		건강 지표	신체적 건강지표
			정신적 건강지표
형평성	모든 이에게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것	필수 서비스 접근성	의료서비스 받지 못한 경험 금융 이해력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 수준
			학제별 (중등교육) 학업중단율
		경제 사회적 기회	경제활동 참가율 직업훈련 수료 여부
			고등교육의 학위 취득률
응집성	차별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지역에 소속되어 주민 개개인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	소속감	남한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재입북 의사 이주 생각 주민등록 실거주자 비율 차별 경험
			사회적 지지체계
		만족감	생활여건 만족도 자살생각
			사회단체참여율
지속 가능성	다양한 배경의 집단이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면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정책과 제도적 기반	참여	지방선거투표율
		제도 기반	탈북민 지원 정책 투입 탈북민 지원 조례 제정 노령화지수 순인구이동 비율 재정자립도

주: 굵은 글씨의 지표는 송철종 외(2020)의 <표 5-3>에서 제시한 대표지표를 나타냄.

자료: 송철종 외(2020)의 <표 4-44>(p. 160)의 일부를 발췌함.

<표 2-10>은 송철종 외(2020)에서 <표 2-9>의 대표지표를 이용하여 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의 탈북민 지역사회통합지수를 실험적으로 산출한 결과를 담고 있다. 종합지수 산출을 위해 지표별, 소분류별, 대분류별 가중치는 모두 동일하게 부여하였다. 지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은 사회통합 정도가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하고, 1은 사회통합의 정도가 가장 높음을 의미한다. <표 2-10>은 안정성, 형평성, 응집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수와 종합지수 성격인 지역사회통합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통합지수는 높은 순서대로 서울이

0.57, 비수도권이 0.56, 경기도가 0.51, 인천이 0.44의 값을 보이고 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인천이 0.87로 가장 높고 비수도권이 0.16으로 가장 낮다. 형평성은 비수도권이 0.65로 가장 높고 서울이 0.33으로 가장 낮다. 응집성은 비수도권이 0.88로 가장 높고 인천이 0.13으로 가장 낮다. 지속가능성은 서울이 0.69로 가장 높고 인천이 0.2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사회통합지수를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대분류별 지표를 보면 지역마다 양상이 차이가 있다. 서울은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고, 인천은 안정성과 형평성이 비교적 높다. 경기 지역은 안정성, 형평성, 응집성이 비교적 고른 반면에 지속가능성이 낮았다. 비수도권은 응집성이 두드러지게 높으나 안정성이 상당히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북민의 지역사회통합지수는 종합지수로만 판단하기 어려우며, 대분류별 지수도 함께 고려해야 지역단위 지역사회통합의 정도와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묶는 것은 지역별 지역사회통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표 2-10> 탈북민 지역사회통합지수 산출

지역	안정성	형평성	응집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통합지수
서울	0.73	0.33	0.53	0.69	0.57
인천	0.87	0.54	0.13	0.20	0.44
경기	0.59	0.60	0.58	0.25	0.51
비수도권	0.16	0.65	0.88	0.54	0.56

자료: 송철종 외(2020)의 <표 5-10>(p. 188)을 발췌함.

앞에서 언급했듯이 탈북민의 지역사회통합의 정도와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지역단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료의 부족으로 지역단위를 세분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송철종 외(2020)에서는 자료 확보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보완지표를 활용하여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를 제외한 11개 광역시도에 대한 탈북민 지역사회통합지수를 별도로 추계하였다. 그 결과는 <표 2-11>에 제시하였는데 이는 <표 2-10>의 비수도권에 대한 탈북민의 지역사회통합의 정도와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다만 <표 2-10>의 서울, 인천, 경기와 <표 2-11>의 11개 광역시도의 지역사회통합지수는 사용한 지표와 자료가 달라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II.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표 2-11> 비수도권 11개 광역시도의 지역사회통합지수

구분	영역별 지수				지역사회 통합지수
	안정성	형평성	응집성	지속가능성	
부산	0.59	0.30	0.28	0.37	0.39
대구	0.59	0.52	0.27	0.36	0.44
울산	0.66	0.50	0.51	0.61	0.57
경북	0.39	0.74	0.42	0.70	0.56
경남	0.40	0.65	0.12	0.14	0.33
대전	0.33	0.33	0.39	0.62	0.42
충북	0.64	0.72	0.51	0.50	0.59
충남	0.55	0.84	0.30	0.21	0.48
광주	0.93	0.68	0.54	0.62	0.69
전북	0.91	0.74	1.00	0.34	0.75
전남	0.83	0.68	0.42	0.93	0.72

자료: 송철종 외(2020)의 <표 5-11>(p. 193)과 <표 5-12>(p. 195)를 발췌함.

안정성은 전북(0.91)과 전남(0.83)이 가장 높고 대전(0.33)과 경북(0.39)이 가장 낮았다. 형평성은 충남(0.84), 경북(0.74), 전북(0.74) 순으로 높은 반면에 부산(0.30), 대전(0.33)이 낮았다. 응집성은 전북이 1.00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경남이 0.12로 상당히 낮았음을 보여준다. 지속가능성은 전남이 0.93으로 가장 높고 경남이 0.14로 가장 낮았다. 그 결과, 종합지수인 지역사회통합지수를 보면 전북이 0.75, 전남이 0.72, 광주가 0.69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0.33, 부산이 0.39, 대전이 0.4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지표를 사용한 <표 2-11>의 결과에서도 지역사회통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차이와 대분류(영역)별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송철종 외(2020)에서는 지수의 수치 해석에 유의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수값은 지역별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영역별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통합지수가 전남이 0.72이고 경남이 0.33인데 이를 근거로 전남의 탈북민 지역사회통합이 경남에 비해 2배 이상 잘되었다는 식의 해석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전남이 경남에 비해 탈북민의 지역사회통합의 정도가 높고, 영역별로 전남은 다른 영역에 비해 안정성

과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남은 다른 영역에 비해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6) 탈북민 지역사회통합지수와 위기가구의 인권

탈북민의 지역사회통합지수가 위기가구의 생활실태와 인권상황을 바로 보여주는 지수는 아니다. 그러나 지역사회통합지표체계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통합 관련 지표체계가 탈북민의 취약·위기가구와 그리고 인권상황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앞에서 정리하였듯이 송철종 외(2020)는 지역사회통합지수를 산출함에 있어 안정성, 형평성, 응집성, 지속가능성이라는 네 개의 대분류(영역)를 정의한 바 있다. 이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통합지수를 측정한 차미숙 외(2011)의 연장선 상에 있는 지표체계이며, 지역사회통합지표체계에 탈북민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표 2-9>에도 정리하였듯이 안정성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과 주거, 건강을 의미한다. 형평성은 모든 이에게 사회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고, 응집성은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지역사회를 공유하면서도 충분히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정책과 제도 기반을 의미한다. 이 네 가지 영역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개념과 관련이 깊다. 다음 장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개념을 정립하면서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정부가 제시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와 안전의 부재로 자신과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와 지원을 필요한 시점에 충분히 얻지 못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것은 형평성의 영역에 해당하며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사회적 안전의 부재는 안정성과 관련이 깊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은 응집성에 해당하며, 필요한 사회서비스와 지원을 충분히 얻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관련이 깊다. 아울러 위기가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해결책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통합은 위기가구의 개념과 상당히 많은 영역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지표체계는 위기가구의 인권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국

II.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가인권위원회(2022)의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통합의 지표체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4차 권고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4차 권고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생명권과 안전권, 차별금지와 평등권,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적법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접근권,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구금 및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탈북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탈북민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정신건강 증진을 핵심과제로 담고 있다. 우선 탈북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제3차 권고에서 탈북민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여성 탈북민을 위한 성인지 치유 및 교육을 강조하였고,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권고한 바 있다. 제4차 권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는 탈북민의 취업과 정착을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가구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석향 외(2019)는 여성 탈북민이 구직 및 일자리 환경에서 겪는 인권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제도적 기반에서는 차별이 줄어들고 있으나 일터에서의 성희롱이나 일상적 괴롭힘에 대한 대응방안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별과 무시 등 평등권은 물론 노동권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탈북민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인권침해 트라우마나 정신적 어려움이 남한사회 정착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탈북민 정신건강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소희 외(2017)는 탈북민이 북한에 거주할 때, 탈북 과정에서, 남한에 입국한 후에 겪는 인권침해 경험을 유형화하고 이것이 심리적 트라우마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탈북민이 더 많은 인권침해를 겪을수록 PTSD가 심해지고 삶의 질이 낮아져 정신건강을 더욱 해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정리하자면, 제4차 권고는 탈북민과 관련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와 정신건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통합의 안정성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기본권에 관한 권고는 지역사회통합의 안정성, 형평성, 응집성, 지속가능성과 모두 연관되어 있다.

III.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제도

1.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실태

1) 개념과 대상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은 공공의 관심과 정부 개입의 필요가 요구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의미한다. 이론적으로는 최저생계비를 지급받는 빈곤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입장, 일자리의 속성을 토대로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입장, 인적 속성을 토대로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입장으로 나뉜다. 물론 이러한 정의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중첩성이 인정된다(이준섭·이준국 2012, 7-9).

법률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말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특히 이 법 제4조 1항은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과 급여의 기준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 즉 보호대상자를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법의 보호대상자, 즉 취약계층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법률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정의, 원칙 등의 내용만으로 취약계층 개념을 명확하게 내리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따른다. 또한 대다수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정부, 지자체, 민간으로부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데까지 일정 시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어떤 사람이 취약계층에 해당되는가에 관한 1차적인 판단은 민간영역에서 자신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

Ⅲ.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제도

란한 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2항).

한편 법률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위기가구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에서는 위기가구의 발굴과 관련하여, 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와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위기상황을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3-1>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급여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정의에 더해,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생활고로 추정되는 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선제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체계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자료에서는 위기가구를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2018, 3-4). 또한 2021년 10월 보건복지부는 “우리 주변에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리플릿에서 복지 위기가구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로 정의했다.

<표 3-2> 보건복지부가 정의한 복지 위기가구

1. 소득 감소, 실직, 휴·폐업 등 생계곤란 가구
2. 자살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
3. 학대 위기 아동
4.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
5.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6. 혼자 사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7.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등

이상에서 살펴본 위기가구의 원인과 유형은 크게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및 지지체계 문제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위기가구 사례정보를 다음과 같이 유목화했다.

<표 3-3> 위기가구 사례정보 유목화

구분	대항목	세부항목	주요내용
경제적 문제	소득빈곤	부채 및 신용불량	• 자산관리의 어려움, 과도한 지출 등 포함
		생계곤란 (저소득, 빈곤)	• 자영업, 파지 수거 등도 포함
	실직 근로능력 부족	실직(취업실패)/ 부도	좌동
		근로능력 의지 부족	• 자활연계대상자 포함
	주거불안 (주거빈곤)	주거비 부담	• 관리비/월세 등 주거비 문제 • 공과금 체납으로 단수, 단전 등
		주거지 불안	• 거주곤란, 노숙, 모텔전전, 퇴거위기 등
		최저주거기준 미충족 (주거환경)	• 최저주거면적 미충족 • 최저주택안전/성능 미충족·내부 불결
건강 문제	신체건강	신체장애 및 질병·질환	• 신체외부장애 • 신체내부장애 • 만성질환
		식사 및 영양	• 결식, 라면으로만 식사 등

Ⅲ.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제도

		의료이용 제한	• 의료비 부담 (타의) • 진료 거부 (자의)
	정신건강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	• 치매, 트라우마 포함
		우울 및 자살	좌동
		중독	• 알코올 중독 • 약물중독
관계 및 지지체계 문제	가족 돌봄 및 교육	간병 및 수발	좌동
		양육 및 교육	• 양육/교육의 어려움 • 자녀 양육 방임
	가족 갈등 및 폭력	폭력 가해	좌동
		폭력 피해	좌동
	가족 지지체계 부족	취약·위기 가족	• 1인가구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가정 등
		가족의 방임	• 가족의 지원 없음 혹은 가족이 책임을 다 하지 않음(부모가 알코올 중독 중독 등 포 함), 연락두절 등
	사회적 관계	관계/교류 문제	• 이웃/지인(친구)과의 갈등/불화, 관계개선 필요 • 이웃/지인 없음 • 폭력 (학교폭력 등)
		외부 지원 거부	좌동
기타	법적 문제	좌동	

이상에서 살펴본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에 대한 개념은 정부가 2019년 7월 탈북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6차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로 규정한 개념과 거의 비슷하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사회보장급여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개념을 활용하여, ‘소득 사실’,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생활곤란’, ‘영업곤란’ 등으로 위기에 처한 탈북민을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로 규정했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의 기본 방향에서 사회 미적응과 사회적 관계망 부재를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주된 특징으로 보았다.

여기서 정부가 제시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개념을 정리하면 경제적, 신체·정신적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와 안전의 부재로 자신과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와 지원을 필요한 시점에 충분히 얻지 못하는 가구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의에는 인권 관련 문제와 탈북민의 인권의식이 온전히 반영

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북한과 제3국에 거주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어 왔던 탈북민은 자신의 인권이나 권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으며, 그 결과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이진혁·최정민 2020, 74).

이에 본 연구는 인권보호 측면을 반영하여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⁸⁾

“일상에서 다양한 차별 및 배제를 경험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고립된 상태에 위치한 가구 및 가구 구성원”

2)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분류체계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유목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의한 위기상황, 보건복지부가 정의한 복지 위기가구,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발굴 위기가구 지표,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위기가구 사례정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위기가구의 인권상황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류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고 이를 통해 필요한 항목을 구성해야 한다. 이는 다음의 <표 3-4>에 제시하였다. 대분류는 앞에서 언급한 기존의 위기가구 정의에 따라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영역을 의미하며, 각 대분류별로 중분류와 소분류를 구성하였다. 소분류는 위기가구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량적 지표를 구할 수 있는 항목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표 3-4>에 제시된 46개 항목에 필요한 지표를 모두 구성하지는 않고 인권상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해 정량적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항목과 심층면접에서 집중하여 파악한 항목은 비교란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8) 연구진이 제시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7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에서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해 제시한 내용과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보호’의 내용을 참고할 것.

Ⅲ.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제도

<표 3-4>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분류체계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항목)	비고		
경제 (12)	소득	가구소득			
		소득만족도			
		금융접근성			
		신용불량에 대한 이해			
	취업	취업 여부			
		취업지원(교육) 이용			
		취업 만족도			
		근로 능력 및 의지			
	주거	주거비 부담(입국 5년 이하/이상)			
		주거 만족도			
		주거 안정성(입국 5년 이하/이상)			
		주거 및 주거지 환경			
건강 (11)	신체	질병 현황			
		질병에 대한 이해			
		신체장애			
	영양	식사			
		영양 섭취			
	정신	정신질환(트라우마 포함)	설문조사	심층면접	
		우울 및 자살			
		중독(알코올, 약물)			
	의료이용	의료비 부담			
		의료이용 만족도			
		의료시설 접근성			
사회적 관계 (13)	가구 구성 및 유형	한국 내 결혼/이혼	설문조사	심층면접	
		1인 가구			
		이산가구			
		다문화가정			
	돌봄	가족 간병	설문조사	심층면접	
		가족 돌봄(노인, 영유아 포함)			
	교육	자녀 양육		심층면접	
		자녀 교육(공교육/사교육)			
		본인 교육			
	가족 지지	가족 내 결속/방임	설문조사	심층면접	
	사회적 관계	직장 내 관계/교류	설문조사	심층면접	
		학교 내 관계/교류			
		지역사회(이웃) 내 관계/교류			
사회적 안전 (10)	사회보장	사회보장/보험 이용			
		사회보장/보험 만족도			
	치안	치안 만족도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만족도			
	범죄 경험	범죄 연루 경험(가해/피해)	설문조사	심층면접	
		의도치 않은 범죄 가담(금융, 보이 스피싱)			
		범죄로 인한 처벌 경험			
	법질서 준수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			
		범죄 행위 인지 여부			
법률지원	법률지원 수혜 경험	설문조사	심층면접		

주: 대분류의 괄호 안 숫자는 필요한 항목의 개수임.

2. 통일부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주요 내용

1) 조사대상의 기준 및 위기가구지표

통일부는 2019년 9월 2일 탈북민 대책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해 7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탈북민 모자를 애도하고, 탈북민 생활안정을 위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은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유관부처간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탈북민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또한 이 대책을 근거로 정부는 2019~2021년 하반기까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통일부 보도자료 2019/9/2).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이하 ‘하나넷’)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과의 연계를 통해 1차 대상자를 선별했고, 지역하나센터 조사자들이 유선과 가정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를 결정했다. 또한 통일부는 취약·위기가구 대상자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33종 위기지표’ 중에서 탈북민에 적합한 위험정보를 선별해서 활용하였다(통일부 제공자료).

통일부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에서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생활곤란’, ‘영업곤란’, ‘사회 미적응’,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관계망 부재’ 등으로 위기에 처한 탈북민을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이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로 규정했다(이승열 2021, 26; 통일부 제공자료).

2019~2021년에 실시된 6차례 전수조사 과정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의 중요한 척도가 된 보건복지부 33종 위기지표는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발굴 ‘위기가구지표’

연번	기관명	위기정보
1	한국전력공사	단전
2		전기료 3개월 이상 체납
3	상수도사업소	단수
4	도시가스사	단가스
5	자살예방센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자살고위험군
6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가 자해/자살
7	소방청	주택화재 피해자

Ⅲ.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제도

8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9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10		의료비 본인부담금 과다지출자
11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12	보건복지부	보건소 방문건강사업 집중관리군 대상자
13		보건소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자 중 확진자
14		영양플러스 신청자 중 미지원 대상자
15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신청탈락중지
16		사회복지시설 퇴소자
17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개별연장급여 지원 대상자
19		비자발적 사유(폐업, 도산 등)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실업급여 수급자
20		비자발적 사유(폐업, 도산 등)로 고용보험 상실 후 실업급여 미수급자
21		일용근로자 중 고용보험 상실 후 근로신고자 없으면서 실업급여 미수급자
22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급여 종결 후 근로단절자
23	경찰청	범죄 피해자
24	행정안전부	재난 피해자
25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26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27	한국신용정보원	금융연체(과거 2년 동안 연체금액이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8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세 계약자
29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 1억 이하 규모 월세 계약자
30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학교장 추천자
31	국세청	전년도 공급가액 4,800만 원 이하 사업자 중 휴·폐업자
32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자
33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비 체납

자료: 이승열 2021, 27-28; 통일부 제공자료.

위의 지표들은 보건복지부 복지시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위기정보에 해당하며, 19개 기관의 33종의 정보를 연계로 예측모형에 활용할 DB를 구축하고,

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굴 및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기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는 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첫째, 기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각종 변수들을 개인단위로 수집하고 있어, 가구 구성원별 위기변수를 모두 고려한 가구 전체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6/2). 둘째, 대부분의 위기가구지표가 경제적 문제를 측정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서 사회 미적응, 사회적 관계망 부재, 사회적 고립, 트라우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의 복합적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2) 전수조사 결과

(1) 2019년(1~2차)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

통일부는 탈북민 모자사망 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6차례 진행했다. 1차 전수조사는 2019년 9월 말부터 11월 25일까지 전체 탈북민 중 기초연금수급자 등 17종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15,676명을 선정했고, 이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고용보험 가입자(정규직), 중복인원 등 제외한 3,052명의 대상자에 대해 전국 하나센터를 통해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2차 전수조사는 2019년 12월 2일~2019년 12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취약계층(29종) 사각지대 5차 발굴모형에서 도출된 탈북민 위기가구 의심자 중 단전·체납·주거·의료 등 9개의 위기가구 대상자 783명을 선정한 후, 전국 하나센터를 통해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1, 2차 전수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은 사회보장지원(기초수급여부, 아동수당, 장애연금, 차상위여부 등), 하나재단·하나센터 이용 여부, 지자체 지원 여부, 위기징후 등이었다. 1차 전수조사 결과는 위기의심자 3,052명 중 신변보호담당자의 확인과 전국 하나센터 조사자들이 유선과 가정방문을 통해 373명의 취약·위기가구 탈북민을 발굴했다. 2차 전수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위기가구지표에 해당하는 783명 중 전국 하나센터 조사자들이 유선과 가정방문을 통해 180명을 발굴했다. 1, 2차 전수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Ⅲ.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제도

현황은 아래 <표 3-6>과 같다.

<표 3-6> 1, 2차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 및 정부 지원 현황

구분	지원 대상	생계지원 (하나재단 지원)				사회보장급여 연계 (지자체지원)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사회서비스 제공							건
		긴 급 생 계 비	의 료 비	긴 급 지 원 금	기 타	기 초 생 활 보 장	긴 급 복 지 지 원	차 상 위 지 원	장 애 인 지 원	진 학 지 원	취 업 지 원	심 리 지 원	법 률 지 원	각 종 교 육	유 관 기 관 연 계	기 타	
1차	373	46	83	-	-	190	23	8	26	138					215	-	729
2차	180	39	27	-	14	97	17	5	6	28					78	-	311

자료: 통일부 제공자료

통일부는 1, 2차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 553명에 대해 남북하나재단 생계지원, 지자체 사회보장급여연계 지원, 전국 하나센터 사회서비스 제공 등 총 1,040건의 지원을 했다.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하나재단 209건(긴급생계비 85건, 의료비 110건, 기타 14건), 지자체 사회보장급여연계 372건(기초생활보장 287건, 장애인지원 40건, 차상위지원 13건, 장애인지원 32건), 전국 하나센터 459건(진학·취업·심리·법률지원·각종교육 166건, 유관기관 연계 293건) 등이다.

(2) 2020년(3~4차)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

통일부는 3차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를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했으며, ‘하나넷’(통일부)과 연계된 ‘행복e음’(복지부) 발굴모형 23종을 활용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된 3차 전수조사 결과 4,224명의 취약계층을 발굴한 후, 전국 하나센터 조사자들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4차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는 2020년 11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됐으며, ‘하나넷’(통일부)과 연계된 ‘행복e음’(복지부) 발굴모형 중 대상

자 없는 항목 및 전·월세 금액 기준 이하 가구 등을 제외한 22종의 위기가구 지표에 해당하는 4,094명을 발굴한 후, 전국 하나센터 조사자들을 통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2020년에 실시된 3, 4차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3차 전수조사 결과는 위기가구지표에 해당하는 4,224명 중 하나센터 조사자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438명의 대상자를 최종 발굴했으며, 4차 전수조사 결과는 위기가구지표에 해당하는 4,094명 중 하나센터 조사자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391명의 대상자를 최종 발굴했다. 3, 4차 전수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은 아래 <표 3-7>과 같다.

<표 3-7> 3, 4차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 및 정부 지원 현황

구분	지원 대상	생계지원 (하나재단 지원)				사회보장급여 연계 (지자체지원)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사회서비스 제공							건
		긴급 생계비	의료비	긴급 지원금	기 타	기 초 생활 보장	긴 급 복 지 지 원	차 상 위 지 원	장 애 인 지 원	진 학 지 원	취 업 지 원	심 리 지 원	법 률 지 원	각 종 교 육	유 관 기 관 연 계	기 타	
3차	438	158	39	351	-	53	20	12	3	217					140	-	993
4차	391	222	48	-	-	66	21	7	7	164					138	-	673

자료: 통일부 제공자료

통일부는 3, 4차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 829명에 대해 남북하나재단 생계지원, 지자체 사회보장급여연계 지원, 전국 하나센터 사회서비스 제공 등 총 1,666건의 지원을 했다.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하나재단 818건(긴급생계비 380건, 의료비 87건, 긴급지원금 351건), 지자체 사회보장급여연계 189건(기초생활보장 119건, 장애인지원 41건, 차상위지원 19건, 장애인지원 10건), 전국 하나센터 659건(진학·취업·심리·법률지원·각종교육 381건, 유관기관 연계 278건) 등이다.

Ⅲ.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제도

(3) 2021년(5~6차)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

통일부는 5차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를 2021년 5월 14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했으며, ‘하나넷’(통일부)과 연계된 ‘행복e음’(복지부) 발굴모형 33종 중 24종의 위기가구지표를 활용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된 5차 전수조사에서는 4차 전수조사 시 비접촉 탈북민 3,514명을 포함하여, 총 7,517명의 위기의심자를 발굴한 후, 전국 하나센터 조사자들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6차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는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실시됐으며, ‘하나넷’(통일부)과 연계된 ‘행복e음’(복지부) 발굴 모형 중 위기지표 33종 해당자 중 위기지표 가중·선별 방식으로 추출한 고위험군 518명 및 집중 사례관리 대상자 1,064명 등 총 1,582명의 위기의심자를 발굴한 후, 전국 하나센터 조사자들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5차 전수조사 결과는 위기가구지표에 해당하는 7,517명 중 하나센터 조사자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467명의 대상자를 최종 발굴했으며, 6차 전수조사 결과는 위기가구지표에 해당하는 1,582명 중 사례관리 대상자 1,064명 외, 신규 위기의심자 162명을 발굴하여, 총 1,226명의 대상자를 최종 발굴했다. 5, 6차 전수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은 아래 <표 3-8>과 같다.

<표 3-8> 5, 6차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 및 정부 지원 현황

구 분	지원 대상	생계지원 (하나재단 지원)				사회보장급여 연계 (지자체지원)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사회서비스 제공								건
		긴 급 생 계 비	의 료 비	긴 급 지 원 금	기 타	기 초 생 활 보 장	긴 급 복 지 지 원	차 상 위 지 원	장 애 인 지 원	진 학 지 원	취 업 지 원	심 리 지 원	법 률 지 원	각 종 교 육	유 관 기 관 연 계	기 타		
5차	467	120	54	-	-	61	34	7	8	72						161	-	517
6차	1,226	67	38	-	-	61	32	10	9	64	126	249	47	305	225	185	1,418	

자료: 통일부 제공자료

통일부는 5, 6차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

1,693명에 대해 남북하나재단 생계지원, 지자체 사회보장급여연계 지원, 전국 하나센터 사회서비스 제공 등 총 1,666건의 지원을 했다.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하나재단 279건(긴급생계비 187건, 의료비 92건, 긴급지원금 351건), 지자체 사회보장급여연계 222건(기초생활보장 122건, 장애인 지원 66건, 차상위지원 17건, 장애인지원 17건), 전국 하나센터 1,434건(진학·취업·심리·법률지원·각종교육 863건, 유관기관 연계 386건, 기타 185건) 등이다.

지금까지 6차례 진행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추진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에 대한 후속지원 상세 내역, 미확인 상세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9>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추진 현황

연도	차수	조사대상 (명)	조사대상 선정에 사용된 위험 정보 (종)	지원인원 (명)	지원건수 (건)
2019	1차	3,052	하나넷-복지부 연계 17종	373	729
	2차	783	위기가구 발굴모형 9종	180	311
2020	3차	4,224	위기가구 발굴모형 23종	483	993
	4차	4,904	위기가구 발굴모형 22종	391	673
2021	5차	7,517	위기가구 발굴모형 24종	467	517
	6차	1,582	위기가구 발굴모형 33종(선별) + 집중 사례관리 대상자	1,226	1,418
합계		22,062	-	3,075	4,641

-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모형(33종) 중에서 탈북민에게 적합한 위험정보를 선별.

자료: 통일부 제공자료

Ⅲ.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제도

<표 3-10>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이후 후속지원 상세 내역

연도	차수	생계 지원 (하나재단 지원)				사회보장급여 연계 (지자체지원)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사회서비스 제공								기 타
		긴 급 생 계 비	의 료 비	긴 급 지 원 금	기 타	기 초 생 활 보 장	긴 급 복 지 지 원	차 상 위 지 원	장 애 인 지 원	진 학 지 원	취 업 지 원	심 리 지 원	법 률 지 원	각 종 교 육	유 관 기 관 연 계			
2019	1차	46	83	-	-	190	23	8	26	138					215	-	729	
	2차	39	27	-	14	97	17	5	6	28					78	-	311	
2020	3차	158	39	351	-	53	20	12	3	217					140	-	993	
	4차	222	48	-	-	66	21	7	7	164					138	-	673	
2021	5차	120	54	-	-	61	34	7	8	72					161	-	517	
	6차	67	38	-	-	61	32	10	9	64	126	249	47	305	225	185	1,418	
합계		652	289	351	14	528	147	49	59	1,410					957	185	4,641	

- 기타 재단지원은 출산용품지원 및 공공의료지원임.

자료: 통일부 제공자료

<표 3-11>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미확인 상세 내역

연도	차수	미확인 인원	미확인사유								
			사망	타지 전출	거주 불명	부재	결번	시설 입소	조사 거부	주변인 확인	기타
2019	1차	155 (100%)	0	23 (14.8)	89 (57.4)		-	3 (1.9)	-	-	40 (25.8)
	2차	300 (100%)	8 (2.7)	12 (4)	32 (10.7)	50 (16.7)		8 (2.7)	-	-	190 (63.3)
2020	3차	1,640 (100%)	45 (2.7)	80 (4.9)	-	876 (53.4)		30 (1.8)	149 (4.1)	442 (27)	18 (1.1)
	4차	2,098 (100%)	76 (3.6)	99 (4.7)	1 (0.1)	1,415 (67.4)		33 (1.6)	233 (11.1)	241 (11.5)	-
2021	5차	3,176 (100%)	76 (2.4)	101 (3.2)	-	482 (15.2)	1,812 (57)	56 (1.8)	278 (8.8)	-	371 (11.7)
	6차	50 (100%)	-	19 (38)	31 (62)			-	-	-	-

- 타지전출: 주소지에 타인이 거주하거나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 부재: 방문조사 시 부재로 인하여 조사가 이뤄지지 못함.

- 결번: 수신불가, 수신거부, 결번 등 포함하여 유선조사 불가 상황.

- 시설입소: 요양원, 병원 등 시설과 교도소 수감인원을 포함.

자료: 통일부 제공자료

3)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온 주요 내용과 한계점

2019년 7월 관악구 탈북 모자사망 사건 계기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는 불특정 다수의 경제적 위기징후 발견 대상자 중 탈북민을 선별하여 발굴대상자를 지정하고, 이를 전국 25개 하나센터로 배분하여 대상자 실태점검 및 지원필요도 점검표에 의해 확인 후 위기 의심자를 발굴하여 사후 관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2019-2021년에 실시된 6차례 전수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복지시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위기정보지표를 활용하여 취약·위기가구 발굴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도 고위험군을 선별여, 지난 회차 발굴 대상자를 제외하고 지역 하나센터를 통해 현장확인 및 사후 처리를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다.

그러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위한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 그리고 지역하나센터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활용되는 위기정보지표에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에 취약·위기가구 발굴대상자를 선제적, 효과적으로 선정하고 관리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물론 지역하나센터에서 유선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해서 취약·위기가구 발굴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기정보 수집과정에서의 법적 근거의 한계 및 ‘행정데이터’의 한계, 그리고 다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례로 인해서 위기의심자 발굴 및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특히 탈북민 관련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지역하나센터 조사 담당자들이 취급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사과정에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됐으며, 신변보호에 민감한 탈북민들이 개인정보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보건복지부 복지시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위기정보지표의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탈북민 취약·위기가구가 마주하고 있는 열악한 인권상황은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탈북 과정과 제3국 거주과정,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고충이 연결되어 있고, 복잡한 가족구성과 사회문화적 고립 및 열악한 지지체계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이에 경제적 취약성에 포커스가 집중된 빅데이터 기반의 보건복지부 복지시각지대 발굴체계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에 많은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탈북민 관련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자, 통일부 안전지원팀을 중심으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정부는 탈북민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보건복지

부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데이터가 남북하나재단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연동되었다. 이렇게 연동된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결과를 등록과 사례관리 진행, 그리고 지자체 서비스를 의뢰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3.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체계 및 지원제도 현황

1) 배경

(1) 탈북민 위기가구 지원 배경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하여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이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도입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사회안전망은 완벽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2018년 4월 증평 모녀 사망 사건과 2022년 8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의 사망사건은 탈북민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9년 7월 서울시 관악구의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과 2020년 10월 40대 탈북민의 고독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두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자. 2019년 서울시 관악구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회안전망 누락의 원인은 3가지였다(보건복지부 2019, 1). 첫째, 아파트 임차료 연체(16개월)에도 불구하고, 체납정보가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되지 않았고, 둘째, 2018년 10월 아동수당 신청 당시 소득인정액이 0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기초자치단체(관악구)에서 추가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 안내 등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였으며, 셋째, 하나센터(탈북민 지원), 사회복지관 등 민간과 공공(지자체) 간 정보연계가 미흡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022년 10월 40대 탈북민의 고독사 사건도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체계가 작동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0대 탈북민의 건강보험료 체납 확인 사실 확인을 통해 통일부와 주민센터에 위기정보가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연락두절’로 처리하였고,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연락처가 없어 대면접촉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김태완 외 2022,

26). 결국, 2021년 3월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독촉을 위한 접촉부터 2022년 10월 사망 시까지 40대 탈북민의 사회적 관계망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과 40대 탈북민의 고독사의 원인은 완비되지 못한 사회복지시스템 차원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기가구 발굴체계 부족, 복지급여 신청주의의 한계, 행정복지센터의 위기가구 지원 의무 소홀, 공공·민간의 정보연계의 부족(보건복지부 2019, 1)뿐만 아니라, 전달체계 간의 사회복지서비스 협력 부족,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 직원,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부족,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을 위한 지원 부족,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탈북민 정착지원의 사각지대가 확인되면서, 기존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 체계에 전반적인 검토가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2)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수립

2019년 7월 서울시 관악구의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에 대한 후속 대응과 관련하여 통일부에서는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수립하였는데, 주요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통일부 2019, 1-2). 첫째,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 마련(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 실시,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위기 의심자 발굴, 복지·교육·취업 등 필요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탈북민 기초생활보장의 특례 대상 및 기간 확대(탈북민이 포함된 가구,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5년), 둘째, 지자체와 하나재단의 역할 제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하나센터장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체’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사항을 공유),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예산 확충,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 ‘탈북민 콜센터’ 상담 강화, 셋째,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을 보다 강화(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법상 거주지 보호기간(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및 절차 마련, 탈북민 고립 예방 위한 탈북민단체 지원·육성, 탈북민 공동체를 통한 위기 의심자 조기 발굴, 복지전달체계 매뉴얼에 탈북민 지원사항 보완, 하나원·하나센터 교육 내실화 및 안내

책자 발간 추진이다. 이러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에 따라, 다양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종합대책 중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체계’ 및 ‘지원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뒤에서 보다 더 살펴보자.

(3) 2023년도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2023년도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23개 중앙부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설계하였는데, 제3차 탈북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의 비전·목표 및 정책과제에 기반하되, 新정부 정책과제 및 정착지원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반영·보완하여 주요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6대 분야 49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3, 2). 탈북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포용적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 추진이라는 목표를 갖고,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착지원 체계 개선, 자립·자활 지원 강화라는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2023년도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의 6대 분야 49개 세부과제에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체계 및 지원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직접적으로 취약·위기가구 지원체계를 명시하고 있는 세부과제는 2. 탈북민 보호·지원체계 내실화의 ②번 과제인 ‘위기 탈북민 발굴·종합 지원’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기가구 지원제도 과제는 3.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의 9개 과제로서 ① 사례관리 지원 강화 ② 의료지원 확대 ③ 포털 온라인 서비스 강화 ④ 취약계층 생계·생활안정 지원 확대 ⑤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적용 ⑥ 심리안정·정서지원 체계화 ⑦ 맞춤형 힐링프로그램 운영 ⑧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 제공 ⑨ 재소자·출소자 재정착 프로그램이다. 각각의 세부 내용은 뒤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림 3-1> 2023년도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비전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
목표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추진
추진방향	❶취약계층 지원 강화 ❷정착지원 체계 개선 ❸자립·자활 지원 강화

【 6대 분야·49개 세부과제 】

6대 분야	49개 세부과제 주요내용
1.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①남북통합문화센터 활성화 ②일반국민 탈북민 이해 교육 ③지역주민과의 소통·교류 활성화 ④탈북민 단체 지원 ⑤정착 우수사례 발굴·확대
2.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체계 내실화	①지역 중심 정착지원 체계 강화 ②위기 탈북민 발굴·종합 지원 ③비대면 정착지원시스템 공고화 ④보호결정 내실화 ⑤인권보호관 제도 운영 ⑥신변보호 개선 ⑦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⑧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 강화
3.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①사례관리 지원 강화 ②의료지원 확대 ③포털 온라인 서비스 강화 ④취약계층 생계·생활안정 지원 확대 ⑤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적용 ⑥심리 안정·정서지원 체계화 ⑦맞춤형 힐링프로그램 운영 ⑧생활밀착형 법률 서비스 제공 ⑨재소자·출소자 재정착 프로그램
4.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지원	①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②맞춤형 영농정착 지원 ③탈북여성 취업지원 ④일자리 적응력 제고 ⑤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대 ⑥전문직 맞춤형 육성 강화 ⑦자산형성제도 운영 ⑧채용유인제도 개선
5.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①정규학교 적응지원 협업체계 구축 ②탈북학생 학교 적응력 제고 ③맞춤형 멘토링 지원 ④특성화학교 지원 ⑤잠재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⑥탈북대학생 교육지원 내실화 ⑦교육시설 운영·환경개선 지원 ⑧대안교육시설 탈북청소년 법교육 ⑨가족 단위 및 청소년 정착 지원 ⑩아이돌봄 지원 ⑪제3국 출생 자녀 지원 강화 ⑫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치유 지원 ⑬무연고 청소년 보호 강화
6. 정착지원 시설·인력 기반 강화	①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운영 ②하나원 수료생 사후관리 ③유관기관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④하나원 직업교육관 기능 확대 ⑤지역적응센터 역량 강화 및 체계 개편 ⑥전문상담 역량 강화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 2)

2) 위기가구 지원체계

(1)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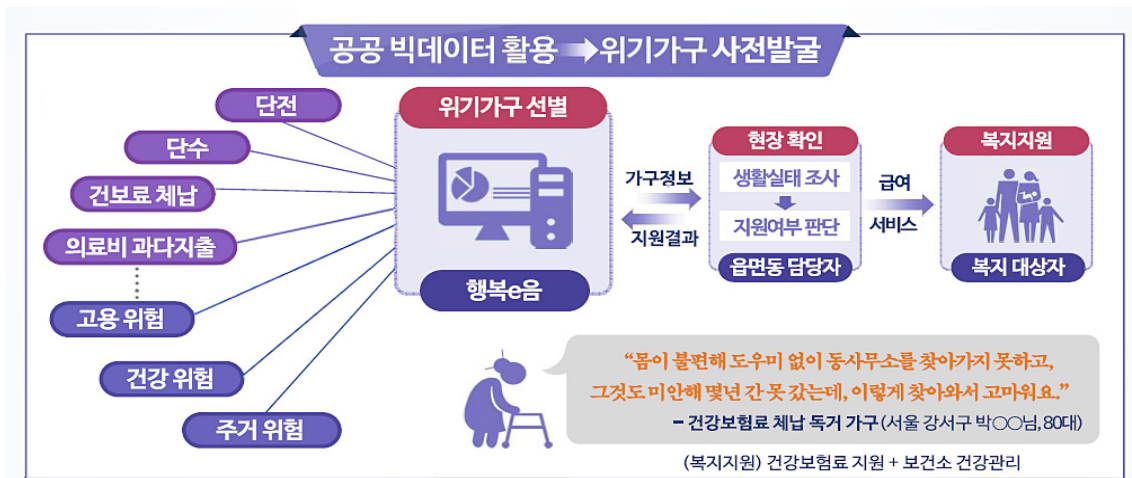
먼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발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5년 12월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2개월마다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통계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별(고위험군 약 20만 명, 상위 4%)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위기정보가 입수된 전체 명단(기존 수급자 명단 포함)을 지자체에

Ⅲ.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제도

제공해 지자체의 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3).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단가스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44종의 정보를 입수하여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고위험 가구를 예측·선별하고, 자치단체를 통해 상담·조사 후 복지 급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때 위기가구가 발굴되면 복지 급여 제공 후 그 이력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란 또한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의 31개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개인별·가구별 DB로 중앙에 통합 구축한 정보시스템이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3).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이후 지금까지 458만 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읍면동을 통해 188만 명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하였다(김태완 외 2022, 45).

<그림 3-2>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지원 흐름도



자료: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2022, 79)

(2) 탈북민 종합관리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간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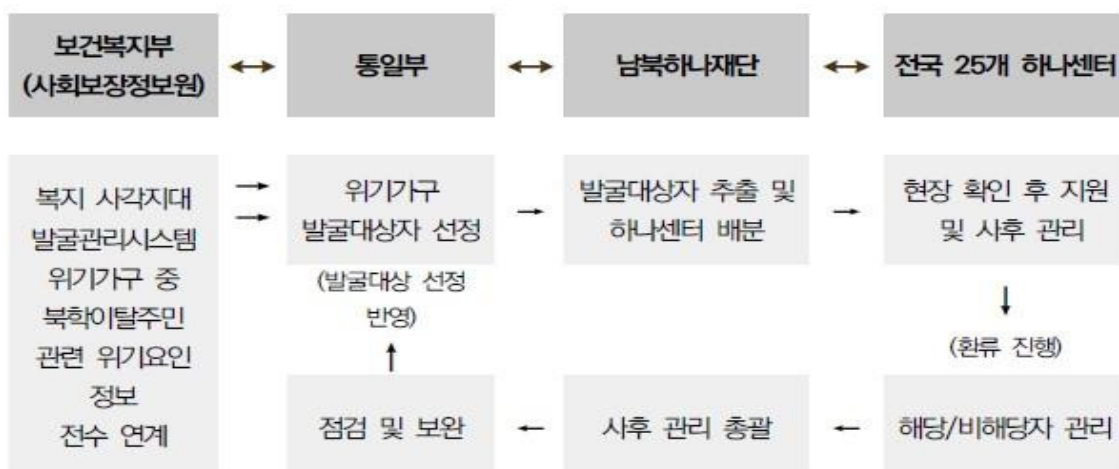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에서 확인되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체계는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위기 의심자 발굴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위기 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보건복지부의 발굴시스템과 통일

부가 구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하나넷)’과 연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 및 지원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탈북민의 정보가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하나넷)’과 연계하여 탈북민만을 별도로 데이터화하여 분석한다. 분석된 데이터가 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부→통일부→남북하나재단→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로 전달되면, 지역적응센터 담당직원이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탈북민 정착지원 인력들(거주지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과 함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지원업무를 집행한 후, 환류하는 방식이다. 실제 서울시는 통일부로 부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 결과’의 ‘1차 위기의심자’ 중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보를 제공받은 후, 서울시는 확보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1차 위기의심자’를 25개 자치구별로 분류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1차 위기의심자 정보’를 각 자치구에 전달하며, 정보를 전달받은 각 자치구는 설문조사 실시를 위해 다시 동 주민센터별로 분류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동 주민센터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신변보호관(경찰)이 협력하여 설문조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문인철·송미경 2022, 119).

다만 중복선정 및 중복급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탈북민에게만 별도로 떼어 적용할 때,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가 다시 한 번 지원대상자로 중복 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중 선정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양옥경 외 2021, 71).

<그림 3-3>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기반
현행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 지원체계



자료: 양옥경 외(2021, 126)

(3) 시행계획 상의 위기가구 지원체계

2023년도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서 직접적으로 위기가구 지원체계를 명시하고 있는 세부과제는 2. 탈북민 보호·지원체계 내실화 중 ② 위기 탈북민 신속 발굴 및 종합·원스톱 지원이다. 2023년도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 따르면,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진실적이 제시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23, 17). 첫째, 2022년 2월 탈북민의 복합적 위기상황 해결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으로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이 출범하였고, 위기징후의 신속한 포착, 통합적·다층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둘째, 취약·위기가구 탈북민 발굴·지원 강화 및 안전지원 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민감 개인정보 수집 법적 근거 마련, 유관기관 위기 정보 공유체계 개선, 취약·위기가구 실태조사 개선 등을 시행하였고, 발굴·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탈북민 상시 관리, 소재불명자 확인, 무연고 사망·범죄피해예방 등 주요 사건·사고 대응 등 1,546건의 실적이 있었다.

2023년도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 따르면,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3, 17). 위기 탈북민 신속 발굴 및 종합·원스톱 지원이라는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고, 그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첫째, 취약계층 탈북민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화를 통해 탈북민의 위기관리 체계 개선,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연계 강화를 계획하였다. 세부적으로 ‘위기발굴’ 차원에서는 복지부 위가지표(39종) 외 탈북민 특화 위가지표 개발·추가 활용, 위기가구 발굴 데이터베이스화, 유관기관 연계 위기 발굴 강화, ‘위기에방’ 차원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우려 대상자(1,200여 명) 상시 직접 관리, 하나센터 업무체계 개편, 위기발굴 및 긴급구조를 위한 법·제도 정비, ‘위기대응 차원’에서는 위기관리·대응 업무 표준화, 신속한 위기상황 공유·보고 체계 구축, 하나센터 위기대응역량 관련 지도·점검활동 강화, ‘통합지원’ 차원에서는 긴급생계 지원 확대, 복지자원 발굴·연계, 정서·심리 상담, 범죄피해 예방·보호 등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전문기관 지원 연계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둘째, 위기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기능 활성화를 계획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안전지원 유관기관 정례회의, 안전지원팀-하나센터협회 회의, 위기관리 및 안전지원 관련 유관기관(복지부, 법무부 등) 협의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표 3-12> 2023년도 시행계획 상의 위기가구 지원체계:
취약·위기 탈북민 신속 발굴 및 종합·원스톱 지원

구분	실적 또는 계획	세부 내용
2022년 추진 실적	탈북민안전지원팀 출범	위기징후의 신속한 포착, 통합적·다층적 지원 역할 수행
	취약·위기가구 탈북민 발굴·지원 강화 및 안전지원 체계 기반 구축	(제도개선) 민감 개인정보 수집 법적 근거 마련, 유관기관 위기정보 공유체계 개선, 취약·위기가구 실태조사 개선 등 (발굴·대응) 복지 사각지대 탈북민 상시 관리, 소재불명자 확인, 무연고사망·범죄피해예방 등 주요 사건·사고 대응 등 1,546건
2023년 추진 계획	취약·위기가구 탈북민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화를 통해 탈북민의 위기관리 체계 개선,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연계 강화	(위기발굴) 복지부 위가지표(39종) 외 탈북민 특화 위가지표 개발·추가 활용, 위기가구 발굴 데이터 베이스화, 유관기관 연계 위기 발굴 강화 (위기예방) 복지 사각지대 우려 대상자(1,200여명) 상시 직접 관리, 하나센터 업무체계 개편, 위기발굴 및 긴급구조를 위한 법·제도 정비 (위기대응) 위기관리·대응 업무 표준화, 신속한 위기상황 공유·보고 체계 구축, 하나센터 위기대응역량 관련 지도·점검활동 강화 (통합지원) 긴급생계 지원 확대, 복지자원 발굴·연계, 정서·심리 상담, 범죄피해 예방·보호 등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전문기관 지원 연계
	위기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기능 활성화	안전지원 유관기관 정례회의, 안전지원팀-하나센터 협회 회의, 위기관리 및 안전지원 관련 유관기관(복지부, 법무부 등) 협의 강화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 17) 재구성.

3) 위기가구 지원제도

2011년부터 생계가 어려운 탈북민들에게 긴급생계안정지원(사망위로금, 비보호자 긴급생계비 지원) 및 긴급의료지원(중증 만성질환자 및 일반 질환자에 대

Ⅲ.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제도

한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여 왔다(양옥경 외 2021, 51). 2019년 7월 서울시 관악구의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과 2020년 10월 40대 탈북민의 고독사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보다 다양화되어 왔다. 매해 수립되는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이 제시된다.

2023년도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서 제시되어 있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과제는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의 9개 과제이며 그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관계부처합동 2023, 24-34). 첫째, 탈북민 개인별 사례관리 지원 강화의 구체적 추진과제로 먼저, 탈북민 위기관리에 특화된 사례관리 개편 및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탈북민의 특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체계 구성, 진학·취업·의료기관 등 사례관리 유관기관 협력체계 확대, 탈북민 위기관리에 중점을 둔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 개정·보급, 다음으로 하나센터 종사자 대상 통합안전지원(사례관리 포함)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위기 대응사례 공유 및 전문성 향상 도모를 위한 사례발표·슈퍼비전을 통한 문제해결 사례 공유, 근무경력별 통합안전지원 직무교육을 통한 수준별 전문성 확보, 마지막으로 고난도 복합·위기사례에 대한 후속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솔루션위원회(재단)’를 통한 문제해결 지원, 기부금 연계,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필요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지원자원 확보 추진을 계획하였다.

둘째, 탈북민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의 구체적 추진과제로 의료지원 확대 검토(금액 상향, 지원제외항목 축소 등)와 의료사회복지사 및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를 통한 공공의료 체계지원 확대를 계획하였다.

셋째, 포털 온라인 서비스 강화의 구체적 추진과제로 먼저, 탈북민 대상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베이스 강화를 위한 탈북민 정착지원 실무매뉴얼을 기반으로 정착지원 제도, 각종 증명서 발급안내 등 서비스 제공, 우리생활 길라잡이, 홈페이지·전화상담 등 자주하는 민원상담 내용 반영, 채팅으로 질문 입력 시 자동답변되는 인공지능(AI) 방식임에 따라 지속적인 질의응답현황 점검 및 미답변·오답변 조치를 통한 품질관리, 다음으로 탈북민 각종 민원 서비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축된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하나포털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 추진을 위해 하나포털상에 온라인신청시스템 포털 배너 게시, 온라인신청 시스템 안내 페이지 신설 등 접근성 강화를 계획하였다.

넷째, 취약계층 생계 및 생활안정 지원의 구체적 추진과제로 먼저, 탈북민 정착기본금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확대를 위해 정착금을 세대별 지급 단가 100만 원씩 인상하고(1인 세대 기준 2022년 800만 원→2023년

900만 원으로 증액), 위기가구 신속 지원 및 조기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 생계비 지원의 상한액 및 생애 총액 한도 상향 조정(생애 총액 한도 300만 원 → 500만 원, 1인당 연간지원액 한도 100만 원 → 150만 원), 무연고자간병비 지원, 한부모가정 출산지원 등 고도 위기 위급가구에 대한 별도 심의기구 신설 및 맞춤형 지원 확대, 다음으로 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한 가산금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취약군(무연고 미성년자, 마음건강 등) 대상 가산금 추가 신설 추진, 지급 기준을 ‘단일 사유’ → ‘사유별 지급’(중복 가능) 방식으로 변경, 취약계층 생계지원 제도 확대·재정비를 위해 취약계층 위로방문 확대(기존 100세대 → 2023년 500세대), 무연고 사망자 장제 및 봉안지원 관련 업무 협의 추진(복지부), 북한북민 유족 사망위로금 증액(30만 원 → 50만 원), 마지막으로 거주지 전입 초기 탈북민의 신속한 생계·생활 안정 지속 지원을 위해 비보호자 긴급생계비 지원 증액(1인 100만 원 → 150만 원), 초기 생활안정물품 가전제품 지원 확대(가구당 120만 원 → 150만 원)를 계획하였다.

다섯째,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적용의 구체적 추진과제로 탈북민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 특례 적용 지속을 계획하였다. 이로써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무능력자 가구는 1인을 추가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 의료급여의 경우,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 가구는 최대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하고 자가 가구주택은 노후도(경·중·대 보수)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교육급여의 경우 초·중학생 부교재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장제·해산급여의 경우 장제급여 1구당 80만 원, 해산급여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섯째, 심리안정 및 정서지원 체계화의 구체적 추진과제로 먼저, ‘마음건강지원센터’ 설치, 하나재단(치유센터 3개)-전문의료기관 위탁 연계(업무협약 체결)를 통한 탈북민 심리·정서 지원체계 구축 추진을 위해 탈북민 심리·정서 치료 필요성 등 반영, 예산당국과 예산 증액 협의 추진, 다음으로 남북통합문화센터 전문 심리상담센터 ‘마음숲’ 운영 강화, 심리상담 및 검사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상담 및 종합심리검사 등 실시, 심리치료를 위해 외부치료사 내방을 통한 놀이·미술·언어·인지학습·예술치료(악기 연주) 제공, 심리코칭을 위한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심리회복을 위한 교육·코칭 병행, 마지막으로 산림청과 하나재단이 함께 탈북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 지원에 산림치유를 접목하고 참가자 증가에 따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소 확대(2021년 산림치유시설 3개소 → 2022년 국립산림치유원 등 4개소 → 2023년 15개소)를 계획하였다.

일곱째, 맞춤형 힐링프로그램 운영의 구체적 추진과제로 기존 ‘북한이탈주민

Ⅲ.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제도

맞춤형 힐링프로그램’ 규모 확대(운영 횟수 9회→13회로 확대, 참석자 175명→300명으로 확대), 65세 이상의 고령자, 탈북민 가족 등 정서 안정 및 가족소통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탈북민으로 대상 확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공동 창작·여가활동, 고령층 건강증진을 위한 한방치유, 원예 치료 및 정원 관람, 정서안정을 위한 명상·나눔 소통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여덟째,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 제공의 구체적 추진과제로 취약·위기가구 탈북민 중심 법률지원제도 운영 및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실제 수요를 고려한 지원변호인 추가 위촉,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및 손 내밀기, 소송지원 연계 효율화, 지원변호인 활동 사례집 배포, 법조인 대상 탈북민 법률지원 심화교육 등 법률지원 내실화를 계획하였다.

아홉째, 재소자·출소자 재정착 프로그램 고도화의 구체적 추진과제로 먼저 ‘한국기독교 탈북민 정착지원협의회’ 등 재·출소자 지원 민간단체 공모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교정시설 방문 면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탈북민 재·출소자 자원 연계(수감 중인 단독세대에 대한 임대아파트 정리 지원 등), 재소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다음으로 통일부-법무부 교정본부 업무협업 등을 통해 재·출소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재소자 교정생활 안정과 출소자 재정착을 돕기 위한 공모사업(교화상담, 영치금 지원, 감사편지 프로그램 안내 등) 추진 위한 업무협조 지속, 출소자에 대한 하나센터 지정 연계, 쉼터 제공, 취업지원 지속 실시를 계획하였다.

<표 3-13> 2023년도 시행계획 상의 9개 위기가구 지원제도: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추진 계획	세부 내용
탈북민 개인별 사례관리 지원 강화	- 탈북민 위기관리에 특화된 사례관리 개편 및 협력네트워크 강화 - 하나센터 종사자 대상 통합안전지원(사례관리 포함) 직무교육 실시 - 고난도 복합·위기사례에 대한 후속지원 강화: ‘통합사례관리 솔루션위원회(재단)’를 통한 문제해결 지원, 기부금 연계,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탈북민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 의료사회복지사 및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통한 공공의료 체계지원 확대 - (서울시) 종합건강검진 패키지, 치과, 비급여 의료비, 간병비 등 긴급 의료돌봄 지원

포털 온라인 서비스 강화	-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베이스 강화 - 온라인신청시스템을 하나포털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 - 하나포털 상에 온라인신청시스템 포털 배너 게시, 온라인신청시스템 안내 페이지 신설
취약계층 생계 및 생활안정 지원	- (정착금) 세대별 지급 단가 100만 원씩 인상 *1인 세대 기준 (800만 원→900만 원) - (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 지원의 상한액 및 생애 총액 한도 상향 조정 *생애 한도 300만 원→500만 원 *1인당 연간 지원액 한도 100만 원→150만 원 *무연고자 간병비 지원, 한부모가정 출산지원 등 고도 위기 위급 가구에 대한 별도 심의기구 신설 및 맞춤형 지원 확대 - (취약군) 무연고 미성년자, 마음건강 등 대상 가산금 추가 신설, 지급 기준을 '단일 사유'→'사유별 지급'(중복 가능) 방식으로 변경 - (생계지원 제도 확대·재정비) *취약계층 위로방문 확대(100세대→500세대) *무연고 사망자 장제 및 봉안지원 관련 업무 협의 추진(복지부) *유족 사망위로금 증액(30만 원→50만 원) (거주지 전입 초기 지원) *비보호자 긴급생계비 지원 증액(1인 100만 원→150만 원) *초기 생활안정물품 가전제품 지원 확대(가구당 120만 원→150만 원)
기초생활 보장제도 특례 적용	- (생계급여) 근로무능력자 가구는 1인을 추가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 - (의료급여)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임차 가구는 최대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 가구주택은 노후도(경·중·대 보수)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 (교육급여) 초·중학생 부교재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 (장제·해산급여) 장제급여 1구당 80만 원, 해산급여 1인당 70만 원 지원

Ⅲ. 탈북민 취약 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제도

심리안정 및 정서지원 체계화	- ‘마음건강 지원센터’ 설치 - 하나재단(치유센터 3개)-전문의료기관 위탁 연계(업무협약 체결)하여 탈북민 심리·정서 지원체계 구축 추진 - 남북통합문화센터 전문 심리상담센터 ‘마음숲’ 운영 * (심리상담 및 검사) 대상별 맞춤형 상담 및 종합심리검사 * (심리치료) 외부치료사 내방을 통해 놀이·미술·언어·인지학습·예술치료(악기 연주) * (심리코칭)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심리회복을 위한 교육·코칭 병행 - (산림치유) 산림청·하나재단) 탈북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 지원에 산림치유 접목 - 참가자 증가에 따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소 확대, 하나센터 관계자 등 지원 * 운영장소: (‘21) 산림치유시설 3개소→(‘22) 국립산림치유원 등 4개소→(‘23) 15개소
맞춤형 힐링프로그램 운영	- ‘탈북민 맞춤형 힐링프로그램’ 규모 확대 * (운영횟수) 9회→13회로 확대, 참석자 175명→300명으로 확대 추진) - (대상) 65세 이상의 고령자, 탈북민 가족 등 정서 안정 및 가족 소통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탈북민 - (주요내용)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공동 창작·여가활동, 고령층 건강증진을 위한 한방치유, 원예 치료 및 정원 관람, 정서안정을 위한 명상·나눔 소통 등
생활밀착형 법률 서비스 제공	- 취약·위기가구 탈북민 중심 법률지원제도 운영 및 실질적인 지원 강화 - 실제 수요 고려 지원번호인 추가 위촉 -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및 손 내밀기 - 소송지원 연계 효율화, 지원번호인 활동사례집 배포, 법조인 대상 탈북민 법률지원 심화교육 등 법률지원 내실화

재소자·출소자 재정착 프로그램 고도화	- ‘한국기독교 탈북민 정착지원협의회’ 등 재·출소자 지원 민간단체 공모사업 지속 - 교정시설 방문 면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탈북민 재·출소자 자원 연계(수감 중인 단독세대에 대한 임대아파트 정리 지원 등) - 재소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 통일부-법무부 교정본부 업무협업 등을 통해 재·출소자 지원 강화 - 재소자 교정생활 안정과 출소자 재정착을 돕기 위한 공모사업(교화 상담, 영치금 지원, 감사편지 프로그램 안내 등) 추진 위한 업무협조 지속 - 출소자에 대한 하나센터 지정 연계, 쉼터 제공, 취업지원 지속 실시
-------------------------------	--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 24-34) 재구성.

4) 한계

2019년 7월 서울시 관악구의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과 2020년 10월 40대 탈북민의 고독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위한 지원체계와 지원제도는 강화 및 확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위한 지원체계와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취약하다. 법률과 하위 법령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관련 지원제도가 법률적 근거에 입각하여 수립되기 어렵다.

둘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대상의 범위와 발굴주체 변화가 여전히 전국민 대상의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 대상과 방법의 변화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부합하는 발굴체계 개선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셋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의 통합성, 책임성, 전문성이 약하다. 전달체계의 통합성 차원에서는 전달체계 간의 정보 연계가 느슨하

Ⅲ.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제도

다는 한계가 있으며, 전달체계의 책임성 차원에서는 명목상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단체 거버넌스 지원체계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지원체계의 성격이 강하다는 한계가 있고, 전달체계의 전문성 차원에서는 전문상담사 및 통합사례관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넷째, 취약·위기가구의 발굴은 공적 지원제도가 멈춘 5년 이후와 사적 관계망이 축소되는 10년 이후 시점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에 부합한 제도는 취약하다. 대표적으로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제한과 사적 관계망이 축소되는 10년 이후에 대한 지원제도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I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1. 인권상황 실태조사 개요

1)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배경

2023년 6월 기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33,981명이다(통일부 주요 사업).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이래, 하나원과 지역하나센터, 그리고 지자체 등을 통해 지역에 정착한 탈북민의 적응·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19년 7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서 탈북민 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지자체는 탈북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0월 21일 탈북민의 실질적 생활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하고, 동성명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와 취약계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적 미비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 2019/10/21). 이에 더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월 1일 탈북 1년 만에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다시 월북한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계기관의 대책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탈북민 정착 지원제도 개선과 이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22/1/12).

탈북민 관련 법·제도·관행 개선을 통해 탈북민의 실질적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계획은 202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 이하 제4차 권고」⁹⁾에도 반영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4차 권고에서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정신건강분야 증진을 두 개의 핵심과제로 제시했으며, 특히 제3차 권고를 통해 제기된 정신건강 관련 정책 강화를 강조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9) 인권NAP는 세계인권선언 45주년을 맞은 199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 주최 세계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제71조의 권고에 따라 탄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정부기관 합의에 따라 인권위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해 인권NAP를 수립하고 있다.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제4차 권고는 탈북민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정착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탈북 과정 및 북한에 있을 당시에 겪었던 인권침해로 인한 트라우마가 한국사회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한 탈북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국가인권위원회는 제4차 권고 탈북민 사회안전망 강화를 핵심과제 97로 제시했다. 이는 하나원, 지역하나센터, 지자체들이 여러 정착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탈북민의 상당수가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돕고, 소속감을 높여 사회적 고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첫째, 구직활동 및 교육지원 정책을 통해 탈북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탈북민과 신변보호담당관, 전문상담사 등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을 높여야 하며, 셋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하며, 넷째, 지역사회 중심의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탈북민 정신건강분야 증진은 제4차 권고 핵심과제 98로 제시했다. 이는 상당수의 탈북민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인권침해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와 PTSD 및 우울증 등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가 이들의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민은 남한주민에 비해 평균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자살충동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신건강분야 증진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첫째, 탈북민 정신건강사업 및 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야하고, 둘째, 탈북 과정의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중사례관리 대상자를 찾아내고 치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셋째, 탈북민에 대한 심리 상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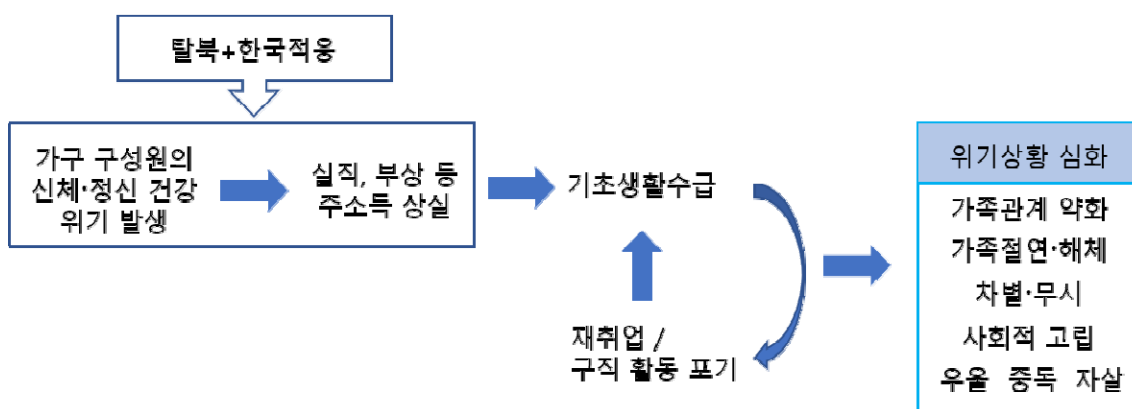
이상에서 앞서 살펴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개념과 탈북민 사회안전망과 정신건강분야 증진을 강조한 제4차 권고와 내용을 토대로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에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인권의 측면을 다음의 네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 ① 생명권(건강권) : 정신건강(트라우마, 우울, 중독, 자살)
- ② 안전권 : 사회적 안전, 법률지원
- ③ 평등권(차별금지) : 직장(노동권), 학교, 이웃, 탈북민 모임
- ④ 사회적 관계 : 사회적 고립의 발현

2)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내용

본 연구는 탈북민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전개되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의 과정을 겪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그림 4-1>에서 보듯이 탈북하여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위기가구의 원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실직 등 소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재취업 및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악순환의 과정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가정 내에서 불화,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자살, 우울, 가족절연 및 해체 등의 문제가 심화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는 탈북민 위기상황의 순환과정을 위기가구 사례로 유형화하고 그 유형 안에서 탈북민의 위기가구 실태와 인권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4-1> 탈북민 위기상황의 악순환



제4차 권고를 바탕으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위기상황의 시작으로 가구의 주 소득 상실과 탈북 과정에서의 트라우마와 신체 상해를 가정하였다. 이는 건강권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권과 큰 관련이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구의 주 수입원인 가구주가 크게 다치거나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가구주의 돌봄 문제와 함께 생계유지를 위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사회에 연고가 강하지 않은 탈북민의 입장에서는 남한주민에 비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악화되고 가족 간에 불화가 형성되어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족 외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이 전개되면서 위기가구는 가구 내 주 소득 상실이나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사회적 관계마저 단절되어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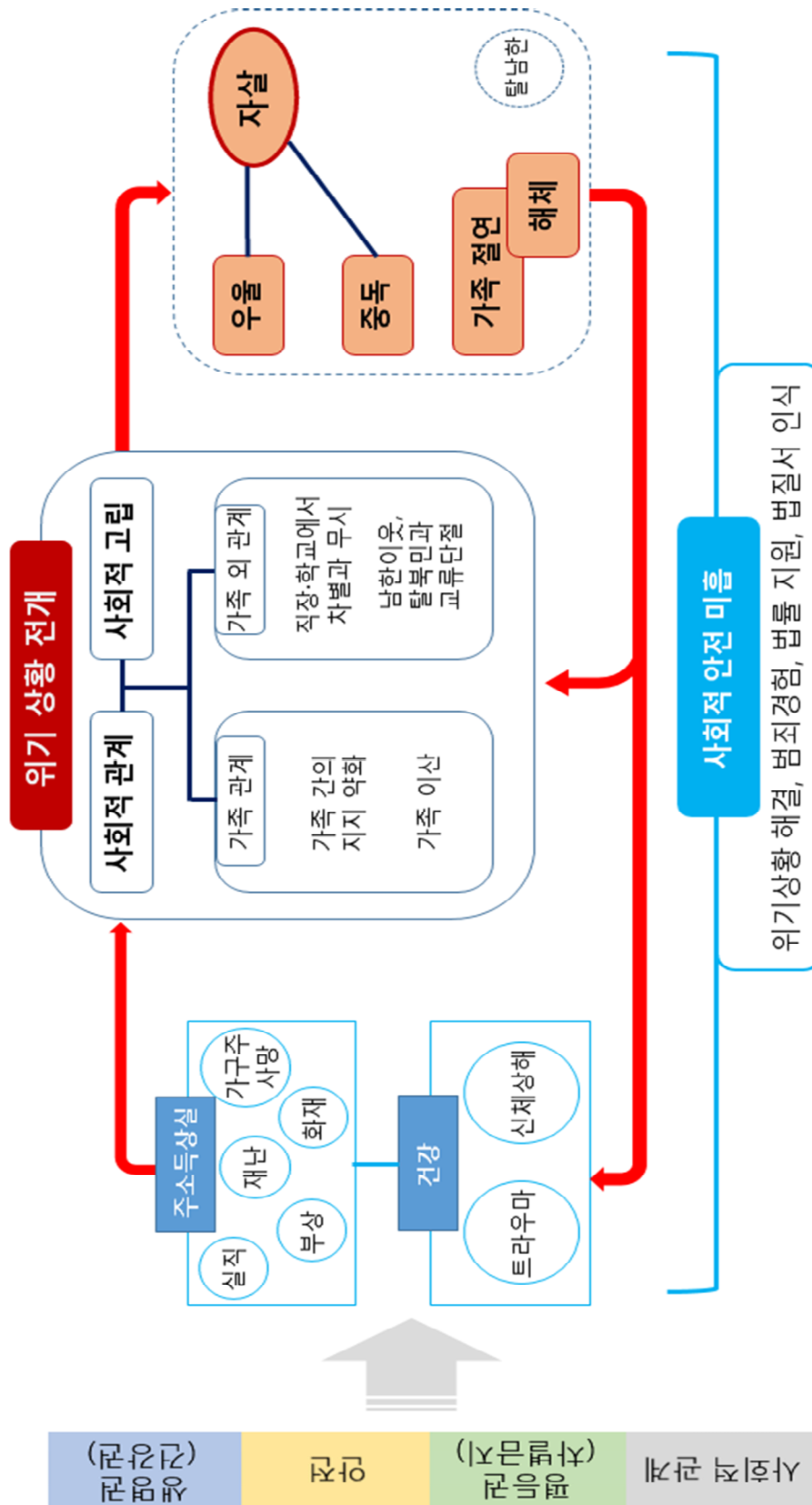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회적 고립이 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위기가구의 구성원들은 스트레스, 우울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탈북민의 알코올 중독을 가중시키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가족관계가 해체되다시피 하여 가족들이 절연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이는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¹⁰⁾ 이에 더해 우울이나 알코올 중독, 가구의 자살과 같은 문제는 위기가구의 소득 상실이나 정신적 건강 문제를 한층 더 심화시키기 때문에 이는 위기가구 전개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과 같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권고의 생명권, 안전권, 평등권, 사회적 관계에 집중하여 탈북민의 위기가구 발생과 위기상황의 전개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4-2>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위기상황 전개도이다. 이는 <그림 4-1>을 보다 구체화하여 구조화한 것이다.

10) 한편으로 위기가구 심화는 남한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탈북민들이 제3국으로 '탈남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위기가구의 인권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에 탈남한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그림 4-2> 북한이탈주민 취약 위기가구의 위기상황 전개도



자료: 저자 작성.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이러한 탈북민의 위기상황이 전개되고 심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인권상황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탈북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기가구의 발생 원인과 전개에 대한 조사와 위기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병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이라는 병렬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먼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개념은 앞에서 정리한 바대로 일상에서 다양한 차별 및 배제를 경험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고립된 상태에 위치한 가구 및 가구 구성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체계를 제시한 바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각종 설문조사에서 취할 수 있는 지표보다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에 집중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인권은 생명권, 안전권, 평등권,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기본권이다. 설문조사는 <그림 4-2>에 제시한 위기상황의 전개와 심화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만 20세 이상 탈북민 3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취합한다. 응답자인 탈북민은 자신이 속한 가구(가정, 가족)에서 겪었던 위기상황을 바탕으로 설문에 답을 하게 된다. 심층면접은 남한에서 위기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1:1 구술 생애담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탈북민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1인 가구 등에 해당하며 <그림 4-2>에 제시된 위기상황을 경험한 바 있는 20대에서 50대의 탈북민 8명을 심층면접한다.

<그림 4-3>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구조와 주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영역은 경제, 건강, 사회적 관계, 사회적 안전이다. 이는 각각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권고 중 경제적 기본권, 생명권(건강권), 사회적 관계와 평등권(차별금지), 안전권과 연관되어 있다. 경제 영역에서는 주 소득 상실, 주거 상실, 가구주 사망 등 경제적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건강 영역에서는 트라우마, 신체 상해, 우울, 중독, 자살 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생명권)을 다룬다.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는 가족이산, 가족 내 지지·관계, 사회적 지지·관계, 차별·무시 등 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관계와 차별금지 등 평등권에 해당되는 내용을 조사한다. 사회적 안전 영역에서는 범죄 경험이나 위기상황의 해결과 그 과정에서의 법률지원 등 안전권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3>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구조 및 주요 내용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일상에서 다양한 차별 및 배제를 경험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고립된 상태에 위치한 가구 및 가구 구성원			
대분류		소분류(항목)	
경제		소득, 취업, 주거	
건강		신체, 영양, 정신, 의료 이용	
사회적 관계		가구 구성 및 유형, 돌봄, 교육, 지지, 사회적 관계	
사회적 안전		사회보장, 치안, 범죄 경험, 법질서 준수, 법률지원	
* 기존 실태조사 등에서 충분히 다룬 항목은 제외하고 본 연구의 주요 관심 항목에 집중하여 설문조사 구성			
설문조사		심층면접	
· 구조화된 설문지 이용 · 만 20세 이상 탈북민 300명 · 가구 단위 양적 조사		· 1:1 구술 생애담 방식 · 위기 경험이 있는 탈북민 8명 · 사례 중심의 질적 조사	
인권 영역		대분류	조사의 주요 내용
경제적 기본권		경제	주 소득 상실, 주거 상실, 가구주 사망
생명권(건강권)		건강	트라우마, 신체상해, 우울, 중독, 자살
사회적 관계 평등권(차별금지)		사회적 관계	가족이산, 가족 내 지지·관계, 사회적 지지·관계, 차별·무시
안전권		사회적 안전	위기해결, 법률지원, 범죄경험

자료: 저자 작성.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이라는 두 가지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그림 4-2>에 제시한 위기상황의 발단과 전개, 심화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량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묻고자 하는 연구 질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민이 위기상황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실직, 부상 및 장기 입원, 재난 등 주 소득 상실의 경험과 탈북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탈북민에게 얼마나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가족 내 관계 및 가족 외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의 약화가 위기상황을 얼마나 전개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관계, 가족 내 지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위기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것이 심화될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우울, 중독, 가족 절연 및 해체가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는 위기의 심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탈북민의 자살충동을 중심으로 위기의 심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넷째, 위기상황의 시작, 전개, 심화의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이 충분히 확보 또는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확인하고, 범죄 상황 및 법률지원 등 사회적 안전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조사 결과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위기가구의 원인 되는 것 중에서 탈북민들은 소득 상실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정신적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는 남한사회 정착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는 탈북민의 위기상황이 심화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위기상황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 등 사회적 지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거나 해결하는 것인데, 탈북민들은 가족관계가 일반국민들에 비해 불만족스러우며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가족 절연 및 해체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에서 재정적 위기, 간병이나 돌봄, 정신적 스트레스, 차별 및 무시 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일반국민에 비해 작았다. 게다가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상황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나 우울증, 알코올 중독이 일반국민에 비해 심한 것을 확인하였다. 자살충동의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이 정신적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우마이고 그다음에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인 것으로 나타나 위기가구의 발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그리고 주 소득 상실인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위기상황의 발단, 전개, 심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동해야 되는 것은 사회적 안전인데 이와 관련하여 탈북민들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또한 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지역하나센터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져도 위기상황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과 함께 보호기간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신변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은 적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법률지원을 받은 경험은 많지 않았다. 법률지원을 받은 이유로는 소득 상실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해결이 가장 많았고, 정신적 고통 극복과 범죄의 가해자가 된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이하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응답자의 인적 정보를 먼저 제시한 후에, 가구 소득 상실 경험과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통해 위기상황의 원인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어서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다음으로 가구의 위기상황 심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한 후 사회적 안전에 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민 위기상황과 인권상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응답자 인적 정보

기본적인 인적 정보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남성 응답자는 69명(23%), 여성 응답자는 231명(77%)이고,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8명(6%), 30대가 41명(14%), 40대가 86명(29%), 50대가 122명(41%), 60대 이상이 33명(11%)이다. 성별과 연령대를 모두 고려한 분포로 보면 50대 여성이 99명(33%), 40대 여성이 70명(23%)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30대 여성이 29명(10%), 50대 남성이 23명(8%)이 차지한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2023년 6월까지 탈북민 입국자 통계에서 지금까지 입국한 탈북민은 33,981명이며 그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약 72%를 차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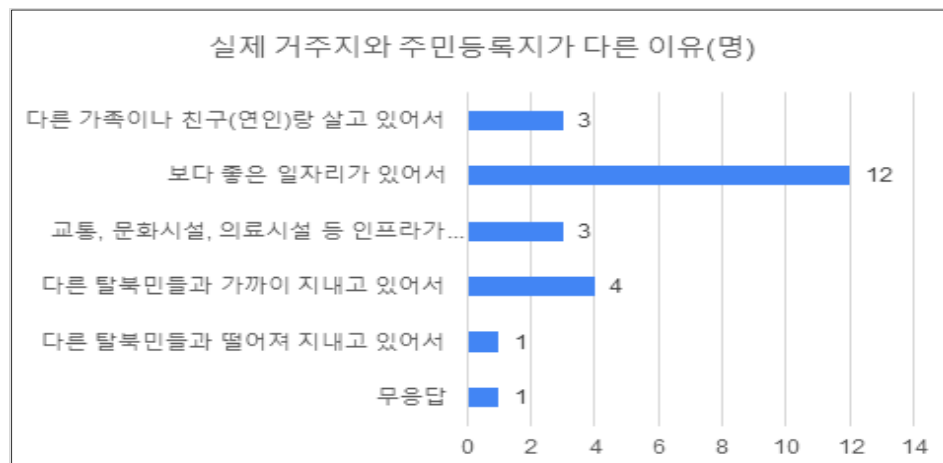
<표 4-1> 응답자의 성별·연령별 분포

연령	남성		여성		연령대별 합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69	23%	231	77%	300	
20대	6	2%	12	4%	18	6%
30대	12	4%	29	10%	41	14%
40대	16	5%	70	23%	86	29%
50대	23	8%	99	33%	122	41%
60대 이상	12	4%	21	7%	33	11%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은지를 묻는 문항에 8%에 해당하는 24명이 ‘다르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유로 ‘보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가 12명으로 ‘다르다’고 응답한 사람 중 50%를 차지하였고, ‘다른 탈북민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어서’는 4명이 응답하였고, ‘다른 가족이나 친구(연인)랑 살고 있어서’와 ‘교통,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인프라가 더 우수해서’를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3명이었다. ‘다른 탈북민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어서’와 무응답은 각각 1명이었다.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만 본 설문조사에서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이유는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표 4-2>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이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응답자 수	비율
같다	276	92%
다르다	24	8%
합계	300	100%



응답자의 남한 거주 기간은 5년 미만인 15명(5%), 5년 이상 10년 미만이 54명(18%),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23명(41%),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81명(27%),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26명(9%), 30년 이상이 1명(0.3%)이다. 코로나 19 기간에 국내 입국 탈북민의 수가 매우 작았음에도 아직 거주지 보호 기간 중인 5년 미만의 탈북민을 설문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표 4-3> 남한 거주기간

남한 거주기간	응답자 수	비율
5년 미만	15	5%
5년 이상 10년 미만	54	18%
10년 이상 15년 미만	123	41%
15년 이상 20년 미만	81	27%
20년 이상 30년 미만	26	9%
30년 이상	1	0.3%
합계	300	100%

응답자의 가구 구성원 수를 보면 1인 가구가 79명(26%), 2인 가구가 91명(30%), 3인 가구가 83명(28%), 4인 가구가 37명(12%), 5인 이상 가구가 10명(3%)으로 나타났다.

<표 4-4> 가구 구성원 수

가구 구성원 수	응답자수	비율
1명	79	26%
2명	91	30%
3명	83	28%
4명	37	12%
5명 이상	10	3%
합계	300	100%

설문조사의 대상을 구성함에 있어 남한 거주기간 5년 미만의 비율이 작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5년 이내에 입국한 탈북민이 많지 않은 것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탈북민의 위기상황은 남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탈북민을 충분히 포함함으로써 현실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설문대상에 1인 가구를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2) 가구소득 상실 경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위기가구의 발단은 가구의 주 수입원을 잃는 상황이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해 탈북민들의 가구소득 상실 경험을 확인하고자 한다. 가구의 주 소득자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그만두게 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있다’라는 응답자가 66명(22%)이고 ‘없다’라는 응답자가 234명(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기간은 3개월 미만이 15명(2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8명(12%),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21명(32%), 1년 이상 2년 미만이 6명(9%), 2년 이상 3년 미만이 2명(3%), 3년 이상 4년 미만이 5명(8%), 4년 이상 5년 미만이 1명(2%), 5년 이상이 8명(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실직 경험과 실직 기간

실직 경험 여부	응답자 수	비율
있다	66	22%
없다	234	78%
합계	300	100%
실직 기간	응답자 수	비율
3개월 미만	15	2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2%
6개월 이상 1년 미만	21	32%
1년 이상 2년 미만	6	9%
2년 이상 3년 미만	2	3%
3년 이상 4년 미만	5	8%
4년 이상 5년 미만	1	2%
5년 이상	8	12%
합계	6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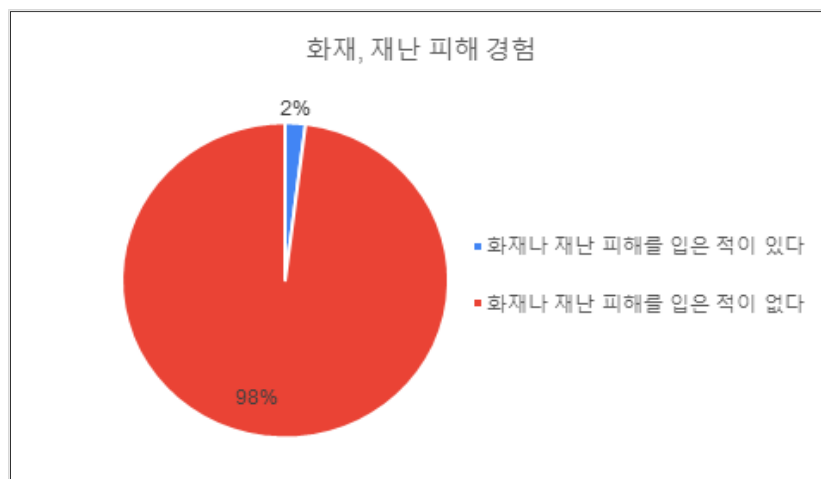
가구의 주 소득자가 장애나 부상, 장기 입원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1명(17%), ‘없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49명(8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직 기간은 3개월 미만이 7명(14%),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9명(18%),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7명(14%), 1년 이상 2년 미만이 10명(20%), 2년 이상 3년 미만이 3명(6%), 3년 이상 4년 미만이 3명(6%), 5년 이상이 11명(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장애, 부상, 장기 입원으로 인한 실직 경험과 실직 기간

장애, 부상, 장기 입원으로 인한 실직 경험 여부	응답자 수	비율
있다	51	17%
없다	249	83%
합계	300	100%
실직 기간	응답자 수	비율
3개월 미만	7	14%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	18%
6개월 이상 1년 미만	7	14%
1년 이상 2년 미만	10	20%
2년 이상 3년 미만	3	6%
3년 이상 4년 미만	3	6%
4년 이상 5년 미만	0	0%
5년 이상	11	22%
무응답	1	2%
합계	51	100%

화재나 산불, 홍수 같은 재난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98%인 294명이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6명만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4-4> 화재나 재난 피해 경험



3) 정신적·신체적 건강

위기가구 발단의 또 다른 원인은 탈북민들이 탈북하여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잃고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설문조사를 통해 탈북민들의 탈북 과정에서의 정신적, 신체적 상해 경험을 확인하고자 한다. 탈북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그리고 남한에 입국하기 전 제3국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여상(2004)은 탈북민들이 탈북 후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신분과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낮은 임금, 성폭력에의 노출, 인신매매, 강제 복종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민들은 불안, 우울, PTSD 같은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나영 외(2015)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 탈북민 중 53%가 PTSD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Jeon et al.(2008)는 남한 거주기간이 1년이 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우울을 경험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남성은 33.1%, 여성은 36.1%의 우울 경험을 보고하였다. 홍창형 외(2006)에서는 탈북민의 PTSD 여부를 3년 동안 추적한 결과, 부분 또는 완전 PTSD를 경험한 탈북민의 88.8%가 회복되는 것을 밝혀냈다. 이소희 외(2017)에서는 탈북민의 PTSD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남한 정착 과정에서 대인관계, 직장생활, 일상생활 등 삶의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본 설문조사에서 탈북민들에게 탈북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120명(40%)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117명(39%)이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63명(21%)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어 정신적 충격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120명을 대상으로 탈북 과정에서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남한 정착 과정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86명(72%)이 남한 정착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9명(16%)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15명(13%)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4-7> 탈북 과정에서의 정신적 충격 경험과 남한 적응에의 부정적 영향

탈북 과정에서의 정신적 충격 여부			정착 과정에의 부정적 영향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있다	120	40%	있다	86	72%
없다	117	39%	없다	19	16%
잘 모르겠다	63	21%	잘 모르겠다	15	13%
합계	300	100%	합계	120	100%

본 설문조사에서는 이어 탈북 과정에서 신체상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와 그로

인해 남한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47명(16%)이 신체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29명(76%)은 ‘없다’라고, 24명(8%)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탈북 과정에서 신체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47명 중 39명(83%)은 그로 인해 남한 정착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5명(11%)은 ‘없다’라고, 3명(6%)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4-8> 탈북 과정에서의 신체상해 경험과 남한 적응에의 부정적 영향

탈북 과정에서의 신체상해 여부			정착 과정에서의 부정적 영향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있다	47	16%	있다	39	83%
없다	229	76%	없다	5	11%
잘 모르겠다	24	8%	잘 모르겠다	3	6%
합계	300	100%	합계	47	100%

탈북민이 겪는 위기상황의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탈북민은 화재나 산불, 홍수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주 소득 상실보다는 실직이나 부상, 장기 입원으로 인한 주 소득 상실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과 <표 4-8>을 비교해 보면 탈북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신체상해보다는 정신적 충격을 겪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정신적 충격과 신체상해를 입는 경우, 70%를 넘는 비율로 그로 인해 남한 정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전히 탈북민에게 주 소득 상실로 인한 위기의 발단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는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사회적 관계

탈북민의 위기가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이다. 사회적 관계는 가족 내 관계와 가족 외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또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사회적 고립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탈북민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을 탐색하였다.

(1)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표 4-9>는 탈북민의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만족’에 해당하는 ‘매우 만족’(44명)과 ‘만족하는 편임’(63명)은 전체 응답자 중 36%에 해당한다. 전반적으로 ‘불만족’에 해당하는 ‘매우 불만족’(22명)과 ‘불만족하는 편임’(7명)은 전체 응답자 중 9%에 해당한다. 전체 응답자의 42%인 126명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¹¹⁾ 전반적인 가족관계는 ‘불만족’보다는 ‘만족’이 많이 나타났다. 통계청(2022)의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이 전반적인 가족관계에서 ‘만족’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64.5%이고 ‘불만족’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2022)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본 설문조사 결과는 탈북민의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일반국민의 평균적인 가족관계 만족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9>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임	보통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	해당없음	합계
전반적인 가족관계	22	7	126	63	44	38	300
	7%	2%	42%	21%	15%	13%	100%

<표 4-10>은 가족관계 유형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매우 만족’이 33명, ‘만족하는 편임’이 45명으로 나타난 반면에 ‘매우 불만족’은 27명, ‘불만족하는 편임’은 12명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에 해당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26%, ‘불만족’에 해당하는 비율은 13%이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매우 만족’이 51명, ‘만족하는 편임’이 78명으로 나타난 반면에 ‘매우 불만족’은 25명, ‘불만족하는 편임’은 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자녀와의 관계가 ‘만족’이라는 비율은 43%, ‘불만족’이라는 비율은 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

11) 전체 응답 중 ‘해당 없음’을 제외한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만족’은 41%, ‘불만족’은 11%, ‘보통’은 48%이다.

계 만족도와 비교했을 때 탈북민의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탈북민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통계청(2022)의 사회조사 결과에 비해 매우 낮았다. 통계청(2022)의 2022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국민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만족’인 비율이 72.1%고 ‘불만족’은 5.9%이다. 자녀와의 관계가 ‘만족’인 비율은 78.6%이고 ‘불만족’은 2.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탈북민과 일반국민 모두 배우자와의 관계보다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인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매우 만족’이 29명, ‘만족하는 편임’이 54명으로 나타난 반면에 ‘매우 불만족’은 20명, ‘불만족하는 편임’은 9명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매우 만족’이 19명, ‘만족하는 편임’이 41명으로 나타난 반면에 ‘매우 불만족’은 27명, ‘불만족하는 편임’은 15명으로 나타났다. 본인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는 ‘매우 만족’이 33명, ‘만족하는 편임’이 48명으로 나타난 반면에 ‘매우 불만족’은 21명, ‘불만족하는 편임’은 5명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는 ‘매우 만족’이 19명, ‘만족하는 편임’이 43명으로 나타난 반면에 ‘매우 불만족’은 26명, ‘불만족하는 편임’은 14명으로 나타났다.

<표 4-10> 가족관계 유형에 따른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임	보통	만족 하는 편임	매우 만족	해당 없음	합계
배우자와의 관계	27	12	117	45	33	66	300
	9%	4%	39%	15%	11%	22%	100%
자녀와의 관계	25	3	98	78	51	45	300
	8%	1%	33%	26%	17%	15%	100%
본인부모 와의 관계	20	9	107	54	29	81	300
	7%	3%	36%	18%	10%	27%	100%
배우자부모 와의 관계	27	15	107	41	19	91	300
	9%	5%	36%	14%	6%	30%	100%
본인형제자매 와의 관계	21	5	121	48	33	72	300
	7%	2%	40%	16%	11%	24%	100%
배우자형제자 매와의 관계	26	14	112	43	19	86	300
	9%	5%	37%	14%	6%	29%	100%

<표 4-11>은 전반적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를 보여준다. 주변 사람들과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우 만족’의 응답자가 39명, ‘만족하는 편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3명인 반면에 ‘매우 불만족’이 16명, ‘불만족하는 편임’이 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41%가 주변 사람들과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반면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율은 7%에 불과하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4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9%를 차지한다.

<표 4-11> 전반적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임	보통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	해당 없음	합계
전반적인 주변사람들 과의 관계	16	7	148	83	39	7	300
	5%	2%	49%	28%	13%	2%	100%

<표 4-12>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유형별 만족도를 보여준다. 대체적으로 불만족보다는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친구(연인)와의 관계를 보면, ‘매우 만족’이 44명, ‘만족하는 편임’이 79명으로 나타난 반면에 ‘매우 불만족’은 14명, ‘불만족하는 편임’은 9명으로 나타났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매우 만족’이 38명, ‘만족하는 편임’이 81명으로 나타난 반면에 ‘매우 불만족’은 15명, ‘불만족하는 편임’은 10명으로 나타났다.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보면 ‘매우 만족’이 37명, ‘만족하는 편임’이 76명으로 나타난 반면에 ‘매우 불만족’은 19명, ‘불만족하는 편임’은 5명으로 나타났다. 학교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매우 만족’이 31명, ‘만족하는 편임’이 59명으로 나타난 반면에 ‘매우 불만족’은 14명, ‘불만족하는 편임’은 2명으로 나타났다.

<표 4-12>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유형별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임	보통	만족 하는 편임	매우 만족	해당 없음	합계
친구(연인) 과의 관계	14	9	134	79	44	20	300
	5%	3%	45%	26%	15%	7%	100%
이웃과의 관계	15	10	145	81	38	11	300
	5%	3%	48%	27%	13%	4%	100%
직장동료와 의 관계	19	5	139	76	37	24	300
	6%	2%	46%	25%	12%	8%	100%
학교친구와 의 관계	14	2	130	59	31	64	300
	5%	1%	43%	20%	10%	21%	100%

<표 4-13>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 정도를 보여준다. 가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149명(50%)이었다. 가족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5명(12%)이었다. 친구나 이웃, 직장동료, 학교친구 등 주변 사람들로 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39명(47%)이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8명(9%)이었다.

<표 4-13>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 정도

가족의 지지 정도			주변 사람들의 지지 정도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7	6%	전혀 그렇지 않다	12	4%
그렇지 않다	18	6%	그렇지 않다	16	5%
보통이다	116	39%	보통이다	133	44%
그렇다	108	36%	그렇다	107	36%
매우 그렇다	41	14%	매우 그렇다	32	11%
합계	300	100%	합계	300	100%

복수 응답이 가능한 주로 지지해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자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배우자, 친구(연인), 본인, 직장동료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자도 13명이었다. 이는 <표 4-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14> 주요 지지자(복수 응답)

주요 지지자	응답자 수	비율
본인	141	47%
배우자	122	41%
자녀	139	46%
본인의 부모	54	18%
배우자의 부모	15	5%
본인의 형제/자매	42	14%
배우자의 형제/자매	15	5%
손자/손녀	7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척	7	2%
친구(연인)	99	33%
이웃	42	14%
직장동료	78	26%
학교친구	23	8%
없음	13	4%

(2) 사회적 관계망

<표 4-15>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를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보여준다. 소득 상실 등으로 재정적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24%인 73명만 ‘있다’고 응답하였고, 48%인 143명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장애, 부상, 장기 입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가의 질문에는 27%인 80명이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47%인 142명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불안, 우울, 알코올 장애,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34%인 103명이 ‘있다’라고, 43%인 128명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를 당할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31%인 94명이 ‘있다’라고, 43%인 129명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문항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통계청(2021)의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경우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에 72.8%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에는 50.1%,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79.6%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통계청(2021)의 이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설문조사의 탈북민들은 재정적 위기, 간병 및 돌봄, 정신적 스트레스 등 위기상황에서 주변에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4-15>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재정적 위기		간병, 돌봄		정신적 스트레스		차별, 무시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있다	73	24%	80	27%	103	34%	94	31%
없다	143	48%	142	47%	128	43%	129	43%
잘 모르겠다	84	28%	78	26%	69	23%	77	26%
합계	300	100%	300	100%	300	100%	300	100%

<표 4-9>, <표 4-10>, <표 4-11>, <표 4-12>, <표 4-13>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표 4-15>의 결과는 의외의 결과이다. <표 4-9>, <표 4-10>, <표

4-11>, <표 4-12>, <표 4-13>의 결과에서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가족관계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높다. <표 4-9>와 <표 4-11>에서 보듯이 전반적인 가족관계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107명이었고, 전반적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122명이었다. <표 4-13>의 결과에서는 149명이 가족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139명이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표 4-15>에서는 위기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 가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재정적 위기의 경우 143명, 간병 및 돌봄이 필요한 상황의 경우 142명,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경우 128명,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경우 129명으로 나타났다.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 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정작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상태임을 시사한다.

탈북민들은 남한에 입국 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남한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남한 생활이 만족스러워도 위기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을 수 있다.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관계 및 주변인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위기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한 거주 기간별 위기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 응답한 사람의 숫자와 비율이 <표 4-16>에 나와 있다.

<표 4-16> 남한 거주 기간별 위기상황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

없다	재정적 위기		간병, 돌봄		정신적 스트레스		차별, 무시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5년 미만	10	7%	9	6%	8	6%	8	6%
5년 이상 10년 미만	28	20%	25	18%	25	20%	23	18%
10년 이상 15년 미만	57	40%	61	43%	52	41%	54	42%
15년 이상 20년 미만	35	24%	34	24%	29	23%	31	24%
20년 이상	13	9%	13	9%	13	10%	13	10%
30년 이상	0	0%	0	0%	1	1%	0	0%
합계	143	100%	142	100%	128	100%	129	100%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응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답자들 중 남한 거주 10년 이상인 비율이 네 가지 위기상황 모두 70%를 넘는다.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그다지 개선이 되지 않은 것이다. 위기상황별로 보면, 재정적 위기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143명 중 남한 거주 10년 이상인 사람들이 105명(73%)이고, 간병 및 돌봄의 상황에서는 108명(76%),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95명(74%), 차별과 무시의 상황에서는 98명(7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4-17>은 남한 거주 기간별 전체 설문참여자 중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각 연령대별 전체 설문참여자(<표 4-3> 참조) 대비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는다. 남한 거주 5년 미만인 설문참여자가 15명인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남한 거주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눈에 띄게 낮아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남한에 20년 이상 거주한 설문참여자가 26명인데 이 중 절반은 위기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4-17> 남한 거주 기간별 설문참여자 대비 위기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

	위기상황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자 비율				남한 거주기간별 설문참여자 수
	재정위기	간병, 돌봄	정신적 스트레스	차별, 무시	
5년 미만	67%	60%	53%	53%	15
5년 이상 10년 미만	52%	46%	46%	43%	54
10년 이상 15년 미만	46%	50%	42%	44%	123
15년 이상 20년 미만	43%	42%	36%	38%	81
20년 이상	50%	50%	50%	50%	26
30년 이상	0%	0%	100%	0%	1

가족관계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에 비해 가족관계에서 만족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낮았다. 이는 탈북민의 개인적 위기상황이 언제든지 위기가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 ‘없다’는 응답이 40%를 넘었고 이러한 상황은 남한 거주기간이 길어져도 개선되지 않았

다. 이는 위기상황이 시작되면 탈북민들은 사회적 고립 상태가 되기 쉬워 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가구의 위기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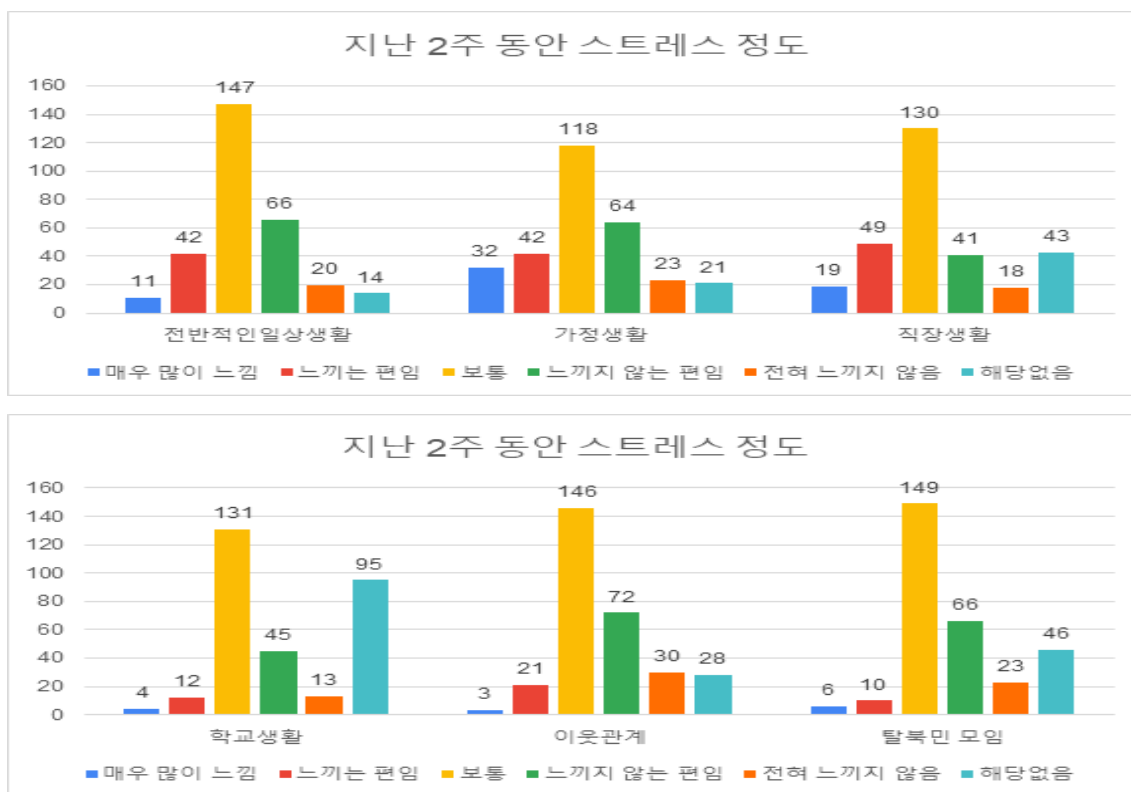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구의 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우울, 알코올 중독, 자살이 나타났다. 특히, 탈북민의 자살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절연과 해체도 위기가구의 심화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목한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해 탈북민들이 겪는 스트레스 정도와 우울, 알코올 중독, 자살충동을 확인하고 가족 절연이나 해체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 4-5>는 지난 2주 동안 삶의 영역별 스트레스 정도를 보여준다. 우선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보면, 스트레스 정도를 ‘보통’이라고 느끼는 응답자가 147명(49%)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86명(29%)이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이 53명(18%)이다. 전반적으로 탈북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받지 않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서는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87명(29%)이고 반면에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74명(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에 대해서는 59명(20%)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반면에 68명(22%)이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탈북민들은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응답자가 58명(19%)인 반면에 스트레스를 받는 응답자가 16명(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관계에서는 102명(24%)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에 24명(8%)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탈북민 모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89명(30%)인 반면에 스트레스를 받는 응답자가 16명(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의 결과를 통계청(2022)의 2022년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일반국민의 스트레스 정도와 비교해 보면 그 양상이 사뭇 다르다. 일반국민의 경우 전반적인 생활에서 지난 2주일 동안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44.9%이고 느끼지 않는 비율이 55.1%로 나타났다. 가정생활에서는 일반국민의 34.9%가 스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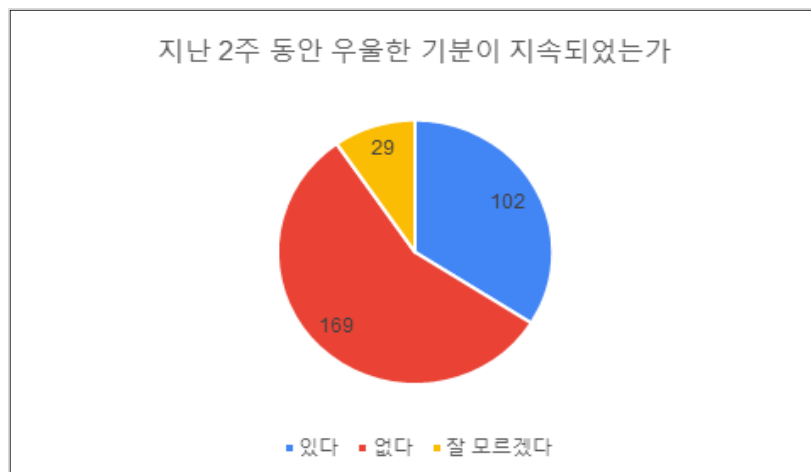
트레스를 느끼는 반면에 65.1%는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직장생활에서는 62.1%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반면에 37.9%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35.6%이고 느끼지 않는 비율이 6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정도와 관련하여 본 설문조사는 ‘보통’을 포함한 5점 척도인 반면에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보통’이 없는 4점 척도이다. 따라서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다만 생활공간별 스트레스 양상을 가늠해 볼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는 본 설문조사의 ‘보통’을 제외한 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전반적인 일상생활의 경우 탈북민과 일반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양상이 비슷해 보인다. 대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느낀다는 응답보다 많다.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은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느낀다는 응답보다 현저하게 많은 반면에 본 설문조사의 탈북민들은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과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직장생활에서는 일반국민은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이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현저하게 많다. 그런데 탈북민의 경우 이 두 가지 응답이 비슷한 수준이다. 학교생활의 경우에는 탈북민의 스트레스 양상이 일반국민과 비슷해 보인다.

<그림 4-5> 지난 2주 동안 스트레스 정도



<그림 4-6>은 지난 2주 동안 우울감이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응답이다. 102명(34%)이 우울감이 지속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169명(56%)이 우울감이 지속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9명(10%)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2021) 2021년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에서 2021년 한국의 주요우울장애 평생 유병률을 7.7%라고 보고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2021)에서는 주요우울장애를 2주 이상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을 느끼거나 흥미를 잃고 일상기능의 저하를 보이는 장애로 정의한다. 본 설문조사에서 탈북민이 2주 동안 우울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의 주요우울장애 평생 유병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그림 4-6> 지난 2주 동안 우울감 지속 여부



<그림 4-7>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얼마나 술에 의존하며, 알코올 중독 진단 여부에 대한 응답을 보여준다. 자신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에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해 술에 의존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65명(22%)이 ‘있다’라고, 220명(73%)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15명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에 전문가로부터 알코올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4명(5%)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276명(92%)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10명(3%)은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술에 의존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2021)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21년 한국의 알코올 사용 장애 평생 유병률¹²⁾은 11.6%이며 알코올 의존의 평생 유병률은 6.2%, 알코올 남용의 평생 유병률은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사용 장애의 1년 유병률¹³⁾은 2.6%이며, 알코올 의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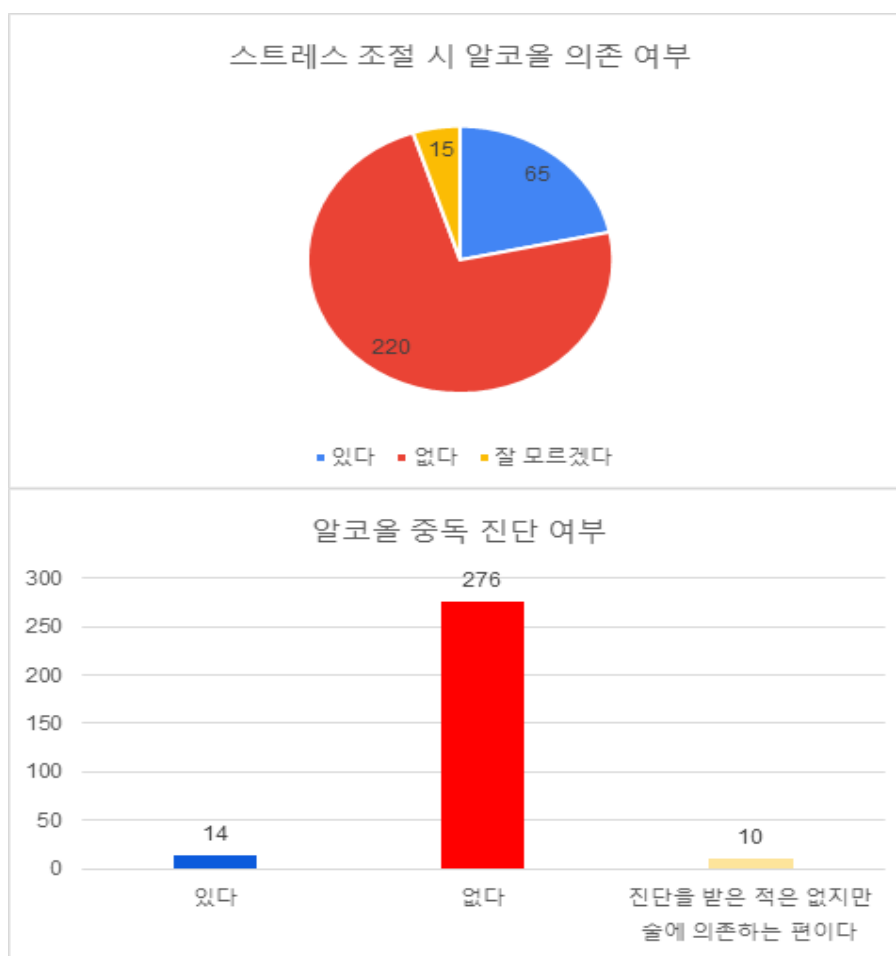
12) 평생동안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경험한 비율을 의미한다.

13) 지난 1년간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경험한 비율을 의미한다.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1년 유병률은 1.5%, 알코올 남용의 1년 유병률은 1.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7>의 결과를 한국의 알코올 사용 장애 평생 유병률과 비교해 보면, 탈북민의 알코올 의존 비율(22%)은 일반국민의 알코올 의존 평생 유병률(6.2%)보다 훨씬 높다. 다만 탈북민의 경우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알코올 의존임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술을 자주 마시는 경우를 포함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은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5%로 이는 한국의 알코올 남용 평생 유병률과 유사하다.

<그림 4-7> 알코올 의존 여부와 알코올 중독 진단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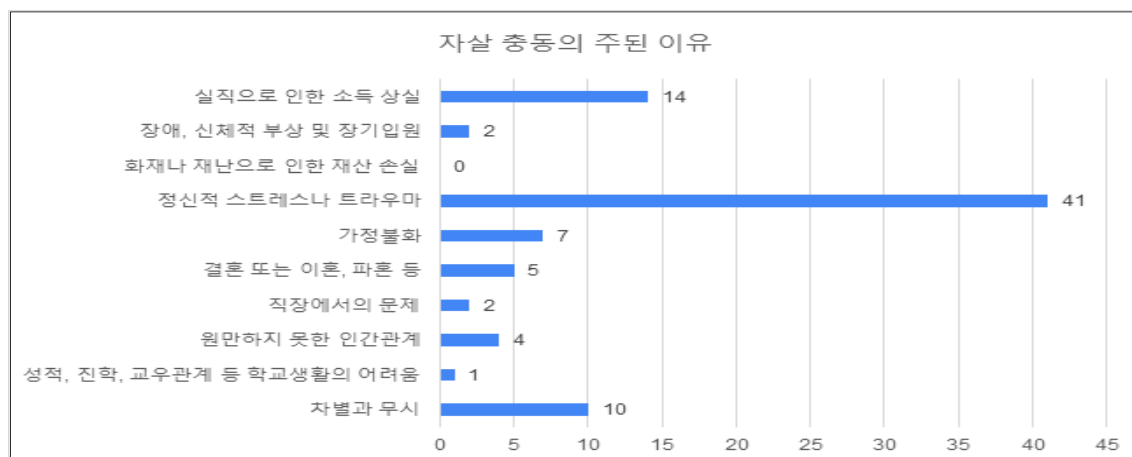
다음은 자살충동 경험에 관한 설문 결과이다. <표 4-18>에는 탈북민들이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과 자살충동의 이유가 단일 이유인지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2명(17%)이며,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48명(83%)이었다. 통계청

(2022)의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우리 국민의 자살충동 경험 여부에서 ‘있다’라는 응답이 5.7%로 나타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2021)의 2021년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는 2021년에 우리 국민이 지난 1년간 자살 관련 행동을 한 비율을 보고하고 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는 자살사고는 1.3%, 자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자살계획은 0.5%, 고의적인 자해 등 죽음에 이르기 위한 치명적 행동을 하는 자살시도는 0.1%로 나타났다. 본 설문결과와 비교했을 때 일반국민의 자살 관련 행동에 비해 본 설문조사의 탈북민의 자살충동 경험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하나재단(2022b)의 ‘202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서도 탈북민의 자살충동 경험을 조사하는데 자살충동 경험의 비율이 2021년에 13.3%, 2022년에 11.9%로 나타나 일반국민의 경우보다는 높지만 본 설문 결과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52명의 자살충동 경험 이 ‘있다’라는 응답 중에서 단일 이유로 자살을 생각한 경우는 33명(63%)이며, 2가지 이유로 자살을 생각한 경우는 9명(17%), 3가지 이유는 8명(15%), 5가지 이상의 이유로 자살을 생각한 경우는 2명(4%)이었다. 자살충동을 경험한 사람 중에 37%가 복합적인 이유로 자살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표 4-18> 자살충동 경험 여부와 이유의 복합성 정도

자살충동 경험 여부			자살충동 이유의 복합 여부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있다	52	17%	단일 이유	33	63%
없다	248	83%	2가지 이유	9	17%
합계	300	100%	3가지 이유	8	15%
			5가지 이상	2	4%
			합계	52	100%

<그림 4-8> 자살충동의 주된 이유(복수 응답)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그림 4-8>은 자살충동의 주된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탈북민이 지난 1년간 자살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충동 경험이 있다는 52명 중 41명이 이것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그다음으로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14명), 차별과 무시(10명)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북하나재단(2022)에서도 탈북민들이 자살충동을 경험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신체적·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살충동 경험의 이유는 통계청(2022)의 사회조사 결과와도 유사하다. 우리 국민이 자살충동을 경험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질환·우울감·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가족관계 약화로 인한 가족 이산과 연락 빈도

불만족스러운 가족관계로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경우		
	응답자 수	비율
있다	37	12%
없다	263	88%
합계	300	100%
떨어져 지내는 가족 간 연락 빈도		
	응답자 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8	22%
그렇지 않다	8	22%
보통이다	17	46%
그렇다	2	5%
매우 그렇다	1	3%
무응답	1	3%
합계	37	100%

<표 4-19>는 불만족스러운 가족관계로 인해 가족이 떨어져 지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있다’가 37명(12%), ‘없다’가 263명(8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경우 연락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16명(44%)이 연락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명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낸 경험이 있는 37명의 22%에 해당한다. 반면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 연락을 잘하는 경우는 3명(8%)으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탈북민의 가족관계 약화로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경우 가족 절연이나 가족 해체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20>은 탈북민들이 미래의 행복한 미래를 얼마나 전망하는지를 보여준다. 아울러 미래가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미래를 전망한 응답자들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여준다.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자들의 50%는 50대(19명)가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40대 11명(29%)이 부정적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표 4-20> 미래의 행복에 대한 전망과 연령대별 부정적 미래 전망 빈도

미래의 행복에 대한 전망			연령대별 부정적 미래 전망 응답자 수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5	5%	20대	2	5%
그렇지 않다	23	8%	30대	2	5%
보통이다	111	37%	40대	11	29%
그렇다	92	31%	50대	19	50%
매우 그렇다	59	20%	60대 이상	4	11%
합계	300	100%	합계	38	100%

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우울이나 알코올 중독을 겪는 가구원이 나타나고 있는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탈북민이 우울이나 알코올 중독을 겪는 비중이 일반국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족이 떨어져 지내거나 거의 연락을 하지 않은 가족 절연이나 해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극단적으로 자살충동을 느끼기도 하는데 정신적 스트레스와 주 소득 상실과 같은 재정적 어려움이 자살충동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6) 사회적 안전

위기가구의 발단, 전개, 심화의 과정에서 탈북민들이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또한 여러 지원을 받고 있는가는 중요하다. 사회통합의 관점은 물론 탈북민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서도 사회적 안전 관점에서 위기 상황 해결 및 이를 위한 지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설문조사를 통해 탈북민들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범죄 관련 상황은 물론 법률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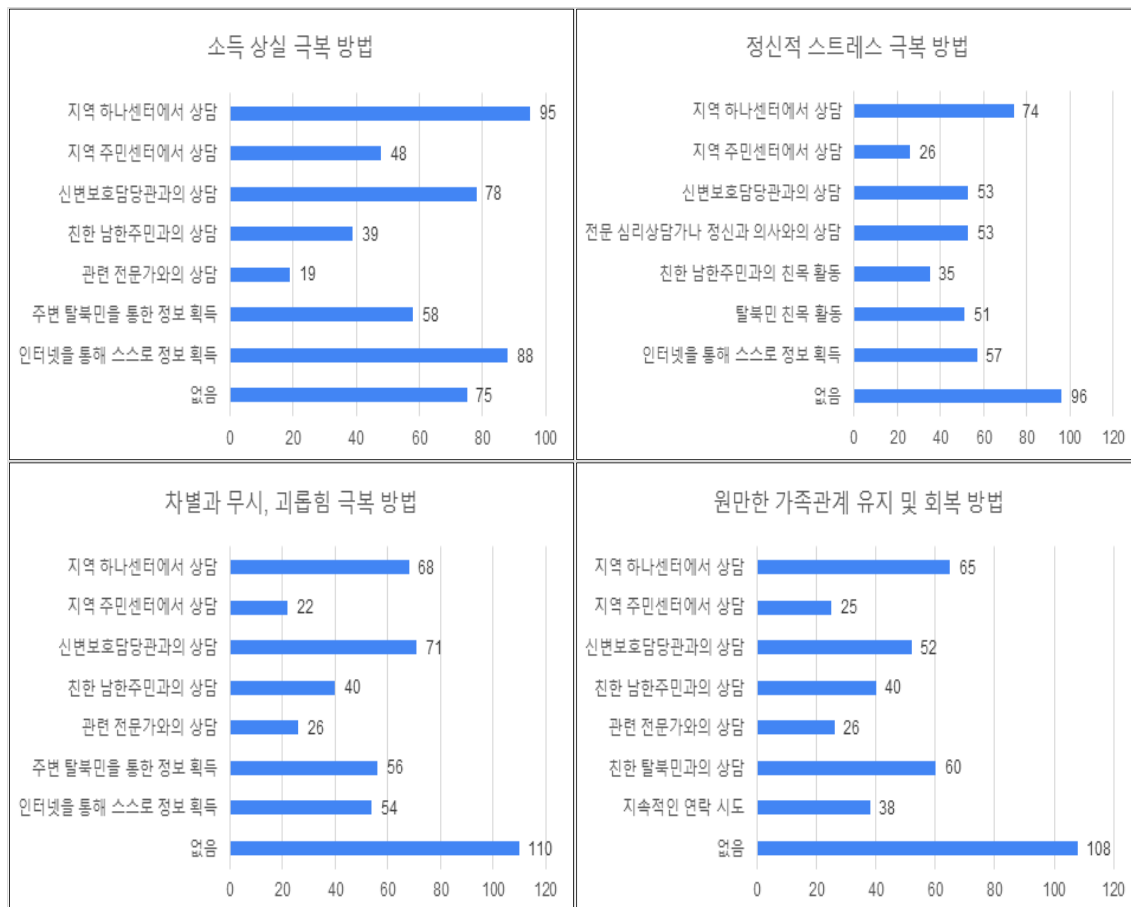
(1) 위기상황 해결 시도

탈북민들이 각종 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활용을 잘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지원제도나 정책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 획득 숙련도는 남한 생활 적응에 중요하다. <표 4-21>은 탈북민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얼마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보 획득 숙련도가 높다는 응답자는 86명(28%)이고 낮다는 응답자는 83명(28%)이다.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의 2022 인터넷이용실태 조사의 일반국민의 인터넷 정보 검색 이용률을 보면 건강·의료정보의 경우 평균 70.5%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 이는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조사결과이며, 20대 이상 인구로 한정하면 건강·의료정보에 대한 평균적인 인터넷 검색 이용률을 더 높아질 것이다. 이 결과와 본 설문조사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획득 숙련도를 보면 탈북민들의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서 정보 획득이 일반국민보다 낮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4-21>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정보 획득 숙련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정보 획득 숙련도	
	응답자 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7	9%
그렇지 않다	56	19%
보통이다	131	44%
그렇다	52	17%
매우 그렇다	34	11%
합계	300	100%

<그림 4-9> 위기 극복에 가장 도움이 된 행동(복수 응답)



다음은 탈북민들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그림 4-9>는 첫째, 실직, 신체적 장애나 부상, 화재나 재난 등의 이유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기, 둘째, 불안, 우울, 약물 혹은 알코올 장애, 트라우마 등 정신적 스트레스, 셋째, 차별과 무시, 괴롭힘의 위기, 넷째, 가족관계의 악화 및 절연의 위기에 어떤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실직이나 신체 상해 등의 소득 상실의 위기상황에서는 지역하나센터에서 상담(95명)을 받거나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보를 획득(88명)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불안, 우울, 중독,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의 상황에서는 극복 방법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96명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지역 하나센터에서 상담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74명으로 나타났다. 차별과 무시, 괴롭힘 등을 당했을 때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없음’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변보호담당관과의 상담(71명), 지역하나센터에서 상담(68명)이 그 뒤를 이었다.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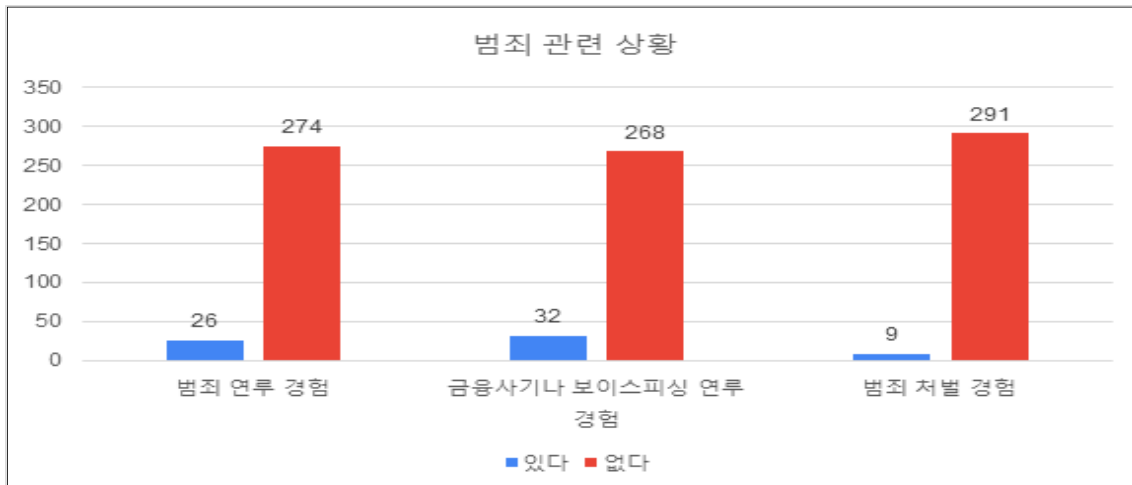
‘없음’이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하나센터에서 상담(65명), 친한 탈북민과의 상담(60명)이 그 뒤를 이었다.

네 가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응답에서 나타난 특징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없음’이라고 선택한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이다. 소득 상실의 위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기에서는 ‘없음’이 가장 많은 응답이었다. 둘째, 지역하나센터에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소득 상실의 위기 극복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지역하나센터에서 상담’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위기상황에서도 탈북민이 효과적인 극복 방법 중 하나라고 꼽았다. 전체 응답자 300명 중 95%가 남한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지역하나센터에서의 상담에 상당히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탈북민들은 위기상황 발생 시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보다는 주변 탈북민과의 상담이나 정보 획득을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였다.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보다는 친한 탈북민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북민들이 자신의 상황을 탈북민이 아닌 이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것과 전문가보다는 주변 탈북민들이 처지가 비슷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것이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 범죄 관련 상황

자신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범죄에 연루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26명(9%)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274명(91%)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금융 범죄나 보이스피싱에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연루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32명(11%)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남한사회에서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9명(3%)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4-10> 범죄 관련 상황



(3) 법률지원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신변보호담당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49%인 146명이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51%인 154명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법률지원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7%인 20명만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93%인 280명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신변보호담당관은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정착하는 중에 자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법률지원을 받은 것보다 신변보호담당관으로부터 도움을 더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22> 법률지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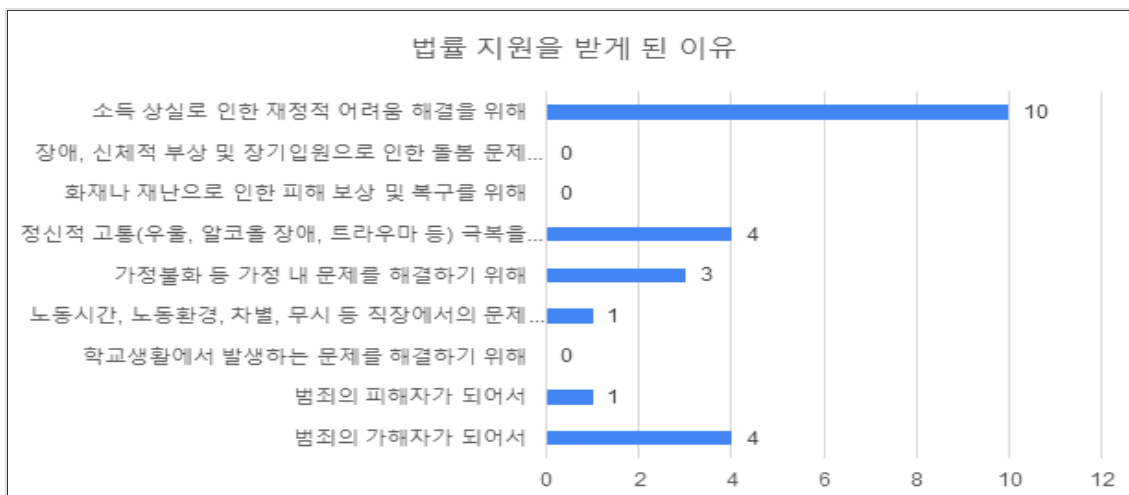
신변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			법률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있다	146	49%	있다	20	7%
없다	154	51%	없다	280	93%
합계	300	100%	합계	300	100%

<그림 4-11>은 법률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법률지원을 받은 이유를 묻는 질문의 결과이고, <그림 4-12>는 법률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받지 않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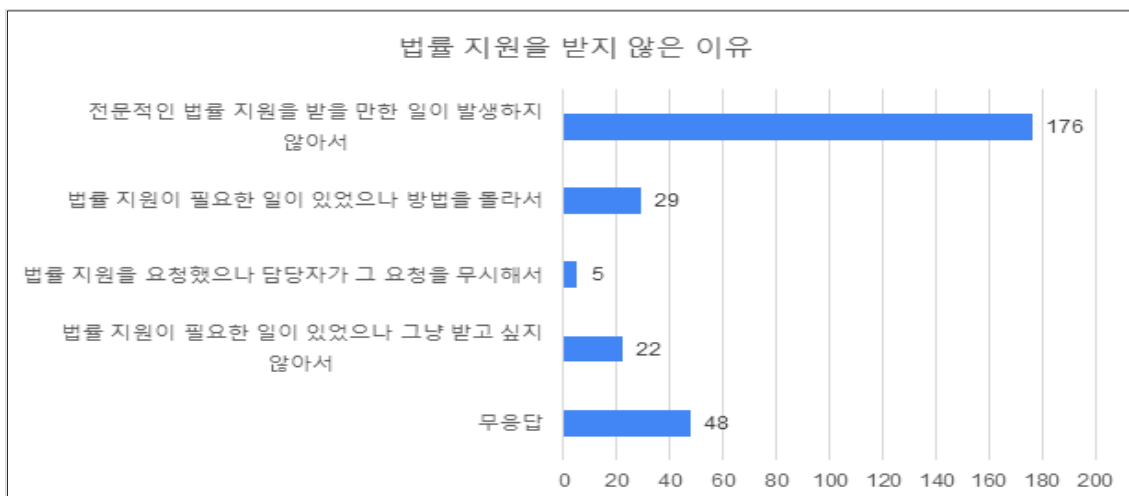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유를 묻은 질문의 결과이다. <그림 4-11>에서 보듯이 소득 상실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법률지원을 받은 경우(10명)가 가장 많았으며, 정신적 고통 극복을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한 경우(4명)와 범죄의 가해자가 된 경우(4명)에 법률지원을 받은 경우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그림 4-12>는 법률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은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176명)이다. ‘무응답’이 4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법률지원이 필요했으나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는 29명이, ‘법률지원이 필요한 일이 있었으나 그냥 받고 싶지 않아서’를 선택한 응답자가 22명이었다. ‘법률지원을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그 요청을 무시해서’로 인해 법률지원을 받지 못한 응답자 5명이다.

<그림 4-11> 법률지원을 받게 된 이유



<그림 4-12> 법률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



사회적 안전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재정적 위기, 간병이나 돌봄 필요, 정신적 스트레스, 차별과 무시 등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아주 높다는 점이다. 위기의 전개와 심화 과정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가족관계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위기상황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위기상황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지역하나센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데 이는 남한 거주기간이 10년이 넘어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7) 탈북민 위기상황과 인권상황

여기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본 탈북민의 위기상황과 관련한 실태를 정리하고 이러한 실태가 인권상황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본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위기상황 관련한 탈북민의 실태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적 스트레스는 탈북민들의 위기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위기상황의 주요 원인이며 위기상황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설문조사 참여자 300명 중 120명이 탈북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그중 72%는 그 정신적 충격이 남한 정착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표 4-7> 참조). 정신적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 알코올 장애, 자살 등의 문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우울감을 느끼는 탈북민들은 일반국민에 비해 더 심각한 수준이다(<그림 4-5> 참조).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 등은 알코올 장애를 일으키기 쉬운데, 본 설문조사 결과, 탈북민들이 일반국민에 비해 알코올 장애를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6> 참조).

둘째, 가구소득 상실과 같은 경제적 요인도 탈북민의 위기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실직이나 장애, 부상, 장기 입원 등과 같은 이유로 일자리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약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한 실직 기간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실직의 경우 67%가 1년 미만, 장애나 부상, 장기 입원의 경우 66%가 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나 부상, 장기 입원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 실직한 경험이 있는 응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답자는 7명으로 장애, 부상, 장기 입원으로 실직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자 중 2%를 차지한다(<표 4-5>, <표 4-6> 참조). 소득 상실은 가구 위기상황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에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법률지원을 받아 본 응답자는 20명이지만 소득 상실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해결이 법률지원을 받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그림 4-11> 참조).

셋째, 탈북민들은 일반국민들에 비해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9>와 <표 4-10> 참조).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 간의 결속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구가 위기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탈북민의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는 눈여겨볼 요인 중 하나이다. 이는 가족관계를 약화시켜 가족 절연이나 해체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불만족스러운 가족관계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경험을 가진 응답자는 37명(12%)이며, 이 중 44%는 떨어져 지내는 가족과 잘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9> 참조).

넷째, 탈북민이 일반국민에 비해 위기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주변 사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6> 참조). 재정적 위기, 간병이나 돌봄,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본 설문조사의 탈북민이 일반국민에 비해 훨씬 낮은 ‘있다’의 비율을 보였다. 남한 입국 후 모든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에서 일반국민에 의해 사회적 관계가 두텁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섯째, 탈북민의 경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지만 위기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상당히 많다(<표 4-9>, <표 4-11>, <표 4-15>, <표 4-16> 참조). 이는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탈북민 중 남한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탈북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는다(<표 4-17> 참조). 이는 탈북민들이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해 사회적 고립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극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는 문항에 ‘없음’이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설문 결과이다(<그림 4-9> 참조). 소득 상실의 위기상황에서는 지역하나센터와의 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획득 다음으로 많이 나온 응답이 ‘없음’이다. 정신적 스트레스, 차별과 무시, 괴롭힘, 그리고 가족관계 약화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없음’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었다. 게다가 전체 응답자의 95%가 남한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지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지역하나센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곱째, 탈북민의 자살충동 경험이 일반국민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충동의 이유도 복합적으로 나타났다(<표 4-18> 참조). 본 설문조사 결과, 52명(17%)의 응답자가 지난 1년 간 자살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통계청(2022)의 2022년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일반국민의 자살충동 경험(5.7%)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한 본 설문조사에서 탈북민이 자살충동을 느낀 이유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는데 단일 이유로 자살을 생각해 본 응답자의 비율은 63%이고, 자살충동 이유가 2가지 이상인 비율이 37%이다. 자살충동의 주된 이유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트라우마(41명)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14명)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본 설문조사의 인권상황을 경제적 기본권, 생명권(건강권), 사회적 관계, 평등권, 안전권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원하지 않는 실직이나 장애, 부상, 장기 입원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은 탈북민 가구에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로 인한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위기상황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소득 상실에 의한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일반국민에 비해 작은 탈북민은 경제적 위기상황이 심화될 여지가 클 수 있다. 탈북민의 생명권(건강권)과 관련하여 본 설문조사 결과는 탈북민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자살에 대한 취약성을 보여 준다. 많이 알려진 바대로 탈북민은 탈북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기 쉬우며 이는 남한 정착과정에서 큰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탈북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남한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국민들에 비해 우울이나 알코올 장애를 더 많이 겪고 있으며, 자살충동도 심하게 나타난다. 자살충동의 주요 원인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득 상실과 같은 재정적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권 또는 건강권으로써 의료 이용에 관한 권리 외에 탈북민은 탈북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충격을 포함하여 정신건강과 중독, 자살과 같은 위기 요인이 내포된 남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생명권과 건강권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적 관계와 관련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취약성을 드러낸다. 탈북민은 일반국민에 비해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어 가족 절연이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만족도에 비해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과 비교해서도 재정위기, 간병 및 돌봄, 우울과 같은 정신적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한 사회적 관계는 위기상황에서 가족을 포함하여 주변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되어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넷째, 평등권과는 탈북민의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를 얼마나 당하는지가 관련이 깊다.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는 이미 기존 여러 조사에서 실시한 바, 본 설문조사에서는 차별과 무시를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설문하였다.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를 당했을 때 도움이 요청할 사람이 있는가에 ‘없다’라는 응답자가 43%인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인권침해 상황에서 탈북민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이 드러났다. 다섯째, 안전권은 사회적 안전의 관점으로 접근하였는데 탈북민들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실과 같은 재정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없음’을 선택한 응답이 세 번째로 많았으며, 정신적 스트레스, 차별과 무시, 괴롭힘, 그리고 가족관계 약화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위기상황에서 탈북민들은 지역하나센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설문참여자의 95%가 남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임에도 지역하나센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심층면접 주요 내용

1) 심층면접 조사 방법

(1) 구술생애담 조사 방법의 특징

심층면접 조사는 반개방형 질문을 통한 구술생애담 조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구술생애담 조사 방식은 인터뷰어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약탈적 인터뷰 방식이 아닌 연구대상의 살아온 이야기를 경청하는 구술학 방법이다. ‘북한에서의 삶 - 탈북 과정 - 한국살이의 고충’을 전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인터뷰 방식으로, 다양한 삶의 맥락과 경험의 결을 서사적으로 이해하면서 어떤 문제로 한국살이의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극복의 가능성이 축소되었는가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술생애담 조사 방법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반복·재생산되는 탈북 트라우마를 분석하는 관점에서도 그 심리적 요인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취약·위기가구 문제를 가중시키는 인권침해의 여러 장면을 잘 포착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경청할 수 있는 일대일 인터뷰 방식을 적용하였다.

(2) 기본 질문 사항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절차

① 조사의 기본 질문

기본정보	성별, 나이
	탈북 및 해외 체류, 한국입국 시기
	현재 건강 상태
일상생활	주거, 의료, 섭식 상황
	직업 및 생계수단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개인·사회적 욕구	진로적성 및 자아실현
	여성문제
복지제도	탈북민 지원 제도 경험 및 생각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 경험 및 생각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조사자는 기본정보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여, 제보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추하며 이야기해주는 바를 경청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제보자의 자유로운 구술증언 가운데, 위의 기본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② 제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절차

인터뷰 전에 연구팀은 제보자에게 “북한이탈주민 위기가정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생명윤리, 연구윤리 준칙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권익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보호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구술내용 중 제보자의 신변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또한 인권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활용 및 인터뷰 내용 녹음 및 사회적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였다. 사전 동의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안내되었으며, 이 내용은 인간 대상 연구의 생명윤리 조항에 따라 구성하였다.

※ 사전 동의서 내용

연구제목: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1. 나(연구참여자)는 본 연구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국가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본인은 이 구술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본인이 구술한 내용은 모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상담 내용이 학술 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을 허용하며, 필요한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9. 본인이 구술한 내용은 개인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술 연구 논문이나 출판물로 공개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인터뷰 후에 본 연구팀은 연구대상에게 구술증언 내용을 정리하면서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인터뷰 후 트라우마 재현이 발생하는 경우 언제라도 조사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더불어 이 보고서에는 개인의 생애담이 공개되기 때문에, 개인신상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의 명칭을 제보자1~8로 표기하였다.

③ 조사 대상

개별 심층면접의 대상은 의도적 표집집단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문제를 범주화하고, ‘탈북+위기가구’라는 해당 사례에 전형이 될 수 있는 위기가구의 구성원을 섭외하였다.

기본적으로 ▷탈북민이면서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원**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탈북민 특성과 ‘인권침해’ 주제에 따라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잃어버린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차별’ 경험과 **한국살이 적응 요인(언어, 문화, 정보취약·접근성, 취업, 진로적성 등)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인물들로 섭외하였다. 더불어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 중 현재 여성의 비율 80%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여성문제(성폭력 트라우마,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등)에** 특별한 위기를 경험한 제보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늘어가는 ▷20대 1인 가구 구성원도 포함하였다.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순번	인적사항	탈북/한국입국 시기	위기가구 문제	
1	남 1970년생	2004/2004	배사우망자	- 기초생활수급자 - 허리 질병, 우울증 진단 - 하반신 장애와 우울증을 겪은 아내가 심정지로 사망(2020년) - 딸 ADHD 진단
2	남 1978년생	1997/2002	장다애문화	- 차상위계층 - 다문화 가정, 다둥이 가정(자녀3) - 장애 6등급, 우울증 진단 - 요양병원 지원 제도와의 충돌 경험
3	여 1968년생	2018/2018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우울증 진단 - 한부모가정의 양육자 - 2018년 북에서 태어난 아들(당시13세)와 함께 탈북, 한국입국
4	여 1971년생	2012/2012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의 양육자 - 중국에서 임신, 한국에서 출산
5	남 1997년생	2015/2015		- 한부모가정의 자녀 - 어머니를 통한 구출형 탈북
6	여 1951년생	1999/2005		- 한부모가정의 조부모 - 따님이 중국 출신 자녀와 이산, 자녀의 생활비 송금 중 - 따님의 인신매매 경험
7	여 1996년생	2013/2015	여가성구	-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 생계위기 및 사회적 고립 경험 - 치안 문제와 취업 곤란 호소
8	여 1996년생	2014/2016	1인	-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과 정신과 진료 경험 - 성폭력 위험 경험, 치안 문제 호소

이상의 제보자들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문제를 대표하는 특징이 있다. 제보자1과 2의 경우는 가구원의 신체적 장애와 가구원끼리의 상호영향력으로 문제가 심화된 사례이다. 그리고 제보자 3, 4는 최근 늘어가는 한부모가정의 여성 양육자로 정신건강과 신체장애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이고, 5는 한부모가정의 자녀 입장에서 증언해주었으며, 6은 자녀의 인신매매 피해와 중국 자녀 양육 고충을 지켜본 어머니의 입장에서 증언해 주었다. 이어 7과 8은 모두 1인 가구 여성이고, 탈북에서 시작된 사회적 고립으로 경제적 위기 및 정신적 위기가 심화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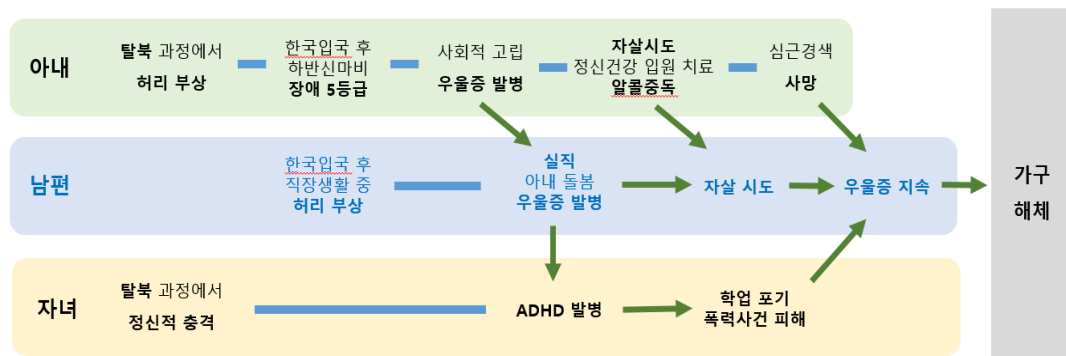
2) 위기가구 상황별 주 호소 내용

(1) 신체·정신적 아픔이 ‘아내→남편→자녀’로 연쇄되는 위기가구 사례

제보자1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자신과 아내 모두 탈북에서 시작된 신체적·정신적 아픔이 반복·재생산되었던 특징이 있고, 탈북에서 시작된 신체적 장애와 정신건강 질환이 각종 문제와 착종되어 가구의 해체를 야기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배우자의 탈북 트라우마와 우울증, 거듭되었던 자살시도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 구술생애담 내용

▪ 신체장애·우울증의 연쇄적 발생 및 가구 해체 사례



제보자1은 1970년생 남성으로, 토대적 한계에 부딪혀 2004년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는 바로 아내와 두 자녀를 2005년에 탈북시키고 가족들은 2006년에 한국에 입국하였다. 아내는 아이 둘을 데리고 탈북하는 과정에서 허리디스크 질환을 앓았고, 남한에 입국하여 수술하다가 하반신이 마비되어 2010년 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아내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다가 2014년 입원치료를 받았다. 홀로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다가 아내의 병간호까지 감당하던 남편은 7년 동안 일해 왔던 노무직에서 허리를 부상당하고 더 이상 몸을 쓰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그리고 아내의 잦은 자살시도를 지켜보다가 남편 역시 2015년 자살시도를 하였고 우울증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 또한 5세 때 탈북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고 청소년기 어머니의 신체적 장애와 자살시도를 목격한 첫째 자녀가 ADHD 진단을 받았고 학업을 중단하였으며, 최근 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등 큰 위기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를 경험했다. 그러는 동안 아내는 알코올 중독으로 지병 심부전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현재 남편과 자녀는 따로 살고 있으며 서로 자주 만나거나 소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① 탈북에서 시작된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

제보자1의 아픔은 탈북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내가 5살, 3살 자녀를 데리고 탈북하면서 디스크 질환으로 앓게 되고, 한국 입국 후에 아내는 허리 수술을 받다가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이에 제보자는 아내의 간병, 그리고 병원과의 소송, 자녀 양육을 홀로 감당하였는데, 그러는 와중에 제보자 역시 노무직에서 허리를 다쳐 직장을 관두게 되었다.

〔조사자 : 아버님도 경제활동 못 하시고?〕 그렇죠. 그게 많이 힘들었고 그다음 또 애들은 또 애들 자리 또 힘들었죠. 엄마 없이 돌보니. 또 주말마다 또 엄마한테 또 와야 되고 그래가지고 애들도 힘들었을 거고. 그때 그래도 생계비가 수급자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아내의 우울증이 발병했다. 아내의 우울증 역시 탈북에서 기인하였다.

(사인은) 급성 심정지로 돼 있고 근데 협심증은 선천성이고 그다음에 우울증은 여기 와서 시작됐어요.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고향에 있을 때도 그런 게 없었고 했는데. 이게 여기는 핵(가족) 그거잖아요. 자기 아파트 옆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사 오기 전 지역에서는) 그 옆에 집을 할머니하고 어디 가 까워서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탈북민들이 별로 없는 곳으로) 이사 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없는 거야. 그게 더 심해진 거야.

제보자는 아내가 탈북 과정에서 경험한 공포의 장면을 자주 거론하는 편이었고, 사회적 고립이 주원인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② 아내의 자살시도→남편의 자살시도→자녀의 정신건강 질환→가족의 해체

아내는 수차례 자살시도를 하였고, 그것을 목격한 자신과 아이들에게도 정신건강에 이상이 왔다고 말했다.

제일 힘든 게 집사람을 어디 마음대로 집을 못 비우는 게, 하, 자꾸만 밧줄로 목을 자꾸만 먹겠다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하니까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우울증이 심한 거죠. ... 그래서 저도 우울증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한번 죽겠다고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었는데. 지금도 수면제를 먹지만 그때도 수면제를 먹었거든요. 수면제를 먹었는데 119 불러가지고 저기 ○○병원 가서 싹 위세척하고 오히려 돈만 한 27만 원 나왔어요. 그다음부터는 죽을 생각도 못하게.

(아내의 정신적 아픔을 목격한 자녀들이) 14살, 16살 때였던 거. 애들도 힘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 ○○이(첫째 자녀) 같은 경우는 오는 과정에서 많이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여기서 ADHD. 지금 지금도 약간 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장애가 있어요. [조사자 : 자녀분이 원래 그랬어요, 아니면?] 중국에서 오는 과정에서 애가 놀란 거예요. 막 큰 개들이 막 물려고 하니까.(당시 5살)

자신도 자살시도를 한 번 하였으며, 현재까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녀들 중 첫째도 탈북 과정에서 공포 경험(당시 5살)과 어머니의 상황(당시 16살)이 중첩되어 ADHD를 앓았고 학업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아내는 알코올 중독이 심각하였다고 했다. 제보자는 원래 지병으로 심부전증이 있었는데 우울증을 앓으면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으로 보면 그냥 돈만 보내주고 그냥 놔뒀던가 하고 생각이 들어서. 훨씬 풍족하고. 죽지 말았어야 되는데 먼저 보내고 나니까. 차라리 북한에서 북한에 있고 여기서 뭐 이를 들면 한 200만 보내주면 먹고 살잖아요. 혹시 죽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인 거죠. 괜히, 괜히 데려왔나, 그런 후회도 약간 좀 들어요.

제보자는 지금까지의 한국에서의 삶을 반추하면서 아내의 죽음에 대하여 제보자는 ‘탈북’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며, 가족들을 탈북시킨 일을 후회하였다.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고자 목숨을 걸고 감행한 탈북이 결국 아내를 죽게 하고, 자녀들을 아프게 한 일이 되었다는 고통스러운 후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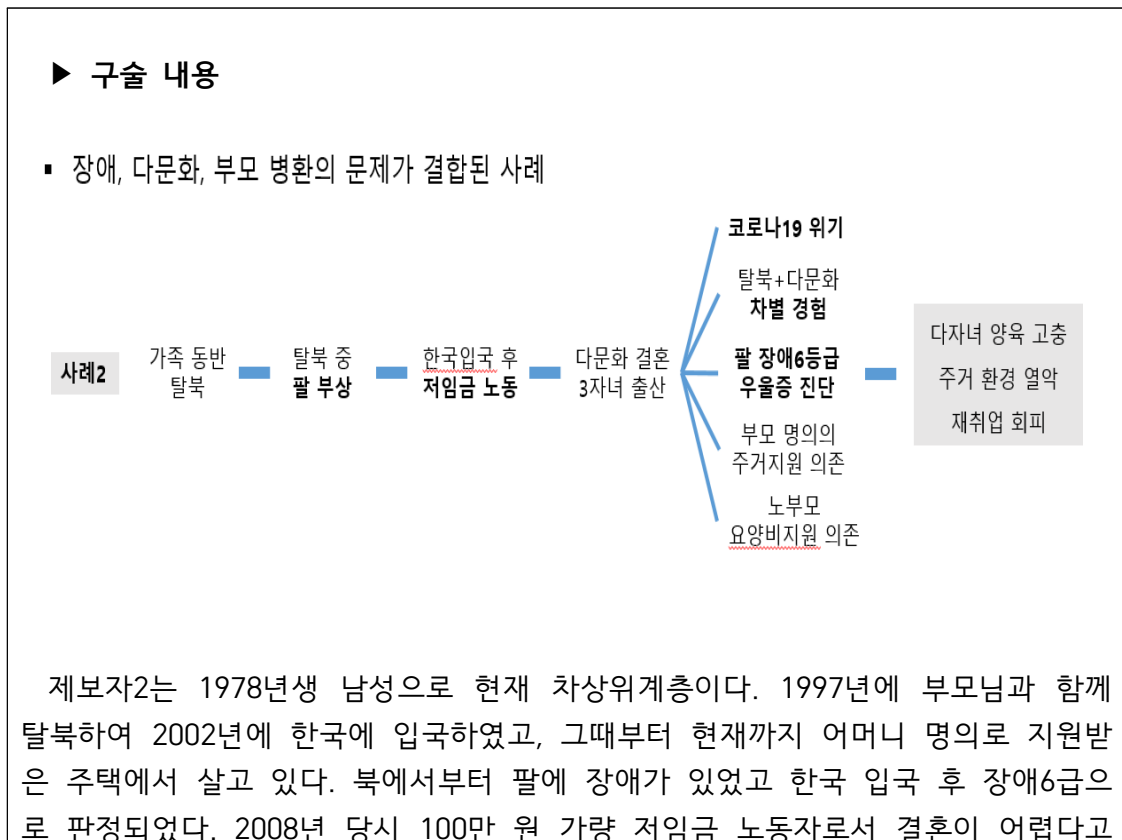
정리하면, 제보자의 주 호소 내용은 가구원 질병 시 생계활동이 불가능하였고,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또 아내의 정신건강 악화는 가구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가운데는 ‘탈북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트라우마'가 큰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가정 내 위기는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결국 이 위기가구는 아내의 죽음을 시작으로 서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어 '가정의 해체'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가구원 1인의 위기가 가구원 전체의 위기로 파급되는 가구원 간 상호영향력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탈북민+다문화가정의 이중 차별에 대한 고통 사례

제보자2는 본인의 장애와 부모 병환, 그리고 다문화가정으로서 위기상황이 결합된 사례이다. 본인은 차상위계층으로, 장애 6급이며, 다문화가정으로 이중의 차별과 박해를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는 어머니 요양원비 지원과 어머니 명의의 주거지원 때문에 행정상의 충돌을 염려하여 구직 시도가 어려운 상태로,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악순환 상황을 대표하고 있다.



판단하여 탈북민 브로커를 통해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였다. 아내는 한글을 몰라 취업이 어려운데, 첫째 아이 임신 당시 복지관에서 한글 교육을 받다가 차별과 무시를 당하고 지금까지 교육 기회가 차단된 상태이다. 최근 차상위계층 자격 유지 심사에서 아내가 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지가 문제가 되어 제보자가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고 했다.

제보자는 현재 어머니와 자신의 기초수급으로 150만 원 가량 지원을 받는데 이것으로 6인 가정이 살 수 없어서, 일용직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상위계층 자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시기 별도의 수입이 없어 대출이 2천만 원 남아있고 어머니가 요양원비 지원을 받고 있어서 복지 지원을 포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지하철공사에 취직할 기회가 있는 데에도 취직하기 겁이 나며, 정규직이 되더라도 그 봉급으로는 어머니 요양원 비용이나 자녀 3명 건사도 힘들어서 우선적으로 차상위계층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데 고민이 많다.

현재 어머니 명의의 주거 공간은 5명의 가구원이 살기에는 협소한데, 최근 SH에서 마곡지구 32평대로 이사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지만 요즘 전세 사기가 많고 두려워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녀들도 있으니 함부로 선택하기 어려운데, 이럴 때 담당 형사가 도와주면 믿고 해볼 텐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며 각종 서류 준비에도 어려움이 많다. 예전에는 담당 형사들이 따듯하게 대해주고 탈북민 문제에 적극 나서 주었는데, 요즘 형사들은 태도가 차갑고 건성으로 대한다.

아직도 한국사회에는 탈북민이 가난해서 탈북해왔다는 점을 알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일용직으로 일할 때 차별과 폭행당한 경험이 있으며, 자신이 탈북민이고 다문화가정이어서 늘 약자 위치에 있어서 무시를 당하고 위축된다고 한다. 차상위계층 지원을 유지하면서 일용직으로 일하려다 보니 자신을 처지를 이용하는 악덕 사업주들에 의해 무시당하고 폭력을 당해 삶의 의욕이 떨어지지만, 자녀들이 잘 살아주어서 그것에 의지하며 힘을 내고 있다.(자녀 14, 13, 10살) 자녀들은 비교적 공부를 잘하고, 학급 임원을 맡고 있고, 차별로부터 자기방어를 잘 해낸다고 한다.

① 거둬드는 생활고와 악덕 사업주의 무시와 폭행

제보자2는 한국에 거주한 지 20년이 넘었고, 현재 차상위계층으로 생활보호 지원을 받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침체로 최근 생활이 더 어려워져 2,000만 원 카드빚이 생겼다고 했다.

그의 주 호소 내용은 우선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취약하며, 행정상의 충돌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시 지금 지원받는 혜택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염려하여 구직활동마저 포기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악덕 사업주들이 이를 이용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무시와 폭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호소했다.

(그 사업주가) 오히려 “야! 그거 각서 써서 나한테 보내고 그 각서 써서 못 보내줬다면은 내가 니를 줄 30만 원을 내 벌금으로 내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보자2는 최근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해 말해주었다. 평소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건설업 사업주가 3층 공사 현장에서 제보자의 뺨을 때렸고, 몸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제보자의 목을 조르고 3층 높이에서 떨어질 뻔한 일이 벌어졌다.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사업주는 사과하지 않고 폭행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하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 임금 30만 원을 주지 않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렇게 제보자는 기초생활수급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용직 일을 하는 것이 불안정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고 호소했다.

② 여러 지원제도의 충돌 문제

제보자2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시급해 보이지만, 그가 걱정하는 것은 각종 지원들의 충돌 문제였다.

수급자에서 저가 탈락되는 경우에, 내 하나의 소득으로 해서 수급자에 탈락될 경우에는 어머니 요양병원비가 문제가 돼요. ... 그리고 저도 이 지하철 공사 쪽에 일거리 들어왔어요.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왜? 안정적이잖아요. (억울한) 그런 일도 안 생기고 그런 거 가고는 싶어요. 근데, 근데 못 가요. 이거는 그게 회사에 등록돼가지고 4대 보험 다 적용되는데 월급 하루 일당 얼마라 하지만은 4대 보험은 다 적용된 상태에서 하는 거라 하고 싶어도 못 해.

왜, 이제는 어머니 요양병원비가 내가 4대 보험 딱 적용되면 애들 다 그렇게 되면 모든 비용은 내가 다 져야 되는 거. 그러면 한 달에 소득이 내 뭐 돼도 600에서 700, 500에서 700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돈들을 다 내고 밥에다 김치 한 숟가락 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소득도 그렇게 해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한 달에 일당 15만 원씩 줄게. 그러면 이것저것 제하면 4대 보험하고, 또 구청에서는 또 그걸로 해서 목 쳐버리는 거예요.

현재 자신과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하며 6명의 가족이 살아가기 빠듯하지만,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 지원제도와 충돌할까 걱정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아무리 안정된 일자리여도 현재 상태에서는 6인의 생활과 어머니 요양원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는 봉급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다른 데 가서는 이야기는 못 해봤어요. 한 구석에 맴돌고 있으니까 선뜻 선뜻 내가 움직이게 안 되는 거죠. 내 하나 때문에 내 애들이나 어머니한테 피해 갈까 봐 그러니까 선뜻 못 가고 ‘아이고, 하루하루 먹고 살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눌러 앉게 되는 거죠.

자신 또한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고 싶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여러모로 실리적이어서 구직을 포기하였다고 했다. 여러 기관에 문의하고 싶어도 기초생활수급자 범주에서 탈락될까봐 여러 요인들이 걸려 쉽게 물어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또, 어머니와 세대분리를 하면 각각 지원을 받을까 고민도 하였으나, 한국입국 당시 부모님과 동반 입국하여 부모님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사는 곳이 어머니의 명의여서 세대분리가 어렵다고 했다. 현재 방 두 개의 12평에서 다섯 식구가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커서 딸과 아들 둘 방을 각각 주고, 부부가 거실에서 잔다고 했다.

근데 사기 당할까 봐 무서운 거. 그래서 어디 가서 법도 모르는 데다가, 다문화 가정이라, 애들 데리고 내가 잘못했다가 애들한테 “아빠 저 뭐야? 왜 저렇게 했대? 어디가 좀 잘 알아보고 하지.” 이런 말을 들을까봐 함부로 못 가는 거야.

얼마 전 더 나은 형태의 주거지원 기회가 있었으나, 요즘 한국사회에 주택 관련 사기가 많아서 정부기관도 믿을 수 없고 서류 제출도 만만치 않아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제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부담감과 책임감이 크고, 자칫 잘못하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지원혜택까지 놓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몸을 움츠리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제보자2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③ 다문화가정으로서 이중 차별의 고통

제보자2는 저임금 노동자로 남한이나 북한 출신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워

2008년 중매업체를 통하여 필리핀 배우자와 혼인하게 되었다. 탈북민으로서 다문화가정인 그는 자신과 아내에 대한 이중 차별을 경험한 바 있다고 고백했다.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조사자 : 그러니까 북한에서 왔다, 우리랑 너무 이념이나 체제가 다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네가 힘들어서 우리한테 왔지, 이렇게 약간 낮잡아 보는 ... 법적으로도 또 딱 가보면 경찰서에 가고 검찰이라면 딱 가보면 저는 검찰도 좀 들락날락 좀 해봤어요. 싸움이랑 해가지고 왜 경찰서에다 딱 가면은 (예를 들어) 선생님(조사자)하고 나하고 둘이 딱 갔을 때 나는 쌍방이라 해도 선생님이 더 잘못했는데 선생님 잘못이 없고 내가 나를 많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원주민이고 나는 새터민이잖아요. 그런 말도 딱 들어보고 중국 조선족이나, 뭐 미국에서 왔냐 그러면 이북에서 왔다면 다 검사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조사자 : 아내분 한글교육 기회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으세요?] 아니 한 번 받았어요. (예, 근데?) 그런데 이게 그것도 또 폭행 사건이 ... 썩 지나가면 이렇게 팔꿈치로 머리를 탁 치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볼펜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와이프가 며칠 있다가 한 달 지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말을 한 거야. 아버지 저 공부하기 싫어요. 왜? 어서 가. 공부하기 싫어요. 왜? 모와 함께 국어 선생이 그렇게 했다면은 또 싸움이 날까 봐 자기 때문에 싸움 날까 봐 여기 가기 싫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제보자는 탈북민으로서의 차별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노동 현장에서는 물론 생활 곳곳에서 차별을 당해왔다고 했다. 그리고 아내는 결혼 초기 한글 교육을 받을 당시 강사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후로는 두려움으로 교육지원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다. 제보자 역시 아내 혼자 보내는 일을 꺼리고 있으며, 한글도 모르는 아내가 실수로 사기나 범죄에 휘말릴까 걱정되어 구직활동을 하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힘들어도 어떨 때는 막 이런 상황이 이렇게 딱 겹칠 때는 때로는 이게 어디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 그래도 지금은 후회 없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어찌고 해도요. 지금은 내가 뭐 지금 현재는 지금 힘은 약해요. 지금 현재는 와이프도 어디 가서 나설 생각도 안 되고 또 내가 와이프 일이 무슨 일 있으면 나서지만 와이프는 나서줄 생각이 못돼요.

위와 같이 제보자는 든 일이 연달아 일어날 때에는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막막하다고 하며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약

자인 아내에게 의지할 수도 없다고 하며 현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문화가정을 이룬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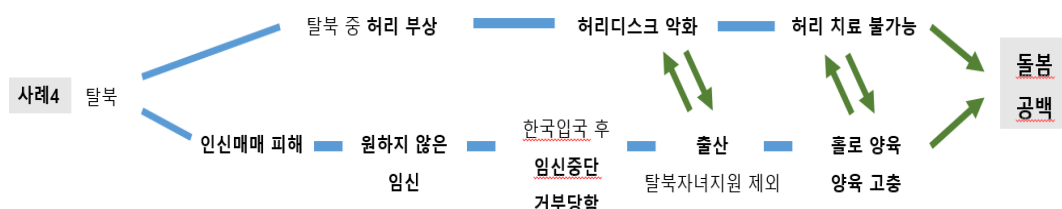
제보자2의 경우는 병든 노부모 부양에 차상위계층으로서 어려움이 중첩되고 탈북민 및 다문화가정으로서 차별과 박해의 경험도 착종된 사례이다. 지원제도가 상충되거나 얽힌 지점이 많아서 그 어느 것도 뚜렷하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정보 접근성에 취약한 상태가 생활보호대상 범주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차별과 박해 경험이 더해져 적극적인 대응이나 도움 요청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신매매로 원치 않았던 임신과 한부모가정의 양육 고충 사례

제보자4는 탈북여성들에게 벌어지는 인신매매 피해와 한부모가정의 양육 고충 문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상이다.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미혼모가 되어, 성폭력 트라우마 및 한국적응 스트레스와 나홀로양육 책임까지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임신 상태로 탈북하다가 허리 질병을 얻었고, 이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해서 자신의 건강과 자녀의 양육 모두 온전하게 돌보지 못하는 ‘돌봄 공백’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 구술 내용

- 인신매매 피해와 한부모가정의 양육 고충의 결합 사례



제보자4는 1971년생 여성이며 2012년에 탈북하여 9개월 후 한국에 입국하였다. 탈북 당시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하였고, 7개월간 중국에서 지내다가 임신한 상태로 탈출하여 임신 5개월 때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 여성은 입국 당시 건강검진을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받을 때 임신중단을 요구하였으나 7개월간의 결혼생활을 근거로 중절 수술이 거부되었고 홀로 출산·양육하게 되었다.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이며, 과거에는 탈북민 자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그녀는 스스로 자신들의 상황을 “복지 사각지대”이라 칭하였다.

그녀는 초산에 신생아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홀로 시골 지역에 배치되어 갖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임신한 몸으로 탈북하다가 허리 디스크 질환을 앓게 되었는데, 출산하면서 더욱 악화되어 최근까지 앓아눕는 일이 잦았다. 돌도 안 되는 아이의 식사도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몸져누운 날이면 아이가 홀로 우유 한두 팩으로 이틀을 버티는 일까지 벌어지자 그녀는 서울지역의 한 교회의 지하방으로 이사 가게 된다. 자녀의 양육 문제, 남성들로부터의 딸아이 보호를 위해 잠시도 자녀와 분리될 수 없어서, 허리 치료나 재혼은 포기했다고 했다.

그녀는 북에서부터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영어 컴퓨터 활용 능력에 능숙했다. 그래서 한국 입국 후 교회와 탈북민들의 도움으로 홀로 양육을 감당하면서도, 각종 온라인 교육을 받는 데에 주력했다. 컴퓨터 활용 능력과 회계사무 능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사무직 직장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직업교육 현장에서 사무직 취업은 어렵다는 평가를 들은 후 실의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① 탈북에서 시작된 신체적 질병과 양육 공백 “아기가 이틀을 팩 우유로 버텨”

제보자4 주 호소 내용의 첫 번째는 자신의 신체적 질병과 자녀양육 공백의 문제이다. 탈북 과정에 허리 부상을 겪고, 자주 며칠을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생활을 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허리 디스크 질환을 앓아왔다.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렇게 몸져누웠을 때마다 자녀를 돌봐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우유인지 곧 2개인지 3개인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걸 먹어라” 하니까 그걸 이렇게 가져오라 하니까 그래도 거기에 뭐는 건 줄 알아가지고 가져오더라고요. 그래 그걸로 애가 이틀 살았어요.

제보자는 자녀가 돌이 갓 지났을 때 또 병세가 심해져 일어서지 못하고 아이 밥을 챙겨주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우유를 꺼내어 먹으라고 했고, 우유 2~3팩으로 아이가 이틀을 버티었다고 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도 당장 아이를 부탁할 곳이 없어 막막했다고 하였다. 조사자가 왜 오랜 기간 허리를 앓으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느냐고 묻자, 당장 며칠이라도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이렇게 자기의 질병을 방치할 뿐이라고 했다. 허리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혼자 둘 수 없는 문제가 겹치고, 또 그것 때문에 아이에 대한 양육 공백이 벌어지는 악순환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② 인신매매로 인한 임신과 나홀로양육의 고통

제보자4는 자신을 “복지사각지대”라고 칭하며 탈북민 자녀 지원제도에서 제외되었던 시절을 이야기했다. 최근 들어 한국입국자 수가 줄어들어 탈북민자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한동안 중국에서 임신한 아이임에도 한국에 와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었다.

그리고 ‘인신매매로 임신한 상황’에 대해서 조사자가 질문하자, 기꺼이 답변을 해주었다.

내가 너무 진짜 한 2년, 4년 울기도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몸이 힘든데 옆에다가 맡길 사람도 없고 누구 어떻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 좀 부담스럽고 귀찮으면서도 (자녀에게) 미안하고 이렇게. 진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든지 ... 지워달라고 했죠. 국정원에서 저희 병원에 데려가 검사하는데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니 임신 여부를 말하래서 손을 들었더니 ... 초음파실 앞에서 국정원 직원에게 아기를 지울 수 없느냐고 하니,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런 말. “아기에게도 인권이 있다” 그러면서 수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북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참 기가 막히죠. (조사자 : 인신매매로 인한 임신이라고 했는데도요?) 그건 안 된대요. 7개월인가 같이 사신 거 아니냐면서, 탈북 과정에서 강간당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제보자는 임신 중단 의사를 거부당하고 원하지 않는 출산을 감당해야 했는데, 병원에서 처음 아기를 본 날 그 유리창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고백했다. 초산에, 당장 도와줄 식구들도 없고, 이 낯선 곳에서 자기 몸 하나 거두기 힘든 상황에서 홀로 아기를 양육해야 한다는 막막함에 한참을 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처음 배정받은 주택이 논밭만 있었던 시골이어서 당장 아이가 열이나도 병원에 갈 수 없고,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지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않았다고 했다. 하루는 한밤중에 아이가 열이 나는데 병원을 갈 수 없어 119를 불렀는데, 1시간 이상 거리의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새벽에 열이 내려가서 이제 퇴원하라고 하는데, 제보자는 그곳이 어디인지도 몰라서 길에서 막막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제보자는 배정받은 집을 방치하고, 서울의 모 교회의 지하실에 자녀와 같이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③ 자녀에게도 전이된 탈북 트라우마

제보자는 자녀의 신변보호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었다.

제가 ○○이(자녀)를 작년(10살)까지 등하교를 시켰어요. 무섭잖아요. 여자들은 누가 건드릴까 그게 제일 무섭고. ... (주변에서 자신에게) 남자를 만나보라 해도, 남자아이가 있는 집은 싫고 ○○이 걱정돼서요. 그리고 의붓아빠도 사실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사건들 많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혼자 ○○이나 잘 키워야지 했죠.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여성들에 대한 성적 피해가 난무하는 세상이라는 걱정이 큰 편이었고, 그래서 허리 치료도 미뤄두며 자녀의 곁을 지켰던 상황이 이해가 되는 발언이었다. 이는 자신이 경험했던 여성으로서의 피해와 관련된 두려움과 걱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보자는 자녀가 당했던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무시 경험을 털어놓았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학부모는 제보자가 탈북민인 것을 알고서 자신의 자녀와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제보자는 초등학교에 전화하여, 자신의 자녀가 차별과 무시를 당할까 염려되어 그 아이와 자신의 자녀를 분리시켜 달라고 항의했다고 했다.

분리시켜 달라고 했죠. 아니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 있죠. 이거 그렇다고 해서 북한처럼 가서 머리 뜯어 올 수도 없고 내가 마음속으로는 ‘별난 거 없다’ 하지. ‘(그쪽 학부모)니 잘난 게 남한에서 태어난 것밖에 더 잘난 게 더 있냐? 그 말고 내보다 더 잘난 게 뭔데?’ 하고

제보자는 그때의 충격을 다시 떠올리며 힘들어했다. 북한에서처럼 개인적으로 항의하고 격하게 몸싸움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며, 자녀가 더 이상 차

별과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만연하다며, 자신의 자녀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탈북민 자녀 혜택을 잘 받지 못하였지만 또 탈북민으로서의 차별과 박해는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고 슬퍼하였다.

④ 사무직 취업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과 좌절

또한 제보자는 탈북민으로서 취업에 있어 제한적인 현실에 괴로워하였다. 그는 북에서 고등교육까지 받았으며 탈북 이전에도 컴퓨터로 사무업무를 보았던 경력이 있고, 남한에 와서는 다양한 컴퓨터 활용 능력 및 회계 업무 능력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허리 디스크 질환에 노동직을 할 수 없었던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북에서처럼 사무직으로 취직하기를 바랐지만, 2020년 직업상담사에게 현재 제보자가 도전할 수 있는 직군은 ‘환경미화원’에 한정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요. 남한 사람들은 또 약간 수입이, 수입이 좀 보장되거나 약간 이렇게 일 좀 이렇게 좀 잘하고 이렇게 하면 좀 수입이 높아지지. 우리는 안만 청소를 해도 그저 지금 보라도 200 최저 시급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지원은 지원대로 끊기고 하고 나면, 차라리 수급비 받으면서 나는 아르바이트하는 게 거기에 남는 돈이거든요. (지원) 받는 것보다 더 못 벌고 못 벌면서 그다음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애는 애대로 방치되고. 세금 저한테 말씀하시잖아. 탈북민들이. 나도 세금 내고 싶다고, 그 이래서 내고 싶데 기초수급 받는 것보다 못한테 어떡하냐고.

제보자는 기초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회적 자기실현의 기회는 매우 협소하고, 현재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지원금보다 적은 돈을 벌면서 자녀는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차라리 기초수급을 유지하면서 불안정하지만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었다. 탈북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남한사회의 불만을 알고 있다면서, 취업이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 문제를 호소하였다.

제보자4의 경우는 홀로 남한생활을 적응하면서 자녀 양육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이 시대 탈북여성들의 고충을 대표하고 있다. 탈북 과정에서 신체적 질병을 얻고, 탈북을 위해 인신매매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어, 한국사회에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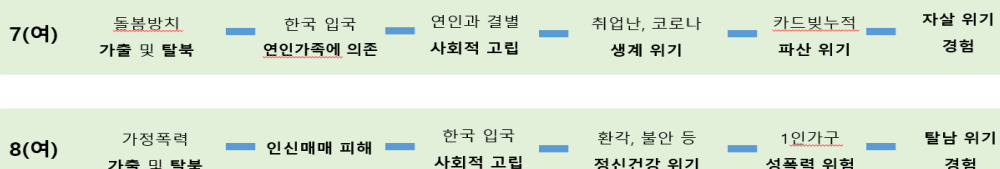
서의 자립과 나홀로양육을 감당해야 하며 상황에 처해있다. 출산과 양육 문제에 있어서 탈북여성들은 전통적 모성관념에 의거하여 자신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으로 강하게 인식하는 편이다. 그러면서도 그 부담감과 고통은 매우 커서 ‘양육’의 문제는 탈북여성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 제보자 역시 자녀를 11살까지 키우면서, 갖가지 위기와 유혹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지켜내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다. ‘탈북모자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탈북여성들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에 제보자4의 삶이 실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4)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와 부적응 위기

제보자 7과 8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20대 청년으로 이전 고난의 행군 시기 탈북민과 달리 새로운 삶을 지향하며 자발적으로 탈북을 선택한 청년이다. 이들은 각각 가정문제로 가출이 탈북으로 이어진 사례이고, 10대 후반부터 한국에 홀로 정착 중이다. 그리고 청소년기부터 가족 없이 살아오면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였으며 경제적 위기와 정신건강 위기를 겪었다고 호소하였다. 두 제보자 모두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구술 내용

■ 1인가구(여성)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탈남 위기 사례



제보자7은 20대 탈북여성으로 10대 후반에 탈북하였다가, 20대 초반부터 탈북민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에 의지하고 지냈다. 그러다 남자친구의 잦은 폭행 사건에 지쳐 이별하고, 자립하고자 하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 취업난과 코로나19 위기로 경제적 위기에 처하였지만 누구 하나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방황하게 된다.

제보자는 그때 자살 위기를 경험했다고 말한다. 또한 그녀는 탈북민으로서 이 사회에 계급적 한계를 절감한다고 하며, 사회적 지위 상승과 전문직으로의 취업을 꿈꾸나 현재의 지원체계가 '기초생활'에만 치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제보자8의 경우 20대 탈북여성으로 가출이 인신매매로 이어지고 탈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약 2년 전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경험하며 환각과 불안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국살이 부적응, 가족에 대한 그리움, 사회적 고립의 고통을 호소하며, 탈북을 후회하며 가족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또한 정신적 고통을 앓는 상황에서 성추행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신변 보호 담당경찰에게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큰 두려움을 느끼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① 막막한 현실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20대 탈북민

제보자7과 8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한국에 홀로 입국한 여성들이다. 이들은 아직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에 혼자서 한국살이 적응을 견뎌오며 살고 있는 1인 가구이며, 주로 '사회적 고립' 문제를 호소하였다.

제보자7의 경우는 취업난과 코로나19 위기상황과 경제난이 겹치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는데, 20대 초반부터 의지해온 남자친구와 이별하면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을 깨닫고 '자살시도' 충동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정말 혼자일 때 제가 이게 내가 정말 (가족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현실감이 너무, '자살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제가 이제 이사를 하고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이사하고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 (카드빚이) 제가 아르바이트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대가 아니고. 근데 그거를 한번 부모님이 계시면 '엄마, 나 한 번만 도와줘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말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쪽 팔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뢰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저희가 대출받을 때도 담보 대출이라는 건 뭔가를 담보로 잡아야 되는데 저를 담보해 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조금 이렇게 상처나 이런 것보다는 막막해져 가지고 그 순간에는 정말 막막해서 '다 놔버리고 싶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저는 나쁜 멘탈이 강한데도, 그때 정말 나 왜 4년을 대학교를 나왔는데 이 돈 자체, 이 작은 것까지 아직 안 되면 내가 굳이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제보자는 스스로를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자평해왔는데, 파산 위기에 처하니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고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지원제도가 기초생활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정작 이러한 파산 위기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리고 제보자7은 실제 탈북민이 어려워하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 문제는 한국입국 당시부터 경험했다고 한다. 그는 2020년 탈북민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때 자신이 입학한 대학과 거리가 먼 지역으로 주거 배정을 받았던 일을 이야기해주었다. 서울 캠퍼스에 입학하였지만 주거지원은 다른 지역 캠퍼스 인근으로 배정되었던 것이다.

가는 데만 3시간 심지어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버스를 타고 20분 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버스도 잘 안 다니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선생님, 그렇게 선생님 입맛에 맞는 집을 원하시면 선생님 직접 사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센터에 전화했거든 그 서로 미는 거예요. 서로 통일부에 전화해봐라 하나재단에 전화해봐라 거기서 여기서 하라고 여기 여기다 하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그랬죠. 그럴 것 같았으면 제가 이러니까 저는 저희 도움 받아서 감사한데 주실 거면 확실하게 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갚을 수 있게 해주셔야지.

제보자7은 이 문제를 관련 기관에 호소하였으나, 냉담한 대응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일로 심리적 위축감이 커져서 지원제도에 대한 질문과 요청을 하는 일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결국 제보자는 배당된 집을 포기하고 주거지원금으로 대체 받았고, 주변 지인들의 집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탈북민 남자친구에게 의지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들에게도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생활 전반에서 도움을 받고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남자친구가 자주 폭행 사건을 일으켜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결정을 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사회적 고립’이라고 말했다. 홀로 한국에 입국한 여성들이 위험한 관계에 얽매어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② 1인 여성가구로 살아가는 두려움

그리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위험도 걱정거리였다.

정말 그게 큰 걱정이긴 하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니까 긴급 연락처가 없어 가지고 그게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만약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만약에 무슨 상황이 생겨서 죽는다고 쳤을 때 저를 신고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공격이나 피해가 있을 때 내가 위험하다는 걸 알릴 데가 없다는 게.

최근 제보자는 데이트폭력 위험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치안 문제를 이야기했다. 자신이 위험에 빠졌을 때 긴급 연락처가 없다는 것이 큰 걱정이며, 혹시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위와 같이 1인 가구에서 걱정하는 가장 큰 문제는 치안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보자8도 심각성을 이야기했다. 우선 제보자8은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이야기했다. 가출이 탈북으로 이어진 이 사태에 대해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이 감당할 수 없었고, 혼자 사는 삶이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말했다.

겁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잘 때도 항상 아 이거 더워서 두꺼운 이불 덮고 막. ... 그게 와요. 그러니까 클렌징 하다가 앞에 거울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 열심히 했더니 그런 거 너무 사라졌어요.

그냥 너무 생각나고 부모님이 항상 꿈에서 벗겨 나타나고 하니까 계속 생각나고 하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와 가지고 이런 고생하지?' 막 이런 생각. (조사자 : 후회해서?) 탈북이 후회되죠.

제보자는 혼자 살면서 환각에 시달리다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경험 이 있다고 했다. 원래 겁이 많았다고 하며, 너무 무서워서 잘 때도 두꺼운 이불로 얼굴까지 덮고 잠들어야 하고, 가끔 보이는 환각 때문에 고생했다고 털어놨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까지 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지금은 좀 나아진 상태라고 했다.

그런데 제보자는 지원된 주택에서 혼자 살면서 치안 문제를 절감하게 된다. 이웃 사람이 제보자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위기감을 주는 행동을 계속한다는 것이었다.

그 아저씨 볼 때만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 (조사자 : 담당 경찰한테 말해보았어요?) 그런 걸 도움받고 싶진 않아요. 막 이런 그런. 뭐 내가 법에 대해서 이런 거는 물어볼 수 있는데, 내가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하면 그분도 피곤하다고 그래가지고.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경찰에 신고했는데 명확한 피해 상황과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조사자가 담당 경찰에게 호소해보라고 했지만, 이런 문제로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다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상황과 함께, 탈북민들끼리도 편하게 대하기 어렵다는 인간관계 문제를 털어놓았다.

이렇게 탈북민 1인 가구의 경우, 한국사회에 가족이 없는 ‘사회적 고립’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외로움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생존에 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요인이 탈북민 적응과 청년 자립의 문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두 사례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3) 인권 관련 주 호소 내용

8명의 심층면접 참가자들이 제기한 사안들을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3> 인권 관련 주 호소 내용

인권	주 호소 내용	상세 내용
경제적 기본권	자립 기회 축소의 문제	- 구직활동 시도의 어려움 - 경제적 계층이동 불가능성
건강에 대한 권리	신체적 질병 문제	- 탈북 시 신체적 상해 - 노무직 근로 중 신체적 상해
	정신건강 문제	- 탈북 트라우마 - 우울증 및 알코올 중독 위기 - 자살시도
안전권	범죄 위험 및 치안 문제	-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움 - 무연고 1인 가구의 치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탈북민 신분 노출의 문제	- 지원제도 활용 시 빈번하게 노출되는 탈북민 신분 정보
알 권리의 정보접근권	정보 접근성 문제	- 법률 지식에 취약 - 복지제도에 대한 문해력 문제 및 복지지원서비스 불만족 호소 - 성인지감수성 문제 호소
차별금지	차별·무시 경험	- 사회생활 속 차별 경험 - 취업 및 임금의 차별 경험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사회적 소외 문제	- 인간관계 고립 - 적응스트레스로 가족관계 불화 - 무연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
여성인권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	- 탈북여성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 -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호소
	성폭력 트라우마	- 북에서의 성폭력 피해 - 탈북 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 - 탈북남성들의 데이트폭력 문제
	돌봄노동의 여성화 나홀로양육 책임 고충	- 홀로 자녀를 키우는 고통 -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 - 제3국 자녀 양육의 어려움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제보자 8명은 각각 신체·정신건강 위기 및 가구 구성원 간 상호영향력 문제, 다중 차별경험의 문제, 한부모가정의 돌봄공백 문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의 문제 등을 대표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이들의 주 호소 문제들은 탈북 과정에서 신체·정신건강 질병을 앓게 되었다는 점이 공통적이었으며, 생계유지의 어려움이나 실직, 질병 등 물리적인 어려움과 함께 차별경험·돌봄공백·사회적 고립·가족갈등 문제 등도 취약·위기가구의 현실적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은 다양한 인권침해 국면에 맞닿아 있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5장 2절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 항목에서 상세하게 다루며, 제Ⅴ장 3절에서 인권개선을 위한 탈북민 지원제도의 개선 방향과 함께 상술하고자 한다.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1.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열악한 인권상황

1) 일반설문 조사결과를 통해서 본 문제점

(1) 취약한 적응·자립의 토대

안정된 경제적 기반은 탈북민 스스로 자신감을 키워 감은 물론 그들에 대한 경계의 벽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든든한 경제적 기반은 탈북민을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닌 상호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일반설문 조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탈북민의 적응·자립의 토대는 여전히 취약하며, 한국사회에서 안정된 경제적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립에 있어서 핵심은 일자리라는 인식 하에 취업 역량 증진과 취업여건 개선에 집중됐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취업 지원 등으로 탈북민의 고용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자립·자활 수준은 일반 국민의 평균에 비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모춘흥 2021, 468-469). 또한 노동 시장 참여라는 단기적 처방에 몰두해온 정책으로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 상황 개선에 많은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의 주 소득자 실직에 따른 가구소득 상실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위기상황의 주된 요인으로 기능하게 된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84%가 3인 이하의 가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이 탄탄하지 않은 탈북민 가구의 주 소득자 실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실직이 가족 이산의 문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의 주 소득자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직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있다’라는 응답이 66명(22%)이었으며, 불만족스러운 가족관계로 인해 가족이 떨어져 지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 ‘있다’가 37명(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경험이 그 자체로서 가족 이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구의 주 소득자 실직으로 인한 가구소득 상실은 가족관계 약화와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살 수밖에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 입국 탈북민의 수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우는 타지역으로부터 탈북민 유입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⁴⁾ 이는 여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경기도가 많은 일자리가 존재하고,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의 구직활동을 위한 정보와 취업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하나센터가 경기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돌봄 공백과 안정적인 취업 활동 사이의 큰 간극이 존재한다. 탈북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활동참가율(남성 77.1%, 여성 58.5%)과 고용률(남성 74.8%, 여성 54.1%)이 낮고, 임금(317.6만 원, 여성 203.8만 원)도 낮다. 그러나 탈북여성 임금근로자 근속기간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3년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는 31.5%에 불과하며, 임금근로자 구직 기간은 84.3%로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취업 활동이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돌봄 공백으로 인해 안정적 근무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돌봄 공백으로 인한 실직이 가구소득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많은 수의 탈북여성들은 단기간 내에 구직을 할 수 있는 단순노무(23.1%) 및 서비스직업(24.8%)을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21.5%)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그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육아(26.4%)인 것으로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 2022).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취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탈북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으로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에 정착 초기에 받았던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의존하며 사는 경우가 많다.

위의 두 가지 사안 이외에도 가구의 주 소득자 실직에 따른 가구소득 상실은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의 안전권, 평등권, 사회적 관계 등의 측면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안정된 적응·자립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탈북민 정책과 연구들이 보여준 성과를 인정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책 방향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관용(tolerance)에 기반한 기존 탈북민 정책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립·자활과 사회통합에 집중한 기존 탈북민 정착지원 체계는 탈북민이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로 잘 정착해 바람직한 경제

14) 경기도는 탈북민 최다 거주지역으로 도내 탈북민은 2023년 3월 말 기준 10,923명으로 국내 거주 탈북민의 30% 이상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2022년 말 경기도에서 탈북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은 화성시(1,323명), 평택시(1,159명), 김포시(794명), 수원시(691명), 용인시(669명), 부천시(625명), 안산시(598명), 시흥시(50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이지연 2020, 131-132). 물론 탈북민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물질 토대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토대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 체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회와 분배의 정의가 수반될 때에만 확보될 수 있다. 단순히 나(우리)의 물질 가치를 탈북민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탈북민 취약·위기가구가 처한 현실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마음과 실천을 탈북민 정책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모춘흥 2021, 468).

다음으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탈북민의 경제적 기반에 대한 논의의 중심축은 노동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탈북민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동시장 참여와 같은 단기적 처방과 함께 자산형성과 같은 중장기적 처방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반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탈북민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소득은 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기관의 이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공적, 사적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탈북민이 경제적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은 탈북민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가 독점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촉발한 위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탈북민은 탈북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는 비율이 신체상해보다 높으며, 그로 인해 한국사회 적응·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은 탈북 과정에서 복송의 위험과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생활로 심각한 정신적 불안을 겪고 있다. 또한 상당수 탈북민은 심리적 조건이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지는 신체화를 겪고 있으며, 그 결과 불안, 우울감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신 근육통, 두통 등의 신체적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한나영 외 2015).

연구진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위기상황의 시작이 앞서 살펴본 가구의 주소득상실과 탈북 과정에서의 신체적·정신적 상해로 보았고, 탈북민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기능한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다. 지난 2주 동안 우울감이 지속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34%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일반국민들의 주요우울장애 평생 유병률(7.7%)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탈북민의 우울감은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탈북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사회 적응 및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에 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한 탈북민 임상군에서 PTSD 진단율이 높고, 이들은 한국사회 내 적응 곤란을 겪으며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 따르면, 인구 사회학적 변인이나 한국사회에서의 사회·경제적 변인들보다는 탈북 과정, 한국사회 전체를 통해서 겪게 되는 심리적 요인이 한국사회에서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며, 그중에서도 한국에서의 스트레스 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나영 외 2015). 말하자면 취약·위기가구 탈북민은 전 생애적으로 트라우마 문제를 겪게 되며, 이에 탈북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추적 연구와 정신과적 개인 전략이 필요하다.

심리적 불안은 상당수 취약·위기가구 탈북민이 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탈북민의 알코올 의존 비율(22%)은 일반국민의 알코올 의존 평생 유병률(6.2%)보다 3배 이상 높다. 또한 일반국민들과 비교하여, 탈북민의 높은 알코올 의존 비율은 자살충동 경험의 높은 응답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자살충동의 주된 이유가 정신적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였다는 것을 보면, 탈북 과정과 제3국 체류과정만큼이나 새로운 정착지인 한국사회에서의 문화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는 탈북민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정신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했다. 탈북 청년들의 한국사회 통합 활동을 지원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물리적 거리두기와 당국의 제한 등으로 탈북 대학생들 사이에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증가했고, 탈북 장년과 노년층도 복지시설 폐쇄 등으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우울 증세가 심화됐다고 말했다(VOA 2021/3/19). 연구진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50대 탈북여성은 “연일 이어지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면서 “문제는 코로나19 상황보다 지금이다.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조금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희망도 사라지고 있다”고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탈북 이전부터 혹은 탈북 과정에서 얻게 된 상해와 심리적 불안, 여기에 ‘남한살이 고충’이 더해지면서 취약·위기가구 탈북민의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그 결과 이들에게 있어서 빈곤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오래전부터 탈북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수형 외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탈북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는 통합적 틀에 기반하여 구축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가동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 간 보건의료지원 사업의 편차가 존재한다(이수형 2018, 146-147).

또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1종 의료급여수급권을 받았던 탈북민도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종 또는 2종 수급권을 부여받게 됐다(의사신문 2022/8.2).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과 탈북 트라우마 및 심리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탈북민 가족 구성의 변화 등의 문제가 취약·위기가구 탈북민 의료서비스 공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열악한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체계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탈북민의 사회적 연결망은 시간이 지나도 일반국민들과의 연결망이 크게 확대되지 않고 제한적이다. 또한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생각보다 크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22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을 동네 이웃, 직장동료, 사업동반자, 결혼상대자, 학교 교사, 지역대표로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인 결혼상대자(56.8%)로 관계 맺기를 가장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인 책임이 덜한 동네이웃(12.0%)이나 직장동료(14.1%)로 관계 맺기를 꺼리는 정도는 책임이 따르는 결혼상대자나 사업동반자(38.2%)의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아울러 교사(48.6%)나 지역대표(55.7%)라는 의사결정을 하고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탈북민을 인정하고 이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꺼려하는 것 또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141).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탈북민과 남한주민과의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은 이들이 사회적 연결망이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설문조사 결과에 볼 수 있듯이, 일반국민들과 비교하면 탈북민의 전반적인 가족관계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는 우려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작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재정적 위기, 돌봄이 필요한 상황,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없다’라는 응답이 모두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일상적인 상황에서 가족관계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약·위기가구 탈북민이 위기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체계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국내 거주기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의 사회적 관계망이 크게 확대되지 않은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 점은 탈북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편견은 분단 트라우마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에 여전히 짙게 깔려있는 분단 트라우마로 인해 많은 탈북민들은 차별과 소외감을 경험하며, 감시와 경계의 대상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박재인 2017, 43; 홍용표·모춘흥 2018, 335). 이와 같은 탈북민을 바라보는 정서가 있는 상황에서 취약·위기가구 탈북민이 위기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사회에 별다른 연고 없이 입국한 탈북민의 경우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한 양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이 부산에서 만난 국내 입국한지 3년이 지난 60대 후반의 탈북 여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찰과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며 외로움을 토로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고 있지만,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구성원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문제의 본질은 ‘존엄하게 살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무관심도 문제지만,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하게 바라보는 것은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에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정책의 지향점은 한국사회가 이들에게 ‘또 하나의 고향’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모춘흥 2021, 471-472).

(4) 제한된 정보 접근성과 취약한 위기대응 역량

탈북민이 한국사회에서 적응·정착하는 과정과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 접근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탈북민의 자립 역량에 있어서 핵심은 높은 정보 접근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컴퓨터와 IT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와 활용 능력을 기반으로 이를 업무와 생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이 이들의 자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신효숙 2022).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 볼 수 있듯이, 탈북민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접근성은 일반국민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탈북민은 위기상황 대응 역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은 재정적 위기, 돌봄이 필요한 상황,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없음’을 선택한 응답이 매우 높았다. 일반적으로 위기상황은 개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위기상황의 개인은 주변의 지원에 대해 순응적인 태도를 지닌다고 한다. 그러나 탈북민의 경우 위기상황에서 주변의 지원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정신적 충격을 제외하고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아닌 친한 탈북민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한편 탈북민은 자본주의 경제, 특히 금융서비스와 신용거래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 금융사기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연루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금융사기 피해는 탈북민이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유사수신에 대한 피해는 그 특성상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상당수 탈북민은 유사수신에 의한 사기를 당하고 난 후에도 2차, 3차로 유사수신행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병욱·송현욱·김영희 2016, 11).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탈북민은 법률지원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일이 있었으나 그 방법을 잘 몰라서와 그냥 받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국민들과 비교하여 탈북민의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체계가 두텁지 않으며, 특히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또한 법률 지식과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법률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하나원에서 제공하는 몇 시간의 법률 교육만으로는 한국 법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민의 한국 생활 적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2020년부터 탈북민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실생활에 꼭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필요한 법 교육을 실시하는 법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법률신문 2020/1/28). 또한 2023년 6월부터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재단이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 법률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북한인권정보센터 2023/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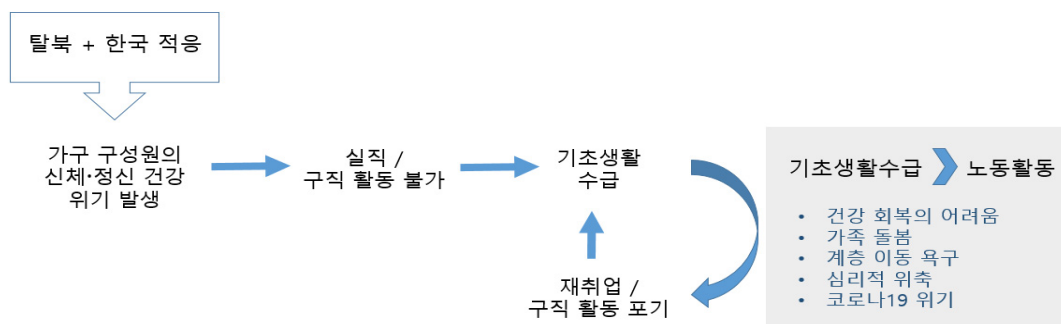
2) 심층면접에서 제기된 내용

(1) 자립 기회 축소의 문제

① 구직활동 시도의 어려움

심층면접에 참여한 제보자들 대다수는 생활보호 대상이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고 있거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위태로운 노동시장에 함부로 뛰어들었다가 기초수급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에 대해서 우려하며 구직활동에 나서기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의 악순환 구조



이들은 탈북 과정과 한국살이 적응 기간에 신체·정신건강에 위기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실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되면서 다시 구직활동을 시도하였으나, 다양한 이유로 근로활동보다 기초생활수급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롭다고 판단하여 재취업 및 구직활동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 제보자1 : 7년 전 허리디스크 질환으로 더 이상 육체적 노동이 어려운데 육체적 노무직 이외에 취업할 곳은 없음
- 제보자2 : 취업하여 6인 가족의 생활비와 어머니 요양원 비용을 감당할 자금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 지원금과 어머니 요양원 지원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롭다고 판단. 현재 주거지도 어머니 명의로 지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하기 곤란함
- 제보자3 : 신체적 문제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렵고, 코로나19 사태가 지연되면서 다양한 적응 교육을 놓치게 되면서 일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차라리 기초수급을 받는 것이 이롭다고 판단
- 제보자4 : 허리디스크 질병으로 노무직을 선택할 수 없는데, 최근 직업상담사로부터 현재 가능한 직업분야가 환경미화원이라고 들은 바 있어서 구직활동을 포기함

이들은 취업하여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기초생활수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롭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신체·정신적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다른 이유가 결합된 경우도 있었다. 제보자2의 경우는 여러 지원제도의 충돌 문제로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일이 어렵다고 호소하였으며, 최근 2018년에 한국에 입국한 한부모가정 제보자3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연되면서 적응 및 직업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안정된 일자리를 구했다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로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이 확인되거나 4대 보험이 확정되면 기초생활수급 지원이 바로 끊기는 상황이 너무 두렵다는 것이다. 안정된 일자리에 정착하기까지 여러 위기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초수급과 안정된 근로생활 사이의 중간단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② 중산층으로의 계층이동 불가능 전망

심층면접에서 만난 탈북민들은 대다수 한국사회 속 경제적 하층민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계층이동의 불가능성)이라고 자신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이러한 심리적 비관과 위축감이 자활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있다.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 제보자1 :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지원이 부족함
- 제보자4 : 컴퓨터활용능력 및 회계능력 자격증을 보유했음에도 사무직으로의 취업 불가능 호소
- 제보자5 : 탈북민들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전문직무로의 취업을 꿈꾸고 대학원이나 유학 등을 고민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이 난망하여 현재 휴학 중
- 제보자7 : 전문직으로 취업을 꿈꾸지만 현재 기초생활에만 지원이 집중되어 있어서 전문직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임. 현재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면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됨. 남한청년들도 취직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탈북민 대학생은 더욱 그러한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되는 문제는 심각

위의 제보자들은 남과 북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받은 대상들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무직이나 전문직으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불가능함을 인지하며 좌절감에 빠져 있다.

제보자1의 경우 현재 허리 질병으로 더 이상 노무직을 할 수 없어 사무직으로의 이직을 희망하였으나, 대학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에 도전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탈북민 대학교육 지원제도는 “입학 또는 편입학할 당시만 34세 이하인 자”(남북하나재단 2023)로 연령 조건이 있어서 한국에 입국할 당시부터 대학교 진학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제보자4의 경우는 대학교육을 받았고 각종 직업능력을 갖춘 상태로 자녀를 홀로 키우면서 직장생활이 가능한 사무직으로 취업을 꿈꿔왔다. 그러나 2020년 직업상담사로부터 현재 가능한 진로 영역이 ‘환경미화원’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듣고 구직활동을 포기하였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정의 양육 공백 문제와 더불어 허리 질병으로 노무직 근로가 어렵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개발 기회가 한정적이라는 점에 비관하고 있다.

제보자5와 7은 모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다. 이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고민에 빠져 현재 휴학 중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들도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탈북민인 우리들은 더 어렵지 않겠느냐는 호소와 함께, 대학에 진학하면서 전문직무로 취업하여 탈북민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꿈꿔왔는데 현재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낙담하였다. 그리고 현재 탈북민 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이나 대학등록금에 한정되어 있다면서, 전문직무로의 취업을 위한 부가적인 교육비나 유학비 등이 지원되지 않는 문제를 아쉬워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탈북민 위기가구의 문제 상황이나 탈북민 인권문제, 특히

탈북민에 대한 차별 문제에서 극복 방안은 탈북민들이 중산층으로의 진입이 활발해지고 전문직무 소속들이 많아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제도 범위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탈북민들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하게 살고 싶은 희망을 안고 한국입국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취업 기회 확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였다.

정부는 탈북민 대상 기초 및 심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영역의 경우 1인당 200만 원 한도의 교육과정에 대한 바우처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탈북민의 선호도와 취업률을 고려하여 총 7개의 심화 직업 훈련과정을 운영한다. 그리고 ‘전문직 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기술 및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한다. 그 결과 2022년에는 의사 2명,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보고된다(통일부 2023, 141).

그럼에도 탈북민들이 사무직이나 전문직무로의 진출에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은 직업 현장에서의 현실적 문제들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탈북민 고용 촉진을 위하여 탈북민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 중에도 탈북민을 적극 채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남한 출신들도 풀기 어려운 취업난에 더욱 낙담하고 있고, 그래서 더 적실한 지원들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 경제적 자립·자활 관련 요구 사항

- ‘기초생활수급 - 안정된 일자리 확보’ 중간단계에 대한 보조적 지원이 필요
- 고등교육 기회 확대(연령제한 완화), 진로적성개발 및 전문직무 취업을 위한 추가 지원 필요
- 탈북민에게도 허용되는 사무직 일자리 확대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2)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문제

① 신체적 질환 문제

제보자들은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었는데, 실직하거나 구직활동이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가 신체적 질환 때문이었다.

- 제보자1 : 본인의 허리디스크 질병, 아내의 하반신 마비 장애
- 제보자2 : 팔 관절 장애
- 제보자4 : 허리디스크 질병
- 제보자6 : 자궁적출 수술

이들의 신체적 질환은 탈북 과정이나 북에서의 건강관리가 문제가 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었다. 제보자 1의 배우자와 4는 탈북 과정에서 허리디스크 질병을 앓게 되었고, 제보자 2, 6은 북에서의 건강관리가 미흡하여 질병을 키워온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제보자 1의 경우는 노무직 근로생활에서 허리 질병을 앓게 되었다.

현재 탈북민들이 한국에 입국하면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 탈북민 건강관리 지원을 받게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치료가 어려운 상황들이 보고되고 있다. 취약·위기가구의 문제에서 신체적 질환은 근본적 원인이면서도, 또다시 그 신체적 질환 때문에 자립·자활의 기회가 축소되는 등 악순환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② 정신건강 문제

제보자들은 탈북과 한국살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였다.

- 제보자1 : 아내와 자녀의 탈북 트라우마 호소
- 제보자2 : 한국 입국 초기 탈북 트라우마로 방황
- 제보자6 : 국적이 바뀌는 문제에 대한 혼란, 탈북 트라우마 호소. 자녀의 인신 매매 피해에 대한 문제 호소
- 제보자8 : 탈북 시도 중 부모와 마지막으로 만난 장면을 잊지 못하며, 불안과 공포, 환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 경험

제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경험이 있으며, 우울증 및 불안증세를 진단받았다. 취약·위기가구의 문제 상황 속에서 정신건강 악화는 자활의 의지를 감소시키는 중요 요인이기도 하였다.

또한 제보자들은 탈북민 중 많은 수가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 제보자1 : 아내 역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이상이 있었으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함. 주변 지인의 남성들의 알코올 중독 문제 심각
- 제보자3 : 하나원에서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아들이 앞길에 장애가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됨
- 제보자7 : 북한 출신 남성들이 특히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을 마시면 욕을 하거나 싸움을 벌이는 사고가 많이 발생. 이것은 북에서부터 익숙해진 습관 때문

여성들은 우울증, 남성들은 알코올 중독 문제가 만연하다고 말하며, 정신건강 문제가 폭력 등 또 다른 사고로 확장되는 심각성을 말해주었다.

자살시도의 위험 역시 증언하였다.

- 제보자1 : 우울증 아내의 반복된 자살시도, 본인의 자살시도
- 제보자4 : 나홀로양육의 고충으로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음
- 제보자7 : 경제적 파산 위기에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 자살시도

제보자1, 4, 7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자살시도 위기를 고백했다. 대체로 자살시도는 사회적 고립 문제가 직결되어 있었으며, 위기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다는 데에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③ 범죄 노출 위험 및 치안 문제

제보자들은 탈북민들이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특히 여성이나 1인 가구의 경우는 ‘치안’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하였다.

- 제보자2 : 탈북민을 노리는 사기 피해가 많고, 사기와 폭력 피해 때문에 필리핀 출신 아내의 구직활동도 어려움
- 제보자4 :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음. 검찰이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라고 하니 두려워서 600만 원을 입금하고 나서 나중에 사기인 것을 깨달음. 당시 크게 좌절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음

한국사회는 탈북민을 노리는 사기 범죄가 많다고 호소했고, 주변 지인이나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경우가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들은 이러한 피해를 탈북민들이 한국 물정을 잘 몰라 벌어진 일로 해석했다.

- 제보자3 : 한국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므로, 두려움이 커서 쉽게 외출하지 못함
- 제보자4 : 자신과 딸에 대한 치안 문제 걱정
- 제보자7 : 1인 가구 여성의 치안 문제 지적
- 제보자8 : 성폭력 위협에 시달리며, 치안 문제 호소

위와 같이 제보자 가운데 여성들은 치안 문제를 걱정했다.

무서워가지고 cctv를 달아야 하나 지금 생각 중이에요. (연구자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자, 경찰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며 신고하기 어렵다고 토로) (조사자 : 탈북민 보호 경찰에게 말해야죠.) 저도 (보호 경찰과) 친하게 지내는데 더 막 너무 그래도 피곤하죠. 한 분이, 저뿐만이 아닌데, 그런 걸 도움받고 싶진 않아요. 막 이런 그런. 뭐 내가 법에 대해서 이런 거는 물어볼 수 있는데 내가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하면 그분도 피곤하다고 그래가지고.

제보자8의 경우는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들어, 성추행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음을 토로했다. 탈북민들에게 지원되는 주거지의 경우 치안과 방범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고, 당시 2019년 경찰에 신고했어도 증거가 있지 않아 조치를 취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다. 담당 경찰관에도 이런 일까지 부탁하기 미안하다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러한 1인 가구 여성의 고충은 제보자7도 호소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무연고 탈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 지원은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기지표 고위험군에 대한 안부확인 및 필요지원이 운영되어 성인 여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탈북여성들은 여성들만 사는 주거지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요구 사항

- 신체적 상해를 입은 탈북민이 구직할 수 있는 직업 확대
- 탈북민 대상 정신건강 지원 기간의 확대
- 무연고 탈북민에 대한 치안 문제 보완

(3) 정보 접근성 문제

① 법률 지식에 취약한 문제 호소

탈북민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였던 문제는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는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 제보자1 : 자녀가 폭행 피해자가 되면서 법률에 대한 지식정보의 취약성 절감. 지인이 대한민국의 성폭력 법률에 익숙하지 않아서 가해자가 된 문제 지적. 음주운전, 폭행 사건 등 북한과 다른 법률에 대한 교육이 필요
- 제보자7 : 탈북민은 음주와 폭력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해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위기가 많음. 북한의 법률과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음

조사자가 탈북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였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탈북민들이 생활정보 및 법률 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제보자들은 자신 혹은 주변에서 겪은 피해 상황을 호소하며, 탈북민들은 특히 여러 범죄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에 대한 교육이 하나원에서부터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보자1은 자신의 자녀가 최근 폭력 사건에 휘말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소송까지 걸린 상황을 이야기하며, 가해자가 비싼 변호사를 써서 일을 무마하려고 한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 놓았다. 한국사회는 “유전무죄”라며 좌절감을 표현하였고, 이 일을 겪고 법률 지식을 공부해야 할 필요성에 절감했다고 했다.

그리고 탈북민들이 법률 지식에 취약한 문제를 지적하며, 주변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했다.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우리 방화동에 있을 때도 내 아는 동생이가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냐면 ... 아마 한국 남자들이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좀 치고 받고 했겠죠. 근데 경찰서에 갔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야가 선입견이야. 남한 사람이니까 봐주고 북한 사람이니까 안 봐준다. 스스로, 스스로. 이런 걸 다 이렇게 상담해 주는 창구가 있었어야 돼. (조사자 : 있기는 있는데) 그때로서는 없었죠. 그때 지금도 없었고 (조사자 : 몇 년도였는데요, 그때가?) 20, 2010년도인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담당 형사 안 도와줘요. 요새 담당 형사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걸린대요. 자기네도 걸린 데요. 내가 잘한 일이면 경찰이 나서서 조금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데, 내가 잘못된 일이잖아요. (손을 가로저으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기가 관리하는 데에서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한 지인이 폭행 사건에 휘말렸는데 끝내 자살을 선택하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제보자는 지인의 비극적 선택을 두고 법률 지식 부족과 차별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해석하였다. 결국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생긴 일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일들을 상세하게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면, 법률상담 서비스 제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사한 사례로, 제보자7의 경우, 탈북민 남성들이 대다수 북에서부터의 관습으로 쉽게 폭행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북에서는 술에 취해 다투는 일은 일상적이고 그것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없으며, 북 출신 남성들이 한국사회의 법률 지식에 대한 무지로 자주 폭행 사건에 가해자가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하나원에서부터 이런 문제를 상세하게 교육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국의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민들을 위해 법무부와 협업하여 위촉 변호사제도 및 지원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탈북민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내실화(통일부 2023, 158)한다는 운영계획 또한 발표되었다.

그러나 탈북민들의 요구 사안은 사후적 조치에 앞서 다양한 사기나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한민국 법률과 법적 절차에 대한 알기 쉬운 안내¹⁵⁾ 등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법률 지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보자들은 ‘버스카드 충전 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탈북민 대상 법률 교육이 하나원에서부터 상세하게 이뤄져

15) 알기 쉬운 법률 안내 조치 역시 이미 실행되고 있다. 통일부에서는 2020년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남북한 생활법률』 교재 발간, 2021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 법률 만화』 발간했다. 그러나 심층면접에 참여한 제보자들은 모두 이 안내서를 접해 본 경험이 없었다.

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탈북민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사건에 휘말릴 위험이 높으니 이러한 문제를 자문받을 수 있는 상담서비스가 잘 운영되기를 바랐다.

② 복지제도에 대한 문해력 문제 및 복지지원서비스 불만족 호소

제보자 중 다수가 대한민국의 행정제도 및 복지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호소하였다. 특히 각종 제도를 안내하는 문건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문해력 문제를 호소하였고, 이를 안내하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해서도 지적하기도 했다. 행정제도의 복잡성과 난해함에 곤란을 겪고 있으나, 어디에도 속 편하게 물어볼 곳이 없다는 이야기였다.

- 제보자2 : 최근 전세 사기가 너무 많아서 SH 주거 지원제도를 포기했음. 유튜브에 가짜 정보가 많아서 혼란스러움. 해당 직원이 상세하고 따뜻하게 답변해주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물어보라고만 함. 각종 지원제도가 충돌하여 어느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어, 현재의 지원 상황을 유지하는 데에만 집중. 최근 신설되는 지원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있지 않음
- 제보자3 : 각종 제도에 대한 문해력이 떨어져 잘 알아보기 어렵고, 상세하게 물어보기도 부끄러움. 해당 직원은 질문에만 답함. 코로나19 사태에 한국에 입국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짐. 자녀 학교의 알림 공지를 알아보기 어려움. 유튜브의 가짜 뉴스 때문에 혼란스러움
- 제보자4 : 주변 지인들 가운데 인터넷 활용 능력이 취약해서 각종 지원제도를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하나를 신청할 때에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음
- 제보자7 : 2010년대 후반 당시 ○○대학교 진학으로 주거지원을 받았는데, 다른 캠퍼스 지역으로 배정되어 통학 시간만 3시간 이상 걸림. 문제를 호소하였으나 “입맛에 맞는 주거에 살고 싶으면 직접 돈을 주고 집을 사라”는 답변을 들었고, ‘○○으로 문의하라’는 대응에 지침. 무엇이 탈북민지원 제도이고, 무엇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인지 구별하기 어려움

이들은 대한민국 현행 행정제도와 복지제도가 ‘너무 어려운 말로’ 작성되어 있고, 각종 서비스 신청 시 인터넷 활용이 난해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이에 대해서 질문하고 쉬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도 해당 질문에 대한 단편적인 답변이나 또 다른 기관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라고 말했다.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특히 제보자7의 경우, 진학할 대학과 가까운 곳에 주거지원을 받고 싶었으나 행정상의 오류로 통학 시간만 3시간 이상 걸리는 원거리에 배정받게 된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이때 제보자는 담당자로부터 “입맛에 맞는 주거에 살고 싶으면 직접 돈을 주고 집을 사라”는 냉정한 답변을 듣게 되어 상처받았고, 관련 기관들로부터 냉담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부터는 자신의 위기상황을 호소하는 일에 비참한 기분이 들어 지원기관에 문의하는 일을 가급적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제보자들은 주변 지인과 뉴스 등을 통해 탈북민의 사기 사건 피해가 만연하다고 알고 있으며, 코로나19 지원이나 생계비 지원에 관해 최근 유튜브 등에서 가짜 뉴스가 넘치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제보자들은 각종 지원제도 및 행정제도에 대해 단편적인 답변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안내해주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가령, 특정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면 구비서류의 종류에서부터 발급처 및 발급기준과 발급기한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대상별 상황에 따라 각종 지원제도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근 각종 지원제도 신청 시 인터넷 경로만 가능한 경우가 많아져, 이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민의 경우는 지원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관련 직원의 섬세하고도 친절한 안내가 절실하다고 호소하였다.

③ 성인지감수성 문제 호소

심층면접 제보자들 중 다수는 현재 한국사회의 성인지감수성에 관해 탈북민들이 여러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 제보자1 : 지인이 대한민국의 성폭력 법률에 익숙하지 않아서 가해자가 된 문제 지적, 대한민국의 성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움. 북한 출신 남성들이 한국의 성/젠더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여성과 이별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경제적 문제)
- 제보자6 : 북한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없었고, 생활 속에 성폭력이 난무했음. 북한 출신 남성들이 폭력적이고, 성평등에 대해 무지하여 벌어지는 문제가 많음
- 제보자7 : 북한 출신 남성들의 피임법과 성문화의 문제점 지적. 특히 데이트폭력 문제 지적(북한 출신 남성들은 구애 행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음)

제보자1과 7은 대한민국 성폭력 법률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토로하였고, 2018년 이후 급변한 사회적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제보자6과 7은 남한과 북한의 성인지감수성과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 이로 인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피임방법, 데이트폭력과 같은 세밀한 사안에 대해 무지한 탈북민들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렇게 제보자들은 탈북민들이 북한과 다른 법률과 사회적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성평등교육과 성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정보 접근성 관련 요구 사항

- 지원제도 및 행정제도의 통합적 안내 서비스 보완
- 탈북민 대상 생활법률교육 및 상담 서비스 강화
- 탈북민 대상 성인지감수성 및 성교육 강화

(3) 차별·무시 피해 경험

① 생활 속 차별·무시 피해 경험

제보자들은 탈북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과 무시의 피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근로현장, 교육현장 및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탈북민에 대한 차별이 있으며, 이념이나 체제 차이가 아닌, 경제적 난민으로 취급되는 차별 문제를 호소하였다.

- 제보자1 : 지인 가운데 차별 경험으로 피해의식이 커서, 법률상 차별받았다는 상처로 자살한 경우가 있음
- 제보자2 : 탈북과 '다문화'라는 요인이 결합되어서 차별을 겪는 일이 잦음. 아내는 필리핀 출신 여성으로 2008년 당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폭력 피해 경험, 다시는 한글 교육을 받기 어려워짐. 자신은 최근까지도 아르바이트 사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함, 자신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하여 임금을 볼모로 삼고 협박과 폭행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 제보자3 : 자녀가 차별 받을까봐, 한동안 자신(어머니)과 대화하지 못하게 하면서까지 억양을 교정해주려고 했음
- 제보자4 : 학교 친구 부모로부터 탈북자녀와 같이 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 분리 조치를 요구함
- 제보자7 : 일상적인 남녀관계에서도 탈북민이라는 사실이 노출되면, 상대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짐. “우리 세금으로 성형수술했느냐”는 모욕적인 말도 들어본 적 있음
- 제보자8 : 웬만하면 탈북민이라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음

제보자2는 탈북과 다문화가정이라는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이중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과 아내가 폭력과 무시를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3, 4는 탈북민 자녀가 경험하는 차별과 무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에 탈북민들은 언어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단서가 억양과 활용 어휘에 있다며, 이를 교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제보자7은 대부분의 행정 절차에서 탈북민 확인서를 발급해 오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 자체가 자신에게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기초수급자 지위도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북한이탈주민증을 떼오라고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프린터를 살 수도 없고, 인쇄하는 데에 가서 프린트하면, 안 그래도 기초수급자인 것도 창피한데, 탈북민이라고 하면 (인쇄업체 직원들이 서류 보고) 놀래요. 저를 한 번 더 쳐다보고, “북한사람이에요?” 이러기도 하고. ... 탈북민이라는 이 기록 자체를 없애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중에 취업하고 세금 내고 더 이상 지원받지 않으면, 제 자유껏 탈북민 신분을 지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인간의 자유 아닌가요?

제보자7의 경우는 자신들은 탈북민임을 모르게 하고 싶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차별·무시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늘 ‘탈북’이라는 꼬리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서 제보자5 역시 유사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차별·무시 피해에 대한 탈북민들의 바람은 대체로 한국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다. 차별과 무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보다, 탈북민 정체성을 노출하지 않는 방식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이다. 제보자들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탈북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다수의 방안들에 대해 크게 신뢰하

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 차별·무시 경험 관련 요구 사항

- 탈북민을 위한 언어교육 강화
- 탈북민 신분 노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방안 필요(불필요한 행정절차에서 탈북민 신분 노출을 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 사회적 소외 문제

① 인간관계 고립 문제

제보자들은 취약·위기가구의 문제들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 중 사회적 고립을 핵심적 원인으로 꼽았다. 북한은 집단생활에 익숙한 데 반해, 남한은 개별적인 생활환경이라 탈북민은 고립되기 쉽다고 말했다.

- 제보자1 : 아내의 우울증 원인은 인간관계 고립에 있었음. 탈북민이 별로 없는 지역으로 이사한 후 아내의 정신건강이 심각해졌고, 이를 위해 이사 전 지역으로 계속 오고 가는 어려움 발생. 아내 사망 후에도 주변 이웃들이 아내의 소식을 알지 못해 자신 또한 고립감을 느낌. 주변에도 외로움 때문에 고생하는 지인들이 많음
- 제보자3 : 코로나19 사태로 고립된 환경에서 적응기간을 보내다 보니, 적응 지체 현상이 일어남
- 제보자7 : 정말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도와줄 가족이 없다는 것이 체감되었고, 잘못하면 위험한 행동(자살 등)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함. 코로나19 시기의 경제적 어려움과 데이트폭력 등으로 위기감이 들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음. 치안 문제 지적

제보자들은 북한에서 대가족 단위, 마을 단위의 인간관계에 익숙한 탈북민들이 남한사회의 핵가족화 문화에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지연으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탈북민의 사회적 활동을 도모해주는 ‘복지관’ 역할의 중요성 강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조하거나 1인 가구 주거환경에 치안 강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보자4의 경우는 남한주민과의 접촉 기회가 많으면서 소외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녀의 교육 방안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며, 남한주민과의 접촉 기회가 적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제보자7도 한국입국 초기부터 남한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야 적응도 빠르고 문화관습도 익힐 수 있다며, 너무 탈북민들끼리 어울리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② 적응스트레스로 가족관계 불화 발생

제보자들 가운데, 탈북과 한국살이 적응 피로가 누적되면서 원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야기한 바 있다.

- 제보자1 : 여러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자녀와 연락을 끊고 살게 됨
- 제보자3 : 자녀의 적응을 위해 기숙사 학교에 보내게 되니, 세세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제보자4 : 한국살이 적응과 자녀 양육이 너무 고되어, 과거에는 자녀를 밀어내거나 매를 드는 일이 잦았다고 함
- 제보자5 : 10년을 떨어져 살다가 어머니의 도움으로 탈북하게 되어 이제 함께 살게 되었는데, 10년간의 공백이 느껴져 서먹한 관계가 되었음.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 탈북한 자녀들이 대부분 같은 입장임

이들은 공통적으로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경험했다고 말하며, 결국에는 함께 살 수 없는 결말로 이어진다고 했다. 원가족이 함께 잘 살고 싶어서 선택한 탈북이 오히려 가족관계 와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가족관계 갈등 문제는 중국에 자녀를 둔 탈북여성들의 원거리양육 상황에도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탈북과 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가족관계 갈등 문제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어 온 사안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도 마련된 바 있다. 탈북민 가족관계에서의 소통을 주제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심층면접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알고 있지 않았으며, 탈북민들의 기본적 인식이나 생활 상의 여건 등으로 쉽게 이러한 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소외 관련 요구 사항

- 동사무소·복지관 등에서 주관하는 탈북민 행사의 중요성 강조
- 남한주민과의 접촉, 소통 기회 확대 요구
- 무연고 탈북민 대상 사회적 소통 경로 확보

(5) 여성인권 문제

① 홀로 자녀를 키우는 탈북여성들의 고통과 탈북자녀들의 갈등

앞서 4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보자4가 경험한 한부모가정의 양육 고충을 비롯한 여러 문제는 탈북여성들이 겪는 고통을 대변하기도 한다. 최근 탈북민 가운데 여성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이나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한국에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자녀의 적응 문제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고, 자녀가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도 북 혹은 중국 자녀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보자4의 경우는 인신매매 피해로 임신하게 되고 자녀를 한국에 도착해 출산한 경우로, 임신과 출산, 양육까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심각한 사례였다. 더불어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 탈북민 자녀 혜택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의 전형에 해당된다. 과거에는 북 출신 자녀들만 지원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에는 제3국 출생까지 지원이 되었으며, 제보자의 따르면 현재는 한국 국적 자녀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탈북민 자녀 대상 고등교육 지원에서는 역시 제외된다. 2002년부터 시작된 학비 지원이나 대학 입시 정원 내 특별전형 지원제도에서도 역시 제외 대상이다.¹⁶⁾

홀로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탈북여성들의 고충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은 자신이 구직을 할 경우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문제이다. 제보자4 역시 그 문제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이다.

- 제보자3 : 한국입국 후 첫 명절에 아르바이트를 다니다가, 퇴근 후 어린 아들이 방에 불도 켜지 않고 있는 것을 본 후로 더욱 구직활동이 어려워짐. 그때 아

16) 2024학년도부터는 제3국 출생 자녀까지 포함되었다.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르바이트했다가 기초수급비를 환수하는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커짐

제보자3의 경우는 자신이 왜 구직활동을 포기했는지 구체적인 사연을 말해주었다. 제보자가 단기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엄마 없는 집에서 밤늦도록 불도 켜지 않고 웅크려 앉아 있었던 아들이 모습을 보고 제보자는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생활수급비를 환수하게 되면서, “몇 푼 벌자고 아이를 방치했다”고 후회하였고 이후로는 구직 자체를 포기했다고 말한다.

- 제보자1 : 자녀가 탈북 과정에서 충격을 받고, 엄마의 신체적 장애와 우울증을 지켜보며 ADHD 진단을 받게 되며 학업을 중단
- 제보자5 : 먼저 한국으로 입국한 엄마의 도움으로 탈북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10년의 공백이 컸음. 엄마와 소통하고 가깝게 지내는 일이 쉽지 않았으며, 서로의 생각이 많이 달라 갈등이 잦았음. 현재는 엄마와 따로 살고 있음.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에 데려온 탈북민 자녀들은 비슷한 생각을 할 것으로 추정

제보자1은 부모와 자녀의 탈북 트라우마가 중첩되면서 자녀에게 발생한 정신건강 문제를 이야기해주었다. 그리고 제보자5는 자녀 입장에서 증언해준 참여자였다. 그는 한국으로 데려와 준 엄마가 고맙기도 하지만, 한국살이 적응이 만만치 않고 엄마와 소통하기 어려워 고생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엄마를 선택했다”는 발언을 하면서, 친척과 친구, 이웃 등을 다 버리고 탈북해 와서 한국에 오자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했다. 이것이 부모님들에 의해 탈북했던 자녀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 가운데 하나이다.

제3국 출생 자녀들을 돌보는 탈북여성들의 고충도 크다. 홀로 양육을 책임지는 문제와 더불어, 자녀의 언어문제도 곤란하며, 한국에 들어와 갑자기 탈북민도, 한국사람도, 중국인도 아닌 모호한 정체성 혼란이 시달리고 자녀가 원하지 않은 해외 이주로 엄마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갈등이 불거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리고 제보자6의 경우는 원거리양육의 실체를 증언해주었다.

- 제보자6 : 딸이 중국자녀를 원거리양육을 하고 있고, 중국자녀에게 계속 돈을 보내주고 있어서 딸은 가진 돈이 없음. 그럼에도 중국자녀는 떠난 엄마를 원망하여, 딸의 모자관계에서 다툼이 많음. 조부모로서 옆에서 지켜보기 괴로움. 이 일을 누구를 탓하느냐고 한탄

제보자6는 엄마로서 딸의 원거리양육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 내밀한 사정을 말해주었다. 중국에 두고 온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움은 경제적 곤란뿐만 아니라, 적실한 보호와 훈육이 불가능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원거리양육에 헌신하였으나 엄마에 대한 자녀의 원망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홀로양육을 책임지는 탈북여성들의 고충은 경제적 문제, 자녀 교육에 관한 지식정보 부족의 문제, 어머니와 자녀 간의 심리적 갈등 등으로 꼽아볼 수 있다. 특히 탈북여성들은 과거의 전통적 모성관에 충실한 성향이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을 포기할 수 없으며, ‘여자가 아이 하나를 잘 못 키우나’라는 억압적 젠더관으로 양육 공백을 자기 탓으로 여기는 괴로움에 휩싸이기도 한다. 또한 탈북여성 입장에서는 나홀로양육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지만 적응 지체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자기개발의 길이 막히기도 하는 여성인권 침해 문제가 공존해 있다.

② 성폭력 트라우마

여성제보자들은 북에서의 성폭력 문제, 탈북 과정에서 성폭력과 인신매매 피해, 남한에서의 성폭력 피해 등에 대해서 토로하였다.

- 제보자4 : 인신매매와 원하지 않은 임신, 자녀에게도 전이도 성폭력 트라우마
- 제보자6 : 북에서는 성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음. 권력과 결합된 문제로 지적. 이에 익숙한 북한남성들의 폭력성이 있음
- 제보자7 : 성폭력을 목인하는 북한의 성문화 지적. 탈북여성 가운데 성폭력 트라우마 증세를 보이는 여성이 많음
- 제보자8 : 북에서는 어린 여성들이 성매매시장에 노출되는 위험이 많고 탈북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가 있음. 자신은 현재 남한에서 성추행 위험에 노출

제보자4의 경우는 인신매매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였는데, 당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임신중단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고충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탈북민 집단 내에서는 과거 전통적 젠더관에 따라 당연히 제보자4가 출산하고 아이를 홀로 키워내야 한다는 주변의 시선이 있어서 억압적이었다고 고백했다. 인신매매로 인한 임신이어도 ‘어머니’의 역할을 놓지 못하는 문제는 제3국 자녀를 둔 다수 탈북여성들의 공통된 문제이다.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 경험의 제보자들은 대다수 성폭력과 여타 범죄에 대한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는 ‘성폭력 그림자 가설’(Warr 1984)로 기왕의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는 사안이며, 탈북여성 성폭력 경험과 한국사회 문화수용의 상호작용에 의해 성폭력 두려움이 더욱 증대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이규범 2023). 심층면접에서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자녀들에게도 전이되는 문제를 발견하기도 했다.

또한 탈북여성들은 북한은 성폭력이 만연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한 문화에 익숙한 북한 출신 남성들이 폭력적이라는 발언이 나타났고, 북에서나 탈북 과정에서는 자신이 당한 일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가 남한에 와서 과거 성폭력 피해를 ‘재인지’ 하기도 한다고 말하며 그것이 더 혼란스럽다는 정신적 고통도 토로하였다. 또 제보자7의 경우는 북에서나 탈북 과정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탈북여성들에게는 성폭력 트라우마 증세나 발견된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③ 탈북여성에 대한 2차 피해, 선입견과 차별 문제

탈북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를 비난하는 따가운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 제보자6 : 남한여성이 북한여성들은 정조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일화 소개. 고난의 행군 시기의 극빈과 기아의 고통을 호소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가족을 살리려던 여성들을 상처를 주는 선입견에 대해 지적
- 제보자7 : 탈북여성이라고 하면 ‘손이 땀다’는 등의 편견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음. 미디어에 계속 그런 이야기들만 공개되니까, 해당되지 않은 탈북여성들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음. 이럴수록 탈북민이라는 꼬리표를 없애고 싶음

제보자6과 7은 탈북여성들에 대한 정보가 한국사회에 노출되면서 일어나는 2차 피해 문제를 지적했다. 생존을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피해를 감수한 일이 정조를 쉽게 저버린 일로 비난받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특히 제보자6은 북한에서의 삶에서 가족 구성원이 기아에 고통받았던 기억과 함께, 생존을 위해 딸을 인신매매의 현장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고통을 함께 이야기했다. 또한 왜곡되고 낡은 관념으로 탈북여성들을 비난하는 현상에 고통스러워하며 사람의 목숨보다 정조가 더 중시되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는 가해자 중심 문화의 문제점과 2차 피해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있는 인권 피해에 관한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 여성인권 관련 요구 사항

-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 탈북민 대상 성인지감수성 교육 및 성교육 강화
- 탈북여성들의 성폭력 트라우마에 대한 조치 필요
- 탈북여성을 향한 차별과 선입견 방어 조치 필요(2차 피해 방지 조치)
- 한부모가정의 양육 공백 문제에 대한 조치 필요
- 자녀교육에 대한 도움 필요

2.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1) 탈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개선

(1) 전생애 관점의 탈북 트라우마 관리의 필요성

탈북민들의 정신건강을 연구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탈북민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아픔을 탈북 과정에서 경험한 충격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보았으며, 이후에는 복합적 외상후스트레스장애(C-PTSD)로 보는 관점도 제기되어 정신병리학 관점으로 접근했었다. 그런데 탈북 트라우마 개념이 정의되면서 북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굶주림과 폐쇄적인 북 체제의 통제와 억압에서 기인한 외상을 포함(김종균·정진아 2012)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김씨 일가의 조건반사적인 통치행태(공개처형을 비롯한 집단수용, 연좌제,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로 일관된 ‘감옥’화 된 체제적 재앙)로 공포와 불안이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증상으로 ‘북한체제트라우마(NKST)’(유혜란 2014)는 관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남한사회의 경계인으로서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김현경·전우택 2009; 정성미 2012) 혹은 국내 입국 후 정착 과정에서 겪게 되는 남한주민과의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김종균·정진아 2012) 등이 트라우마를 가중한다는 견해가 발표되었다. 더불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에서 남한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 낙인, 적과의 동침 상황, 끝나지 않는 빈곤, 용서불가, 그리고 자살의도 등과 같은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 경험(성정현 2014)의 중요성도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탈북 트라우마는 “북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고난과 폐쇄적인 북 체제의 통제와 억압에서 기인되는 외상,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의 유랑과정에서 겪은 모멸과 공포, 국내 입국 후 정착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김종균·정진아, 2012).

이처럼 탈북 트라우마는 충격적인 외상 한 장면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반복·재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고충을 심화시키는 심리적 요인들을 추적할 수 있다. 특히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의 문제를 가중시키는 인권침해의 여러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전생애를 통찰하는 방식의 트라우마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이들을 구별 짓고 낙인찍는 “차별적 시선과 배제의 문화 속에서는 정치적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능력·외모·인지능력 등 수 많은 배제와 차별의 선”(조정아 외 2014)들이 존재한다. 한국사회 속에 무수하게 그어진

배제와 차별의 선상에서 탈북민들은 위축된 모습으로 그 경계에 서 있기 때문이다(김종균 외 2017).

그래서 탈북 트라우마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인 특징, 분단체제에 대한 이해가 종합적으로 적용되면서 그 속에 살아가는 개인의 살아온 이야기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증상을 넘어서, 현실문제에 고뇌하고 대응하는 주체를 중심에 두고 현상에서 한 단계 더 파고들어 사람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살펴보는 작업으로 탈북 트라우마 관리에 대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전생애 관점의 탈북 트라우마가 고려될 때 취약·위기가구의 근본적 원인 추적 및 자활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 탐색이 가능할 것이다.

(2) 증상과 유형에 따른 정신건강 서비스 개입의 필요성

현재까지 탈북 트라우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하나원과 하나센터에서 사회 적응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나원의 마음건강 지원은 탈북민의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신과 진료 및 개인 및 집단상담, 심리·정서안정 교육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하나원 수료 후에도 지역사회 의료기관 또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25개 지역사회의 하나센터 전문상담사와 연계, 남북하나재단과도 협력하고 있다. 2022년 마음건강센터의 3가지 중점 사업안에서 탈북민의 사회적 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여성 탈북민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살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보고듣고 말하기 2.0」 강사 양성 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마음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통일부 2023, 129-130). 탈북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제도가 점차 확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탈북 트라우마 개념을 전생애 관점으로 확장시켜 보면 이를 고려한 치유책 대안도 다시 고려해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의 치유 방안들이 탈북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들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문제(우종민 2014)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탈북민의 아픔은 현대 정신의학과 관련한 학문의 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이들의 실제적 문제는 정신병과적 아픔이 아닌 탈북과 적응의 삶 그 자체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전생애 걸친 삶의 서사에 주목한 치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박재인 2016)도 제기되었다.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그래서 탈북민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전생애 관점으로 트라우마를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의 ‘탈북민 맞춤형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 **탈북민들의 생애사를 고려하여 삶의 중요한 장면에서 경험했을 외상들을 종합하고, 각각 외상들에 대한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인 특징, 분단체제에 대한 이해와 탈북민들의 생애적 특성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상담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자문에 따르면, 심각한 트라우마 증상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의료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탈북민 정신건강 지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가에 의한 정밀한 진단이라고 했다. 그리고 증상과 유형에 따라 하나재단과 하나센터 소속 상담사가 주도하는 **심리적 지지를 위한 일반 상담과 전문가에 연계한 트라우마 전문 치료로의 이원화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탈북민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통해 증상과 유형에 따라 적실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변화하는 탈북민의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서비스의 변화도** 필요하다. 탈북민들은 각각에 따라 북한 이탈 동기, 북한 거주 당시 지위와 생애사적 맥락, 상이한 국내 입국 경로와 제3국 체류 당시 경험한 차별과 폭력으로 인해 각기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다(전연숙·강혜영 2010; 조영아 2009; 김소륜 2017). 그리고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극빈과 기아로 북에서 탈출한 1세대와, 먼저 탈북한 가족으로부터 탈출의 도움을 받은 2세대, 그리고 여러 이유로 국경을 넘은 3세대 탈북민들의 특성은 모두 다르다. 탈북 동인, 탈북 경로, 이주 후의 삶에 대한 욕망 등이 차이가 있어 각각의 생애 국면에서 경험한 외상의 차이도 나타난다(박재인 2023). 그러므로 탈북민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각각의 외상 경험들에 대한 지식정보를 데이터화하면서 그 유형에 맞는 탈북민 정신건강 서비스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국 5년 이상 탈북민들의 정기적 정신건강 진료 및 관리 지원에 대한 확충도** 요구된다. 본 연구팀이 만나본 탈북민들 가운데 취약·위기가구의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 대체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위기에 처해 있었다. 북-탈북-제3국-남한으로 이어지는 생애 속에서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고, 현재의 위기상황과 맞물리면서 일어나는 고통은 탈북민 보호기간 5년이 지난 후에도 발생한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 시스템에 더하여, 정기적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탈북 트라우마와 취약·위기가구 문제의 상관성 분석의 필요성

전생애 관점으로 탈북 트라우마를 살펴볼 때, 북에서 삶의 문제, 탈북 과정의 충격과 공포, 제3국에서의 고난 등의 과거 외상은 현재 남한에서 적응기간 동안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과 착종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상황은 대체로 ‘탈북 과정’에서 비롯한 신체·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면서 경제적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가구 구성원 모두에게 전이되는 파급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의 현실인식은 북-탈북-제3국-남한살이로 이어지는 헤어 나올 수 없는 문제로 기억되며, 심리적 문제가 자립과 자활의 의지를 꺾는 악순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숨을 걸고 감행한 탈북과 한국 입국이 결국 경제적 빈곤, 가족의 해체,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낙담과 좌절감, 무망감이며, 더불어 중산층으로 계층이동의 불가능성이나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경제적 난민으로서의 꼬리표 등도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폭력적인 차별 및 무시의 피해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했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2주 이상 우울한 감정이 지속된 경험이 있다고 답하거나, 심층면접 제보자들의 상당수가 ‘자살’을 고민했었다는 증언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

트라우마 치료에 의학적 권위자인 베셀 반 데어 콜크는 트라우마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대처능력 상실’을 꼽았다. 세로토닌 수치와 관련된 과학실험 결과와 자신이 만난 트라우마 환자들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트라우마는 몸과 마음을 재편하면서 삶의 갖가지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상실시킨다고 했다(베셀 반 데어 콜크 2020).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따르면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심리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취약·위기가구 문제상황에 있어 심리적인 요인의 심각성이 확인됨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에 속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탈북 트라우마와 취약·위기가구 문제의 상관성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상관성 분석 연구가 이뤄지면, **탈북민 위기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실한 대응방안 설계가 가능하며 동시에 트라우마 발견 즉시 위기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도 가능할 것**이다.

(4)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듣기의 윤리’를 실천하는 적극적 돌봄의 필요성

트라우마 치유의 전문가 주디스 허먼은 외상기억의 언어화와 외상에 대한 애도의 기능을 중시했다(주디스 허먼 2014). 그래서 상처의 경험을 기억하고,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상처에 대한 통찰을 다시 하면서, 그 상처가 자신 개인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안에 살아남은 자신이 피해받은 약자에서 외상을 이겨낸 생존자임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트라우마 치료법에 의하면, 외상에 대한 의식적 침투 작업과 외상과 자기 삶에 대해서 ‘주체적 말하기’의 반복으로, 외상기억을 포괄한 형태의 삶에 대한 의미를 다시 구성해내는 치료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 삶에 대한 주체적 말하기는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미래를 기획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극복의 가능성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적극적 행위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탈북민들의 ‘주체적 말하기’를 가능하게 하는 상담 전문가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탈북민들 생애와 남북분단 상황 및 한국사회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삶의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탈북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어려울뿐더러 일상의 여러 방면에서 이들의 ‘주체적 말하기’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서 만난 제보자들 역시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고 심리적 위축으로 적극적 도움 요청이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였고,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탈북민들이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탈북민들의 요청사항 가운데는 해당 지원 서비스가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심리적 위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망에 이른 탈북모자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안이 발견된다. 이들은 이혼 가정이자 한부모가정, 장애아동 가정이라는 여러 차원의 복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치밀한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장애아동 원스톱 지원 서비스,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완비되어 있었다.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있으나,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능동성이 발휘되지 못했던 상태였음**은 분명하고, 그 안에는 낙담과 절망감, 심리적 위축,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감 등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치유와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해서 이들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사회적 통로가 필요하다.

현재 하나원에서는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28시간) 프로그램 안에 ‘마음나눔, 마음돌봄’ 활동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소속의 탈북민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80명(심리 46명, 취업 34명)의 전문상담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된다(통일부 2023).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담의 시간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 참여한 제보자들은 탈북민 지원기관의 관계자들이나 담당 경찰관의 차가운 태도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들은 해당 업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의 고통과 심리적 문제를 수용하거나 여타 문제들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을 신설(2022.2)하여, 상시 직통 업무 전화를 개통하고 수요자 중심의 안전지원 관리체계로 발전(통일부 2023, 155)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항시적 소통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위기정보 공유를 통해 고위험군 상시 관리체계 구축하여, 최근 2년간 다수의 위기자표가 중첩되면서 장기간 포착되는 고위험군을 별도로 선별, 이들에 대한 안부확인 및 필요지원 연계 등 직접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 중이다(통일부 2023, 156).

이에 더하여 탈북민들에게는 자유롭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문제상황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는 듣기의 윤리(ethics of listening)로 사회치유적 의무 역할을 충족하기도 한다. 듣기의 윤리는 실증주의적 듣기를 넘어 그들의 고통을 오히려 들으려는 일로 실천될 수 있는데,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다양한 감정 표현으로 이들의 주체적 말하기에 응답하는 일을 말한다(박재인 2023).

듣기의 윤리를 실천하는 상담 서비스는 탈북민의 문제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그 안에 있는 고통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는 소통 창구이다. 구체적으로 **‘삶의 문제와 고통 호소 - 주체적 말하기를 통한 부정적 감정 소산 - 문제의 정리(객관화) - 맞춤형 지원제도 적용’의 과정을 통해서 취약·위기가구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털어놓는 방식으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탈북민은 부담 없이 자신의 상황을 자유롭게 털어놓고 부정적인 감정을 소산하는 효과를 획득하면서도, 상담사는 탈북민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문제상황을 정리하고 적절한 전문가 개입과 지원제도로 직접 연결시켜 주는 **‘적극적 돌봄 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이다.

(5) 남한주민 대상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

탈북민들 취약·위기가구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남한사회의 차별과 무시, 배제의 피해를 간과할 수 없다. 탈북 트라우마를 전생애관점으로 확장시킬 때 그 외상을 가중시키는 큰 요인이 남한사회의 차별과 무시, 배제일 것이다.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한 탈북민들에게 씌워진 ‘북’의 이미지들은 쉽게 벗어지지 않으며, 국내에 입국한 많은 탈북민은 이로 인한 차별과 소외감을 경험했고 경계와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북한’이라는 출신 배경은 우리 사회에 통합하여야 할 명분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차별과 무시를 야기하는 폭력적 근간이 되기도 한다.

본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이념적 경계심보다 자신들을 ‘경제적 난민’으로 보는 무시의 시선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심지어 취약·위기가구의 상황을 이용해 악행을 저지르는 남한주민들의 폭력과 박해 피해 경험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수가 남한사회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문제를 지적했으며 그것이 취약·위기가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신건강 질병의 요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자살충동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17%에 해당하는데, 차별과 무시를 그 원인으로 꼽은 경우가 10명(중복응답)이어서 탈북민의 인권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탈북민들의 좌절감도 큰 문제다. 설문조사 결과 차별과 무시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도움을 청할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43%가 “없다”, 26%가 “잘 모르겠다”로 답변하였으며, “없다”의 답변 비율 중 거주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8%,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42%,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24%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일수록 더욱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며, 차별과 무시의 피해로부터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사회적 고립을 넘어 탈북민을 향한 물리적 폭력까지 보고되고 탈북여성들을 향한 2차 피해 상황까지 고려하면 현재 남한사회의 ‘시민성 교육’에 탈북민 인권 피해의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다.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하지만 탈북민들에 대한 남한사회의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에 대한 시민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교육시설 및 직장과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인권교육 및 통일교육에서 탈북민 인권상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기본교재) 2023 통일문제 이해』에 보면 현재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탈북민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보다 탈북민 인권문제에 대한 교육내용이 현저하게 적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탈북민은 경제적 적응 못지않게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두려움, 남한 주민의 편견과 차별의식 등으로 힘겨워하고 있다.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은 향후 남북 사회통합과 관련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통일은 남북 제도통합의 과정인 동시에 남북 주민이 부정적 선입관, 편견, 차별의식 등을 극복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공존하는 사회통합 과정이기도 하다”(200-201)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북민에 대한 차별의식 및 무시의 선입견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는 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남북사회통합의 목적성을 넘어 ‘인권 침해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시민성 교육’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탈북민이 다니는 교육기관 및 탈북민을 고용한 직장 내 인권교육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준칙에 있어 탈북민 관련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직장생활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의 안정성과 행복감이 증진될 때 탈북민의 자활 의지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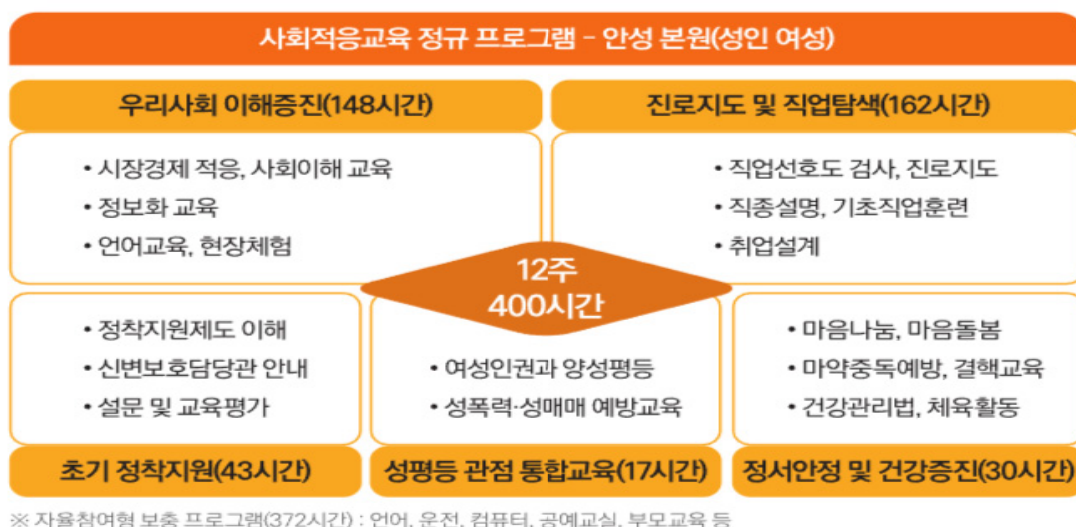
2) 탈북 여성인권상황 개선

(1) 자기결정권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의 필요성

이 연구조사에 참여해준 제보자들은 남한과 북한의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북에서의 관습에 익숙한 탈북민들이 성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성평등의 인식 또한 차이가 있고,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다수의 장면에서 불편함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에서도 성인지감수성의 차이 문제에서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보고 된 바 있으며(권금상 2021; 박재인 2021), 정부에서도 한국입국 초기 교육에 ‘성평등 관점 통합교육(17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그림 5-1> 『2023 통일백서』



하나원에서 실행하는 사회적응교육 400시간 가운데 성평등 관점의 통합교육은 17시간에 불과하다. 탈북민들의 제보에 따라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사고의 연루되거나 피해당한 경험이 다수 보고되는 상황에 비하여 관련 교육이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화천 분소에서는 ‘폭력예방 프로그램’ 등 남성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본 보고서의 조사결과와 같이 탈북남성들이 쉽게 폭력 및 성폭력 사건에 가해자로 휘말릴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집중적 관리가 하나원 전체와 하나센터에서도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하나원에서 부분적으로 이러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보호기간 5년 이상 탈북민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취약·위기가구의 상황에 놓인 경우 직장이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급변한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실제 삶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 입국 5년 이상 탈북민들에 대한 교육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제보자들 가운데는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탈북민들이 데이트폭력이나 피임 문제에 둔감하다고 증언한 바 있어서, **실생활에 가까운 성인지감수성 및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성인지감수성에 관해 북 출신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빨리 적응하는 편이기도 하여(박재인 2021), 탈북민들 사이의 연인, 부부관계에서도 빈번한 갈등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탈북민들이 억울하게 가해자, 피해자가 되는 일을 예방하고 자신의 생존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탈북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자기결정권 교육,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 등)**이 **특화·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행복한 생활과 원만한 인간관계 확장을 위해 **성인지감수성 교육과 성(문화)교육**이 탈북민 적응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며, 남북의 차이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자기 삶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된 **생활밀착형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2) 성폭력 트라우마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탈북 후 한국으로 이동 과정에서 북한이탈여성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실태 및 이 경험으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겪는 우울감과 정신적·신체적 건강상 곤란을 다루는 연구들이 상당수 보고되어 왔다(김기창 2015; 김미령 2005; 백영옥 2002). 북에서의 성폭력 피해(박재인 2021)나 남한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피해도 보고되는 상황에서 탈북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치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성폭력, 가정폭력에 관련하여 한국여성의전화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한 기구들이 존재한다. 피해여성들을 상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통합적으로 마련해주는 서비스가 이미 존재하지만, 탈북여성들 자신의 증상을 인정하거나 적극적으로 성폭력 트라우마 치유를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전통적 관념으로 성폭력 피해를 부인·묵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정신건강 치료에 거부감이 있거나 어디에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 특히 탈북 과정에서 성폭력과 인신매매 피해를 경험한 탈북여성들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증상에 대해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성폭력 트라우마로 한국사회 적응이 지체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앞서 심층면접 조사 결과에서도 상술했듯 성폭력 피해와 한국 문화수용이 결합되면서 성폭력/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증폭될 수 있는데, 제보자들은 자신과 자녀에 대한 사회활동 제한 등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었다. 위축감과 사회활동 제한은 한국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성폭력 트라우마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 경험의 탈북여성들에게 닥치는 또 다른 문제는 ‘2차 피해’이다. 심층면접 조사결과와 같이 탈북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문제이며, 이들의 아픈 과거를 낡은 성 관념으로 난도질하는 일상 속의 피해도 심각

하다. 탈북여성들의 상처를 가중시키는 2차 피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사회 내 탈북여성을 노리는 성폭력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 2017년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신은주 외 2017)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36%가 남한에 들어온 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해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는 젠더·이념·경제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취약하고 인간관계가 고립된 상황을 이용한 범죄에 해당된다. 한국에서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

(3) 탈북여성의 나홀로양육 문제에 대한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

이 조사연구에 참여한 한부모가정 탈북여성들은 나홀로양육의 고충을 토로하며, 열악한 상황에서 양육을 도맡고 생계를 이어가며 한국사회에 적응도 해야 하는 복합적인 곤란에 처해 있다. 이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이상이 오면, 자신은 물론 자녀까지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놓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기왕의 연구에서도 가족구성원 간 역동으로 인해 탈북여성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피로와 압박감, 생계 부양과 가사노동의 부담이 존재한다(손명아·김석호 2017; 이기영 외 2014; 홍승아 2013)고 했으며, 40대 이상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청소년 자녀를 원격으로 부양하거나, 한국 내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원 부족, 조력자와 조언자 부재, 지지와 정보의 부족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영 외 2014; 장정은·최정숙 2015).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탈북 영유아가 포함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탈북여성 고충 및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통일부 2023, 127)”을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탈북여성들이 호소하는 양육의 문제는 영유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진학했을 때의 문제들도 상당하며, 또한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경쟁에 대한 대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나홀로양육을 감당하고 있는 탈북여성에게는 우선 양육 문제를 함께 해결해줄 수 있는 남한의 가족이 꼭 필요하다. 양육의 책임을 나누고 양육

관련 지식정보들을 공유하는 양육 파트너가 필요한 것인데, 가족과 친척, 지인이 모두 북에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사태에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인적 관계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서 제보자4와 같이 급작스러운 허리통증으로 누워만 있었던 이들 동안 아기가 우유 2~3팩으로 버텼어야 했던 비극을 기억하며, 함께 양육을 해나가는 제도의 마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심층면접 제보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가족관계 갈등 경험을 증언했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관련 정보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탈북과 적응 스트레스가 누적된 가운데 위기가 발생하면 가족관계 갈등 내지 와해로 확산되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 탈북여성들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또는 북한, 제3국 자녀를 데려와 양육하는 과정에서 모자관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사례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원 화천 분소에서는 ‘탈북민 맞춤형 힐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22년부터는 한부모가정이나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탈북민의 심리·정서안정과 가족관계 회복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시도하고 있다(통일부 2023, 132). 이러한 노력에 더해, 탈북민 부모와 자녀 각각에 대해서 가족관계 안정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탈북민 대상 부모교육의 확대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탈북민 자녀가 포함된 교육기관에서는 적응스트레스, 사회적 관계 고립과 가족관계 갈등에 대한 사전적 점검과 적극적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4) 탈북여성의 여권신장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 확대의 필요성

탈북민들이 호소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 지위 상승에 대한 사안이다. 특히 탈북여성들이 탈북남성들에 비하여 취업이나 적응이 빠르다는 보고도 있으나, 여성들이 주로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생활 속에 여성들이 겪는 고충이나 범죄 피해의 가능성은 더욱 커 더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기는 어렵다.

탈북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이들의 자아개발과 직업적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 연령대가 낮은 여성들은 각종 위험에 빠지기 쉽고 한국남성, 한국여성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취업난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연령대가 높은 여성들은 고등교육 기회를 놓치기 쉽고, 생계유지 문제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할 경우가 있다. 남북한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던 여성들의 경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우도 사무직이나 전문직무로의 취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탈북민의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하나원 내 직업교육관을 개관·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요가 있고 취업이 용이한 한식조리, 피부미용, 네일아트, 요양보호사, ITQ” 등으로 직업훈련과정이 구성되어 있다(통일부 2023). 정부가 고려한 사안인 “취업이 용이한” 영역은 식당이나 이미용시설 등에 한정되어 있어, 탈북여성들의 실현 가능한 진로적성 범주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TQ나 회계능력에 관한 직업교육도 실행하고 있으나 본 연구조사의 제보자4에 따르면, 고등교육 이력과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및 회계업무능력 자격증을 보유했어도 사무직 취업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부에서 전문직 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기술 및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제도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탈북민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운영되는 가운데, 남한 출신 주민들에게도 어려운 취업난과 위태로운 노동시장의 환경에 탈북민+여성을 기피하는 차별의식까지 더해진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요구된다.

그리고 탈북여성들은 탈북남성들과 다른 삶의 조건과 상이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남한 정착 생활을 위한 **여성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여성에게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북한사회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욕구와 소망을 자각하고 이전보다 확장된 세계의 열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개발’ 관련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진로적성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3) 법률적 지원체계 개선: 북한이탈주민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취약·위기가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및 하위 법령들의 개정이 요청된다.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위한 법령 개정은 최근 2023년 3월 21일 「청년기본법」의 ‘취약계층 청년’ 개정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된 「청년기본법」을 보면, 제3조(정의)에서 ‘취약계층 청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신설하고, 그에 상응하여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 조항 신설(노력의무규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 조항 신설(강행규정), 제17조(청년 고

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에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 조항 신설(강행규정),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에서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조항을 신설(강행규정)한 바 있다.

<표 5-1> 「청년기본법」에서 ‘취약계층 청년’ 관련 규정 신설

조항 제목	조문	규정 수준
제3조 (정의)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의무규정
제8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강행규정
제17조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강행규정
제22조 (청년 금융생활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강행규정

주: 「청년기본법」의 관련 규정은 2023년 3월 21일 개정됨.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청년기본법」의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개정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이탈주민법」 및 하위 법령들에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한 조문 신설 또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정의)에서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정의 신설,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특별 지원대상에 ‘취약·위기가구’ 추가(강행규정),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 중 취약·위기상황에 관한 사항’ 신설(강행규정), 제5조(보호기준 등)의 보호기준에 ‘위기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로 개정(임의규정),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 항목에 ‘취약·위기가구에 관한 사항’ 신설, 제17조(취업보호 등)의 취업보호에서 ‘취약·위기가구의 취업우선 알선’ 신설(강행규정), 제20조(주거지원 등)에서 ‘취약·위기가구’ 긴급 주거지원 신설(강행규정),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변보호)의 거주지 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취약·위기가구 여부’ 추가(임의규정), 제22조의3(전문상담사제도 운영)에서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주기적 전문상담 신설(노력의무규정), 제24조(교육지원)에서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교육지원’ 신설(강행규정)¹⁷⁾, 제26조의5(취약·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표 5-2> 「북한이탈주민법」의 ‘취약·위기가구’ 관련 개정안

조항 제목	조문 신설 또는 개정	규정 수준	비고
제2조 (정의)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용어 신설 5.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란 생계, 의료, 취업,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가구를 말한다.	-	신설
제4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특별 지원대상에 ‘취약·위기가구’ 추가 기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u>취약·위기가구</u>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여야 한다.	강행규정	개정
제4조의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 중 취약·위기상황에 관한 사항’ 신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보호대상자 중 취약·위기가구에 관한 사항	강행규정	신설
제5조 (보호기준 등)	보호기준에 ‘위기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개정 기존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변경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u>위기상황 등</u>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임의규정	개정

17) 교육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법」 이외에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 포함 사항’으로 “12. 북한이탈주민 교육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추가함으로써, 평등 원칙에서 탈북민이 남한주민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본권을 누리고, 남한주민의 탈북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다.

제6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 항목에 '취약·위기가구에 관한 사항' 신설	-	신설
	6. 취약·위기가구에 관한 사항		
제17조 (취업보호 등)	취업보호에서 '취약·위기가구의 취업우선 알선' 신설	강행규정	개정
	⑥ 통일부장관은 취약·위기가구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여야 한다.		
제20조 (주거지원 등)	'취약·위기가구' 긴급 주거지원 신설	강행규정	신설
	⑦ 통일부장관은 취약·위기가구에 대하여 긴급한 주거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거주지 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취약·위기가구 여부' 추가	임의규정	개정
	기존 ③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 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③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 보호의 지속 필요성, <u>취약·위기가구 여부</u>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의3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주기적 전문상담 신설	노력의무규정	신설
	③ 전문상담사는 취약·위기가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교육지원)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교육지원' 신설	강행규정	신설
	③ 통일부장관은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특별한 교육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의5 (취약·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	'취약·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항 신설	강행규정	신설
	① 통일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력하여 취약·위기가구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발굴한 취약·위기가구의 <u>생활상태</u> 를 고려하여, 생계, 의료, 취업, 교육, 주거 등 긴급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0조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재단의 사업수행 범위에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조사 및 지원사업' 신설	-	신설
	9.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조사 및 <u>지원사업</u>		

주: 법적 구속력은 강행규정 > 노력의무규정 > 임의규정의 순이며, 강행규정은 '해야 한다', 노력의무규정은 '노력해야 한다', 임의규정은 '할 수 있다'로 서술된 법문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상위법률인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관련 하위 법령들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8조(주거지원),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제47조의6(생업지원),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에서 ‘취약·위기가구’에 관한 특별 및 우선 지원 조항 신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4조(주거지원), 제7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제8조의2(교육지원의 절차)에서 ‘취약·위기가구’에 관한 특별 및 우선 지원 조항 신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의 지역협의회 기능에 ‘취약·위기가구에 관한 사항’ 신설,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의 거주지보호기관장 등의 임무에 ‘취약·위기가구 발굴·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에 ‘교육배제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신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에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금’ 신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의 하나센터의 역할에 ‘취약·위기가구 발굴·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표 5-3> 「북한이탈주민법」의 하위 법령에서 ‘취약·위기가구’ 관련 개정안

구분	제·개정일	법령명	조항개정
시행령	2022. 11. 29.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주거지원),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제47조의6(생업지원),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에서 ‘취약·위기가구’에 관한 특별 및 우선 지원 조항 신설
시행규칙	2022. 6. 21.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주거지원), 제7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제8조의2(교육지원의 절차)에서 ‘취약·위기가구’에 관한 특별 및 우선 지원 조항 신설
행정 규칙	훈령 2021. 2. 24. 제정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지역협의회 기능에 ‘취약·위기가구에 관한 사항’ 신설

예규	2021. 11. 11. 제정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거주지보호기관장 등의 임무에 '취약·위기가구 발굴·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2. 31. 제정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교육배제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신설
	2023. 1. 5.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금' 신설
	2022. 1. 3. 제정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	하나센터의 역할에 '취약·위기가구 발굴·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자료: 저자 작성.

4) 행정적 지원체계 개선: 발굴체계, 전달체계, 기본계획 개선

(1)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발굴대상의 범위 및 발굴주체의 범위 확대가 요청된다.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국민 대상의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 대상과 방법의 변화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가구 발굴대상 및 발굴주체에서의 변화가 시작된 바 있다. 현행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제10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제11조(정보 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및 시행령 제6조의2~제8조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데, 발굴대상과 발굴주체의 범위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위기가구 발굴대상이 취약계층 위주였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모든 주인으로 변화하였다. 기존의 발굴대상은 전통적으로 첫째, 사회보장급여 수혜 자격기준에 의해 배제된 대상과 욕구 대비 복지서비스 내용 및 수준이 불충분한 대상이었고, 둘째, 공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공부조·서비스 수혜대상이나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였지만, 변화된 발굴대상은 첫째,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청중장년 1인 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휴·폐업·실직자 등), 둘째, 일반적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은둔형 외톨이, 학대아동 등), 셋째, 타 기관 의뢰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자(자살유가족 등)이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2, 77). 위기가구 발굴주체에서의 변화도 확인되는데, 기존의 위기가구 발굴주체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중심으로 수행되었다면, 현재는 공공·민간기관, 협의회 및 주민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5-2> 취약·위기가구 발굴의 대상 및 방법의 변화

기존	추가
• 대상 : 취약계층 위주 발굴 • 방법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중심으로 수행	• 대상 : 지역사회 내 모든 주민 • 방법 : 공공·민간기관, 협의회 및 주민 등으로 확대

자료: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2022, 76)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체계에서의 발굴대상은 ‘취약계층 위주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모든 주민’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도 전체 탈북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발굴주체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의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가 주도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업 및 지역사회주민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주체 구성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이후 대응책으로 발표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수립’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하나센터장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탈북민지원 지역협의회’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사항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복지사각지대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탈북민을 효과적이면서도 상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발굴체계 구성에서 지자체와 하나재단의 역할 제고를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서 제시된 것과 유사하게 위기가구 발굴 기획단을 운영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통한 발굴, 복지통(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한 발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을 통한 발굴, 지역 주민들을 통한 발굴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2, 86).

<표 5-4>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

구분	기존	변경	비고
발굴대상	의심되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체 탈북민 가구	
발굴주체	정착지원협의회	정착지원협의회 주도로 공공·민간기관, 협의회 및 주민 협력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하나센터장 참여여부 전수조사

자료: 저자 작성.

(2)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달체계 개선

전달체계의 통합성, 책임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전달체계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간 및 공공과 민간 간 긴밀한 정보 연계가 요청되며, 전달체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집중화에서 중앙-지방-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사 및 통합사례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전달체계의 통합성을 위해 전달체계 간의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가 긴밀해져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간 및 공공과 민간 간 정보 연계의 부족은 탈북민의 안타까운 사망의 원인이었다. 이에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이후 기존의 하나재단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지표’와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여전히 통일부와 하나재단, 그리고 지역의 하나센터 간에 정보 환류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권숙도 2023, 163). 이에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부터 변화될 필요가 있다. 통일부-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 간의 정보 환류 강화 및 정보 접근성 장벽을 허물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시군구 콜센터-남북하나재단 종합상담콜센터 간 연계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콜센터 상담 후 필요시 전화 및 상담정보를 해당 시군구로 이관하여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콜센터와 시군구 콜센터가 연계 중인데, 여기에 남북하나재단 종합상담콜센터도 연계하는 것이다.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시군구 콜센터 상담이 먼저 진행된다면 관련 정보를 남북하나재단 종합상담콜센터로 이관하여 지역의 하나센터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V.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둘째, 전달체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집중화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과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의 전달체계 개편이 요청된다. 즉 중앙정부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명목상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단체 거버넌스 지원체계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지원체계의 성격이 강한 점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공적 지원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 차원의 공적 지원체계와 함께 지역 차원의 민간 지원체계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작동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와 단절된 위기가구를 결코 중앙정부나 지역 적응센터가 발굴해 낼 수 없다(권숙도 2023, 167-168). 이에 중앙정부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보다 더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요청된다.

셋째,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상담사 및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만 4천 명에 육박하는 탈북민을 위한 전문상담사는 80명(하나센터 78명 및 남북통합문화센터 2명)에 불과하다. 전문상담사 1명당 감당해야 할 탈북민은 425명 수준이다. 전문상담사의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력의 부족은 업무의 몰입도를 낮출 수밖에 없어, 탈북민의 정착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사례관리(in-depth care management)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중요한 지점은 초기 정착지원부터 사망 시까지의 통합사례관리를 전문가적 책임감과 자세로 깊이 있게 수행하는 것이다.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 하나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민-관의 협력하에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상담인력의 확충, 전문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민관협력의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등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3)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보호기간 연장

거주지 보호기간 5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서울시 관악구의 탈북민 모자 사망 및 40대 탈북민의 고독사 사건 모두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였다. 탈북민은 거주지 정착 후 5년이 초과되면 기초생활보장의 특례규정이 종료되는데, 이때 자본주의 시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탈북민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5년이 경과된 이후의 탈북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률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등이 증가하여 생계급여 소득기준선을 초과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라, 5년간의 정착지원기간이 지나면 보호기간에 적용받던 특례조건이 해지되는 등 생계급여 수급조건이 변화하여 그 대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민기채 2017, 30). 5년이 만료된 탈북민들은 대부분 특례제도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일반 사회복지 시스템에 포함되는데, 이때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즉 위기가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적 지지망의 약화뿐만 아니라, 사적 지지망의 약화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탈북민과 남한주민들과의 사회적 관계망은 탈북민의 국내 입국 이후 10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10년이 지나서는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의 위기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김병연 2018, 33). 남한에 정착한 가족이 있거나, 안정적 직업을 갖고 있으며, 대학교육을 받고, 가구소득이 높으며, 사회활동에 참여할수록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가 높은 반면, 남한에 가족이 없거나,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고, 사회활동이 적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집단은 관계망의 위기를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김성희·정승호·김병연 2022, 25).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 구직활동조차 시도하기 어려운 탈북민,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탈북민, 차별과 배제로 인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어려운 탈북민, 가족·친구·이웃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 형성이 취약한 탈북민 등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어 공적 관계망뿐만 아니라 사적 관계망까지도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이 종료된 가구에 대한 탈북민 취약·위기 발굴체계가 작동될 필요가 있다. 취약·위기 발굴을 통해 취약·위기가구로 판정된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 5년 규정의 예외 사례로 간주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내 입국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사적 관계망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가족이 없이 살아가는 무연고 1인 가구와 같은 탈북민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취약·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작동될 필요가 있다.

5) 탈북민 정착지원 거버넌스 재조정

현재 통일부는 안전지원과가 지역하나센터를 중심으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발굴 및 대응, 통합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남북하나재단은 전문상담사를 통해 위기대상자에 대한 후속지원(긴급생계비, 의료지원, 장학지원 등) 및 재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의 책임성과 명확성을 분명히 하고 각 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업무를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탈북민 적응·정착과 사회통합이라는 큰 방향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복합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구성원이 스스로 여러 기관과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2022년까지는 사례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밀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현재는 관련 업무가 지역하나센터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문상담사는 취업상담과 심리상담 중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하나센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일반복지체계에 못 미쳐 이직이 잦고 업무의 축적, 서비스의 연속성들이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남북하나재단 전문상담사의 급여나 처우는 일반 사회복지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근속연수가 평균 7-8년으로 지역 탈북민에 대한 관계와 정보가 축적되어 지역하나센터에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남북하나재단과 지역하나센터의 업무와 역할을 조정하였으나 지역별 하나센터의 여건에 따라 관련 업무와 역할이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민 적응·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어떻게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소속기관 및 처우의 상이, 업무보고 체계의 다원화, 표준화되지 못한 업무, 시설환경의 열악 등 탈북민 적응·정착과 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인력들의 업무환경이 복잡하고, 무엇보다 과도한 행정으로 관련 정착지원 기관의 전문영역에 기반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하나? 연구진이 탈북민 정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재조정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정책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탈북민 적응·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단순화 일원화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정책수립과 종합적 관리를 수행하고 남북하나재단과 지역하나

센터의 역할을 분명히 설정하여 실제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통일부에서 지난 20여 년간 지원했던 정착금에 대한 분석 특히, 미래행복통장과 취업장려금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정부의 수혜를 받은 기간을 벗어나면 탈북민들이 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는지, 어느 시점에서, 어떤 과정으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하나센터의 지역편차와 환경을 고려하여 하나센터의 역할과 기능, 지역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전달방식 등 표준화가 필요하다.

둘째, 2019년 이후 국내 입국 탈북민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지보호 5년은 크게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현재 정착금과 가산금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거주지보호 제한이 없고, 탈북민 가족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탈북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탈북민 아동(제3국출생, 남한출생) 및 남편(조선족 등) 포함하여 가족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민관의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위기상황 발생 시 신변보호담당관들의 역할 기대가 요구되는데, 최근 보호기관 5년이 경과되면 신변보호 여부를 확인하여 탈북민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보호대상자에 제외시키고 있다. 문제는 신변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장기생활하던 탈북민들이 취약·위기가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매우 높다. 이 경우 현장대응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대상자일 경우 간략한 절차를 통해 신변보호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6) 적응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대한 의학적 구분과 대처¹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구성원들이 겪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탈북민에게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반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만이 아니라 우울증, 공포증이나 불안 발작과 같은 다양한 불안 반응, 기억을 잘 못하거나 멍해지거나 자신이 마주하는 상황이 낯설게 느껴

18) 이 부분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하지현 팀장의 자문의견을 토대로 작성함.

Ⅳ.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개선 방안

지는 해리증상과 다양한 신체증상 등을 포함한다.

주목할 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탈북 트라우마와 의학적인 트라우마는 명확히 다르다. 즉 본 연구를 포함한 탈북민 관련 연구에서 통칭하는 탈북 트라우마의 대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적응·자립하는 탈북민의 적응 스트레스이며, 이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 또한 탈북 여성들의 상당수가 제3국에서 거주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성폭력, 출산, 신체폭력 등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은 시간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의학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 즉 인지·감정·신체·행동 반응이 일정 기간 나타날 수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인간에게는 회복의 힘이 있어 심리적 상처나 대다수 외상 경험도 가족과 친구, 동료의 지지와 함께 많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 의학적으로는 급성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도 보통 80-90% 정도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적응하고 첫 1년 내에 회복되어 안정화되기 시작한다. 물론 탈북민 개인 및 그들이 경험한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회복이 걸리는 시간은 다르며, 그에 따라 회복과 재통합되는 과정과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10-20% 정도는 다양한 외상 후 경과, 즉 의학적 트라우마 증상을 겪게 되며,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장애가 고착되고 점점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병원 외래와 연계해 약물치료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모든 것을 트라우마라 하지 말고 정확한 평가”에 따른 대처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해주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탈북민 스스로 자신들의 힘든 상태와 감정을 안정화하고 본인의 현실 문제를 직시하며, 현실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거주지역의 복지관 등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마음프로그램(표 5-5)을 개발한 이유도 트라우마 치유가 아니라 다양한 외상경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과 실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반응을 이해하고,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갖는 데 있다.

<표 5-5> 국가트라우마센터 마음치유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모듈	모듈 명	기법
기본 모듈 1 (트라우마 들여다보기)	심리교육	심리교육, 복식호흡훈련
기본 모듈 2 (나의 안전지대 만들기)	기본 안정화: 이완	근육이완, 안전지대연습
기본 모듈 3 (지금 여기로 돌아오기)	기본 안정화: 착지	호흡 마음챙김명상, 유발요인 찾기, 착지연습
기본 모듈 4 (변화된 나를 발견하기)	긍정성 증진	자원강화, 변화된 나를 발견하기
선택 모듈 1 (통증 마주하기)	신체 안정화	빛줄기 기법, 바디스캔
선택 모듈 2 (트라우마 기억 다루기)	재경험 반응 다루기	봉인연습, 거리두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안정화-대처방법-평가-치유의 과정으로 구성된 탈북민 특성에 부합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구성원들이 거주지역 복지관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본 연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기존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의 한계를 고찰하고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탈북민 정착지원의 주요 목표는 한국 사회에서의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적응과 사회통합으로 집중됐다. 그러나 현재 탈북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마주하여, 연구진은 2019년 7월 발생한 탈북모자 사망사건 이후 최근까지 잇따르고 탈북민 관련 안타까운 사건의 원인에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 같은 연구배경을 가지고 시작된 본 연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 실태와 이들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회경제적 토대와 안정된 지지체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정착지원 체계 및 제도와 지난 6차례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의 내용 및 한계를 고찰했다. 또한 본 연구는 생명권(건강권), 안전권, 평등권(차별금지),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여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구성원들이 겪는 인권문제는 탈북 과정에서 얻은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가구의 주소득 상실, 여성 한부모 가정에서 나타나는 돌봄공백, 열악한 사회적 안전망 및 지지체계와 고립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다양한 요인들이 맞물려 악순환이 반복되며, 특히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이 없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열악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은 일부 극단 선택으로 치달는 사례에 한정된 것이 아닌, 현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열악한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체계로 인해 언제든지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던 것이다. 다만 현재 탈북민만이 아니더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문제를 보편성에 주목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논의 역시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탈북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상해, ‘돌봄과 일’의 병행, 제3국 출생 자녀의 학업 문제, 탈북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냉소적 태도, 여성인권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구성원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에는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다.

연구진이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구성원 한 개인이 삶의 궤적, 즉 북한에서의 삶-탈북 과정-한국살이의 고충을 생애사적으로 살필 수 있는 연구방법인 구술 생애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인권상황은 매우 복잡다단했다. 탈북 과정에서 얻은 신체·정신적 아픔이 가족구성원 1인의 안타까운 사망에서 멈추지 않고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례, 장애·다문화·부모 병환의 문제가 결합된 사례, 인신매매로 인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채 한국을 입국하는 과정에서 허리디스크를 얻었지만 홀로 양육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 1인 가구 여성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및 탈남 위기 경험 사례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다양한 열악한 인권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탈북 트라우마 치유, 탈북 여성인권상황 개선, 법률적·행정적 지원체계 개선, 적응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대한 의학적 구분 및 대처 등을 제시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정책과 더불어 탈북민이 포함된 가족을 위한 가족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부분을 폭넓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탈북민만으로 형성된 가족은 정보 소외계층으로서, 한국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탈북민이 포함된 새로운 가족은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건강한 가족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곤란한 상황을 여러 차원에서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지역하나센터, 지자체,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탈북민이 포함된 가족들은 일반적인 가족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맞벌이로 인한 자녀 돌봄 기능 약화, 자녀방임과 학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재혼 등의 경험이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현주소를 면밀히 돌아보고, 부족한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제3국에서 자라다가 중도에 입국한 중도입국 탈북민 자녀들이 포함된 가족 정착지원 체계와 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탈북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들에

VI. 결론

대한 무관심도 문제지만,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하게 바라보는 것은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탈북민의 아픔을 ‘그들’만의 문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모춘흥 2021, 470-472). 말하자면 체제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하게 살 권리’의 측면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문제에 한 발짝 더 다가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절감한다.

참고문헌

- 강신욱 외. 2012.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 관계부처합동. 2018.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 _____. 2021a.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
- _____. 2021b. 『제3차(2021~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 _____. 2023.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 국가인권위원회. 2022.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트라우마센터. 2018. 『마음프로그램 매뉴얼』.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 “2021년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23. 『2023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 권금상. 2021. 『영웅적 조선녀성의 성과 국가』. 서울: 서울셀렉션.
- 권숙도. 2023. “적극적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책 전환 방안.” 『국제정치연구』 제26집 1호.
- _____. 2018.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 『통일연구』 제22권 제1호.
- _____. 2014.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 연구.” 『한국정치연구』 23권 1호.
- 권은성 외.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표 연구(Ⅲ): 통합지표』. 서울: 남북하나재단.
- 김기창. 2015.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9집 1호.
- 김미령. 2005.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7집 1호.
- 김범수 외. 2022. 『2022 통일의식조사』.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김병연. 2018.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자본.”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4월호.
- 김병욱 외. 2016. 『북한이탈주민 유사수신 피해실태와 방지방안』. 서울: 남북하나재단.
- 김석향 외. 2019. 『북한이탈여성 일터 내 차별 및 괴롭힘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선희 외. 2008. 『국토관리 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Ⅰ)』. 안양: 국토연구원.
- 김성근·유자영. 2018. 『사회통합지수의 지역간 차이와 지역별 사회통합 증진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김성희 외. 202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지지 네트워크 형성요인.” 『비교경제연구』 제29집 1호.

참고문헌

- 김소륜. 2017. “탈북 여성을 향한 세 겹의 시선: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탈북여성의 문학적 형상화에 관한 고찰.” 『여성문학연구』 제41집.
- 김영권. 2021. “탈북민들, 코로나로 정서적 스트레스 증가.” 『VOA』 2021/3/19.
- 김종균 외. 2017. “탈북 트라우마에 대한 인문학적 치유 방안의 가능성 -구술 치유 방법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9집 2호.
- 김종균·정진아. 2012. “탈북자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탈북 트라우마의 현재적 양상.”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 서울: 선인.
- 김태완 외. 2022.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경·전우택. 2009.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이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40집 2호.
- 남북하나재단. 2017. 『2016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_____. 2022a. 『2021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_____. 2022b. 『202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_____. 2022c.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_____. 2023. 『2023년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안내(대학)』. 서울: 남북하나재단.
- 노대명 외. 2009. 『북한 이탈주민의 정책수요 진단 및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모춘흥. 2021. “이산(離散)을 넘어 평화로 가는 길.” 최대석 외.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파주: 21세기북스.
- 문인철·송미경. 2022.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선방향』. 서울: 서울연구원.
- 민기채. 2017.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쟁점』.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민기채 외. 202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 방안: 경기도와 충청북도 및 안산시와 충주시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41집 1호.
- 박명호 외. 2011.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 조건(III): 경제사회발전 트렌드 분석: 지표연구』.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11-01-01.
- 박예지. 2022. “내년부터 일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탈북자’ 의료급여 2종” 『의사신문』 2022/8/2.
- 박은희. 2009. 『지역 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적용 대구경북 선진화방안』.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 박재인. 2016. “이주와 성공의 고전서사를 활용한 탈북민 대상 문학치료 사례 연구.” 『문학치료연구』 제41집.
- _____. 2017. “‘고향’으로서의 북녘, 통일을 위한 정서적 유대 공간으로의 가능성.” 『통일인문학』 제71집.
- _____. 2021. “탈북여성의 기억으로 본 남북의 젠더의식 비교.” 『통일인문학』 제86집.

- _____. 2023. “문학치료 상담에서 나타나는 문학행위 반복 현상과 ‘직면’의 치료적 효과.” 『문학치료연구』 제66집.
-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8.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읍면동 인적자원망 운영 가이드』. 세종: 보건복지부.
- _____. 2021. “우리 주변에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세종: 보건복지부.
- _____. 2020. “지방세 체납, 통신 요금 연체 정보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6/2.
- 백영옥. 2002. “중국 내 탈북 여성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北韓研究學會報』 제6집 1호.
- 베셀 반 데어 콜크 저. 제효영 역. 2020. 『몸은 기억한다 -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들 -.』 서울: 을유문화사.
- 보건복지부. 2019. “복지 위기가 발굴 대책 보완조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9/5.
- _____. 2023.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4/24.
- 설진배 외. 201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방안: 경제적 적응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동북아논총』 제70호.
- _____. 송은희. 2015.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향: 델파이 조사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수요분석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6권 제5호.
- 성정현. 2014.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차별 경험과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집 5호.
- 손명아·김석호. 2017.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주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제40집 1호.
- 송두환.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제도 개선과 포용사회 문화 조성으로 월북 요인 없애야.”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2/1/12.
- 송미령 외. 2011.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 개발과 활용』.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인한. 2020. “코로나로 위기 몰린 사회적 약자, 외면하면 공동체 무너져.” 『중앙일보』 2020/3/23.
- 송철종 외. 2020. 『지역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연구: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을 중심으로』.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58-01.
- 신은주 외. 2017.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실태 및 지원 방안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신하영·이정인. 2023.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재구성: 젠더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인격교육학회』 제17집 2호.
- 신효숙. 2022. “탈북청년들의 우리사회 통합과 자립 역량의 확대를 위하여.” 『NOKO Insight』. <https://nokoinsight.com/122>.
- 양옥경 외. 2021. 『위기 북한이탈주민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 연구』. 서울: 통일부.

참고문헌

- 오세민 외. 2014. “기초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정현황과 내용에 관한 분석: 경기도 내 시, 군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8집 1호.
- 왕성민. 2020. “법률구조공단, 29일부터 ‘탈북민 법 교육’ 신청 받는다.” 『법률신문』 2020/1/28.
- 유비 외. 2020. 『인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방안 연구』. 인천: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 유혜란. 2014. “탈북민을 통하여 본 ‘북한체제트라우마’(NKST) 불안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5집 1호.
- 윤여상. 2004. “재외탈북자 인권상황, 북한이탈주민 인권 및 선교 현황과 방향 토론회 자료집.” 서울: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윤인진. 2019. “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문화와 정치』 제6권 제1호.
- _____. 외. 201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식 및 차별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규범. 2023. “성폭력 피해경험과 문화수용의 조절효과가 성폭력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0집 1호, 한국치안행정학회.
- 이금순 외. 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이기영 외. 2014. “북한이탈여성의 ‘돌봄과 일’에 관한 연구 - 제3국 출신 아동을 둔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 『민족연구』 제60집.
- 이소희 외. 2017.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수형 외. 2018.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화 방안』.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승열. 2021.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NARS입법·정책 제100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이우영 외. 2000.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이재열 외. 2014.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 제21집 2호.
- 이준섭·이준국. 2012.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연구』. 서울: 법제처.
- 이지연. 2020. “탈북민과 더불어 공생사회 만들기.” 최진우 외. 『환대: 평화의 조건, 공생의 길』. 서울: 박영사.
- 이진혁·최정민. 2020.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감수성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4권 3호.
- 이화진. 2011. “탈북여성의 이성 관계를 통해본 인권침해 구조와 대응: 탈북 및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19권 2호.
- 임순희 외. 2022. “2022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 장명선·이애란. 2009.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여성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방안 연구』. 서울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장인숙 외. 2022.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장정은·최정숙. 2015. “북한이탈여성의 청소년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6집 4호.
- 전연숙·강혜영. 2010. “탈북여성의 진로장벽 지각: 연령별, 학력별, 남한거주기간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5집 3호.
- 전우택. 2000. “집단기억 현상을 통하여 본 북한 사회 이해.” 『사회정신의학』 5권 2호.
- 정상우 외. 2016.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정성미. 2015.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표현과 치유-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9집 1호.
- 정해식 외. 2016.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영아. 2009.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상담에 대한 요구도와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1집 1호.
- _____. 2015. “남한 내 북한이탈여성의 차별경험 과정.” 『여성연구』 89권 2호.
- 조정아. 2014. 『탈북청소년의 경계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서울: 통일교육원.
- 주디스 허먼 저, 최현경 역. 2012. 『트라우마』. 서울: 열린책들.
- 차미숙 외. 2011.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 총괄보고서』. 세종: 국토연구원.
- 최경환. 2007. “북한이탈주민의 가치관 변화.” 『통일문제연구』 19권 2호.
- 최대석·박영자. 2011. “북한이탈주민 정책연구의 동향과 과제: 양적 성장을 넘어선 성찰과 소통.” 『국제정치논총』 제51집 1호.
- 최영애. 2019. “북한이탈주민 보호 사각지대 없도록 정착지원제도 등사회안전망 촘촘히 구축하고 정비해야.”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9/10/21.
- 최진우 외. 2020. “탈북민 환대지수(Hospitality Index)의 지표체계 개발 연구.” 『문화와 정치』 제7권 제2호.
- 통계청. 2021. 『2021 사회조사 보고서』. 대전: 통계청.
- _____. 2022. 『2022 사회조사 보고서』. 대전: 통계청.
- 통일부 홈페이지. 2023.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https://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history/>(최종 검색일: 2023/6/27).
- 통일부. 2019. “탈북민 모자 사망 관련,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수립.” 통일부 보도자료. 2019/9/2.
- _____. 2022.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3.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소개. <http://www.ssis.or.kr/day1/SIT749C765/contents.do>(최종검색일: 2023/6/29).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202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나영 외. 2015.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한 북한이탈주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사회 적응 및 삶의 질 관계.” 『신경정신의학』 제54집 1호.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2. 『2022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세종: 행정안전부.
- 황선영. 200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배제 요인.” 『사회복지정책』 36권 3호.
- 홍승아. 2013. “가족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여성의 정착과제: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5집 2호.
- 홍용표·모춘흥. 2019. “탈북민에 대한 ‘환대’ 가능성 탐색.” 『통일인문학』 제78집.
- 홍창형 외. 2005. “북한이탈주민의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3년 추적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rger-Schmitt, R.. 2002. “Considering social cohesion in quality of life assessments: concept and measure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
- Bernard P. 1999. “La Cohésion sociale: critique d’un quasi-concept.” *Lien social et Politiques-RIAC*, 41.
- _____. 2000. ‘*Social cohesion: a dialectical critique of a quasi-concept*’ Strategic Research and Analysis Directorate.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Ottawa.
- Chan, J., To, H. P., & Chan, E. 2006. “Reconsidering social cohesion: Developing a definition and analytical framework for empirical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2.
- Dickes, P., Valentova, M., & Borsenberger, M. 2009. January, “Social cohesion: Measurement based on the data from European value study.” In *NTTS Seminar New Techniques and Technologies for Statistics, Brussels*.
- Fairclough, N. 2000. “Discourse, social theory, and social research: The discourse of welfare reform.” *Journal of sociolinguistics*, 42.
- Jeon, W. T., Yu, S. E., Cho, Y. A., & Eom, J. S.. 2008. “Traumatic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Psychiatry investigation*, 5(4).
- Nash, M., Wong, J., & Trlin, A., 2006. “Civic and social integration: A new field of social work practice with immigrants, refugees and asylum seekers.” *International Social Work*, 493.
- OECD, 2011, “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soc_glance-2011-en.
- Schiefer, D., & van der Noll, J. 2017. “The essentials of social cohesion: A literature review.”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22.
- Warr, M. 1984. “Fear of victimization: Why are women and the elderly more

afraid?” *Social Science Quarterly*, 65(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청년기본법.

[부록 1] 설문조사표

탈북민 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사전에 인지하고 위기가구에서 겪을 수 있는 인권 보호 및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다음의 질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에만 사용됩니다. 아울러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의거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모든 응답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실태 파악과 정책개발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귀하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알려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조사 대상 : 만 20세 이상의 탈북민(2003년 08월 09일 이전 출생자)

연구책임자 : 홍용표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사책임자 : 모춘흥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귀하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취지에 동의하며, 동 설문에 응하기를 동의합니까?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응답 과정 중 언제든지 설문조사를 멈출 수 있습니다.

① 동의합니다.

②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록

II. 가구소득 상실 경험

[가구 구성 및 유형]

9. 현재 남한에서 귀하와 같이 살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본인 포함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10. 현재 귀하와 떨어져 살고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0-1. 귀하와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들의 거주지역은 어디인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남한 내 다른 지역 ② 북한 ③ 제3국

11. 현재 귀하의 남한 거주 가구 구성원 중에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구성원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실직 및 부상, 장기입원]

12. 귀하 가구의 주 소득자(가장 많은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그만두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2-1.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실직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3개월 미만 ②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④ 1년 이상 2년 미만 ⑤ 2년 이상 3년 미만 ⑥ 3년 이상 4년 미만
⑦ 4년 이상 5년 미만 ⑧ 5년 이상

13. 귀하 가구의 주 소득자(가장 많은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가 장애 및 신체 부상, 장기입원 등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3-1.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실직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3개월 미만 ②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④ 1년 이상 2년 미만 ⑤ 2년 이상 3년 미만 ⑥ 3년 이상 4년 미만
⑦ 4년 이상 5년 미만 ⑧ 5년 이상

[화재 및 재난 피해]

14. 귀하는 화재나 재난(산불, 태풍, 홍수 등)으로 거주지를 잃는 등 재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III. 정신적·신체적 건강

15.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이 탈북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6.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남한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7.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이 탈북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8.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이 탈북 과정에서 얻은 신체적 상해로 인해 남한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IV. 사회적 관계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19. 귀하는 다음의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임	보통	만족 하는 편임	매우 만족	해당 없음
1) 배우자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2) 자녀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3) 본인 부모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4)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5) 본인 형제자매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6)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7) 전반적인 가족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8) 친구(연인)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9) 이웃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10) 직장동료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11) 학교친구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12) 전반적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20. 귀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귀하는 친구나 이웃, 직장동료, 학교친구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2. 귀하를 주로 지지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본인의 부모
⑤ 배우자의 부모 ⑥ 본인의 형제/자매 ⑦ 배우자의 형제/자매
⑧ 손자/손녀 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척 ⑩ 친구(연인)
⑪ 이웃 ⑫ 직장동료 ⑬ 학교친구 ⑭ 없음

부록

[사회적 관계망]

23. 귀하 또는 귀하의 주 소득자(가장 많은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가 소득 상실 등으로 재정적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24.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이 장애, 부상이나 장기 입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25.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이 정신적 고통(불안, 우울, 알코올 장애, 트라우마 등)을 겪고 있을 때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26.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이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할 때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V. 가구의 위기 심화

27. 귀하는 지난 2주일 동안 다음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느꼈습니까?

	매우 많이 느낌	느끼 는 편임	보통 이다	느끼 지 않는 편임	전혀 느끼지 않음	해당 없음
1) 가정생활	①	②	③	④	⑤	⑥
2) 직장생활	①	②	③	④	⑤	⑥
3)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⑤	⑥
4) 이웃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5) 탈북민 모 임	①	②	③	④	⑤	⑥
6) 전반적인 일상생활	①	②	③	④	⑤	⑥

28.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이 일상생활에서 우울하다는 감정이 2주 이상 지속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29.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이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해 술에 의존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30.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술에 의존하는 편이다

31.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이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①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② 장애, 신체적 부상 및 장기 입원
③ 화재나 재난으로 인한 재산 손실 ④ 정신적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⑤ 가정불화 ⑥ 결혼 또는 이혼, 파혼 등
⑦ 직장에서의 문제 ⑧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⑨ 성적, 진학,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의 어려움 ⑩ 차별과 무시

① 있다 ② 없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지역하나센터에서 상담 ② 지역 주민센터에서 상담
③ 신변보호담당관과의 상담 ④ 친한 남한주민과의 상담
⑤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 ⑥ 주변 탈북민을 통한 정보 획득
⑦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보 획득 ⑧ 없음

① 지역하나센터에서 상담 ② 지역 주민센터에서 상담

③ 신변보호담당관과의 상담 ④ 전문 심리상담가나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

⑤ 친한 남한주민과의 친목 활동 ⑥ 탈북민 친목 활동

⑦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보 획득 ⑧ 없음

① 지역하나센터에서 상담 ② 지역 주민센터에서 상담
③ 신변보호담당관과의 상담 ④ 친한 남한주민과의 상담
⑤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 ⑥ 주변 탈북민을 통한 정보 획득

- ⑦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보 획득 ⑧ 없음
38.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은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행동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지역하나센터에서 상담 ② 지역 주민센터에서 상담
- ③ 신변보호담당관과의 상담 ④ 친한 남한주민과의 상담
- ⑤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 ⑥ 친한 탈북민과의 상담
- ⑦ 지속적인 연락 시도 ⑧ 없음

[범죄 관련 상황]

39.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이 남한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범죄에 연루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40.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금융 범죄나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41.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이 남한사회에서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법률지원]

42.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이 신변보호담당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3.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이 지난 1년 동안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43-1.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이 지난 1년 동안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소득 상실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② 장애, 신체적 부상 및 장기 입원으로 인한 돌봄 문제해결을 위해
③ 화재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및 복구를 위해
④ 정신적 고통(우울, 음주 장애, 트라우마 등) 극복을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
⑤ 가정불화 등 가정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⑥ 노동시간, 노동환경, 차별, 무시 등 직장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⑦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⑧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서
⑨ 범죄의 가해자가 되어서
- 43-2.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이 지난 1년 동안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② 법률지원이 필요한 일이 있었으나 방법을 몰라서
③ 법률지원을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그 요청을 무시해서
④ 법률지원이 필요한 일이 있었으나 그냥 보고 싶지 않아서

설문을 마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한양대학교 연구팀 일동 -

[부록 2]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발굴 위기가구지표

연번	기관명	위기정보	위기 상황
1	한국전력공사	단전	가구 경제
2		전기료 3개월 이상 체납	
3	상수도사업소	단수	
4	도시가스사	단가스	
5	자살예방센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자살고위험군	정신 건강
6	응급의료센터	내원사유가 자해/자살	
7	소방청	주택화재 피해자	가구 경제
8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사회 보장
9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10		의료비 본인부담금 과다지출자	가구 경제
11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12	보건복지부	보건소 방문건강사업 집중관리군 대상자	신체 건강
13		보건소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자 중 확진자	
14		영양플러스 신청자 중 미지원 대상자	가구 경제
15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신청탈락중지	
16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사회복지시설 퇴소자	
17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18		개별연장급여 지원 대상자	
19		비자발적 사유(폐업, 도산 등)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실업급여 수급자	
20		비자발적 사유(폐업, 도산 등)로 고용보험 상실 후 실업급여 미수급자	
21		일용근로자 중 고용보험 상실 후 근로신고자 없으면서 실업급여 미수급자	
22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급여 종결 후 근로단절자	
23	경찰청	범죄 피해자	사회 안전
24	행정안전부	재난 피해자	가구 경제
25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26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27	한국신용정보원	금융연체(과거 2년 동안 연체금액이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8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세 계약자	
29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규모 월세 계약자	
30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학교장 추천자	
31	국세청	전년도 공급가액 4,800만 원 이하 사업자 중 휴·폐업자	
32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자	
33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통신비 체납	

주: 위기상황은 연구진이 설정한 것임.

[부록 3]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

VI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
1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및 법·제도 정비
핵심과제94	북한인권에 관한 법·제도 정비
핵심과제95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노력
핵심과제96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2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핵심과제97	북한이탈주민 사회안전망 강화
핵심과제98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분야 증진
3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 주민의 인권
핵심과제99	이산가족 상봉체계 구축
핵심과제100	납북자·국군포로에 대한 구제 노력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 인쇄일 | 2023년 10월 27일
| 발행일 | 2023년 10월 30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기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02) 2125-9830
| F A X | 02) 2125-0918
| 제 작 | 도서출판 월인 (02) 912-5000 (代)

ISBN: 978-89-6114-973-0 93340 비매품